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106-01

동물보호센터 분뇨처리 등
관리기준 설정 연구
(최종보고서)

총괄(주관)연구기관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정승헌 원장

2020. 2. 5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동물보호센터 분뇨처리 등 관리기준 설정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02월 5일

수행기관명 :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연구책임자 :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정 승 현 원장

연 구 원 : 건 국 대 학 교 배 철 연구원

성 균 관 대 학 교 조 영 덕 연구원

(주) 이 레 농 산 권 병 연 연구원

< 목 차 >

제 1 장 연구 개요	3
제 1 절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6
제 2 절 과업별 연구 내용	6
1.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현장실태 조사	6
2. 현장실태조사 결과 분석	6
3. 관리방안 도출	6
4. 본 연구용역 추진 방향	7
제 2 장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11
제 1 절 국내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11
1.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현황	11
2. 국내 동물보호시설 현황	17
3. 국내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조사 시사점	20
제 2 절 해외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21
1. 해외 동물보호시설 현황	21
2. 해외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조사 시사점	53
제 3 장 동물보호시설의 현장실태 조사 등	57
제 1 절 동물보호시설의 현장실태 조사	57
1. 현장 실태조사 계획	57
2. 현장실태 조사	58
제 2 절 동물보호시설 대상 설문 조사	65
1. 설문 조사 개요	65
2. 설문 조사결과 및 분석	67

3. 설문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85
제 3 절 자문단 회의	88
1. 자문단 회의 개요	88
2. 자문단 회의	88
3. 자문단 회의 시사점	88
제 4 장 국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 현황	93
제 1 절 국내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 현황	93
1. 국내 연구 동향	93
2. 국내 동물보호 관련 법령	95
3. 국내 동물보호 관련 제도·정책	108
4. 국내 동물보호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의 시사점	113
5.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 현황	115
제 2 절 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 현황	118
1. 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정책	118
2. 해외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 현황	125
제 5 장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	135
제 1 절 분뇨처리 기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	135
1. 동물보호시설의 분류	135
2.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시설 및 관리기준 방안	136
3.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방안	159
제 2 절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 수립의 기본 원칙	170
1. 기본 원칙 제시의 필요성	170
2. 동물보호 복지의 적용 우선순위	172
제 3 절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설 관리방안	175
1. 공공 동물보호시설의 관리	175

제 6 장 성과 요약 및 기대효과	179
제 1 절 성과 요약 및 기대 효과	179
1. 성과 요약	179
2.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180
제 2 절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화	181
1.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최소화)를 위한 정책	181
부록	187
[부록 1] 동물보호시설 현장 실태조사(전문)	189
[부록 2] 자문단 회의(전문)	232
[부록 3] 설문 조사(양식)	256

< 표 목 차 >

[표 1] 유실·유기동물보호 형태 현황	16
[표 2] 유실·유기동물보호 형태 연도별 현황	16
[표 3] 전국 동물보호센터 현황 (2018년 말 기준)	17
[표 4] 2018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시도별, 축종별 %)	18
[표 5] 전국 사설 동물보호소 지역별 현황	19
[표 6] 전국 사설 동물보호소 규모별 현황	20
[표 7] 독일 내 반려동물 수(2016)	35
[표 8] 개와 고양이 사육 현황	43
[표 9]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건물	45
[표 10]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보호 동물 처리방법	46
[표 11]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취급동물 수	46
[표 12]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수입지출내역	47
[표 13]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사육 포기동물 인수수수료	47
[표 14]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보호 동물 소유자 반환수수료	47
[표 15]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 동물보호 실적	48
[표 16] 사사 야마 ARK의 시설 내역	49
[표 17] 오사카 ARK 개·고양이 입양 실적	51
[표 18] 조사 동물보호시설 기본운영 현황	62
[표 19] 복합약취 측정결과	64
[표 20] 국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거리 변경(안)	64
[표 21] 보호 동물 평균 마릿수 (전체)	69
[표 22] 보호 동물 평균 마릿수 (공공)	69
[표 23] 보호 동물 평균 마릿수 (사설)	69
[표 24] 동물보호센터(보호소) 운영비용 (만원/월)	76
[표 25] 보호 동물 1마리당 적정 수용면적 (평/마리)	77
[표 26] 1인당 유기동물 관리 마릿수 (마리/사람)	78
[표 27] 광역자치 시 현황 및 관련 조례 명	103

[표 28] 광역자치도 현황 및 관련 조례 명	103
[표 29] 기초자치단체(광역시 구) 현황 및 관련 조례 명	105
[표 30]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도 시 군) 현황 및 관련 조례 명	105
[표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분석	106
[표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	106
[표 33] 경상남도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항	107
[표 34] 경상남도 함안군 동물보호 조례 조항	107
[표 35] 동물등록제 대행기관 현황	108
[표 36] 동물등록 현황	109
[표 37] 2018년 지자체별 동물등록 현황	110
[표 38]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운영비용	111
[표 39]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115
[표 40] 사육면적 60㎡ 구분에 따른 분류	115
[표 41] 분뇨처리시설 보유 여부 및 처리방식	116
[표 42]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117
[표 43] 각국의 동물보호 관련 법 및 제정 시기	118
[표 44] 해외 애완동물 발생 분뇨 처리방식	125
[표 45] 설문 조사 동물보호시설 평균 대·중·소형견 보호 관리 비율	138
[표 46] 산정된 80AUf 기준 분변 발생량 추정	139
[표 47] 「가축분뇨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139
[표 48]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0] 신고대상 배출시설 기준(안)	139
[표 49] 설문 대상 동물보호시설 배출시설 신고기준(안) 적용	146
[표 50] 설문 대상 동물보호시설 배출시설 신고기준 비교	146
[표 51] 설문 대상 동물보호시설 평균 대·중·소형견 보호 관리 비율 적용	147
[표 52] 조사 동물보호시설 기본운영 현황	149
[표 53] 복합약취 측정결과	150
[표 54]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 - 장별	172
[표 55]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 장별	172

< 그림 목 차 >

<그림 1> 반려동물 사육 여부(n=1,000) 및 지역별 사육비율(n=1,000)	11
<그림 2> 반려동물 사육 비중 및 마릿수	12
<그림 3>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추이	13
<그림 4> 반려동물 시장의 Value Chain	14
<그림 5> 국내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마리)	15
<그림 6> 뉴욕 ASPCA Onyx & Breezy Shefts 입양센터	22
<그림 7> 뉴욕 ASPCA 본부 전경과 HLE 집행부 배지	23
<그림 8> 뉴욕 ASPCA 동물병원 치료실과 동물 구조 차량	23
<그림 9> ASPCA 진료실	23
<그림 10> ASPCA 행동평가 및 교정실 / Pet point program	24
<그림 11> ASPCA 식기 소독(trifectant 이용) / 바닥 청소도구	24
<그림 12> ASPCA 청소도구 / 소독제	24
<그림 13> ASPCA 세탁물 분류 / 처치실	25
<그림 14> ASPCA 고양이 격리실 / 개체 치료일지	25
<그림 15> ASPCA 곰팡이성 피부염 격리실 / 소화기질환 개체 격리실	25
<그림 16> ASPCA 고양이 보호실(자묘) 1 / 고양이 보호실 2	26
<그림 17> ASPCA 개 보호실 1, 2 / 개체 상태 기록지	26
<그림 18> ASPCA 이동 보호소 차량 / 이송 차량	26
<그림 19> ASPCA 행동 교정기구(air horn) / 행동 교정기구(clicker)	27
<그림 20> ASPCA 공격성 있는 개체보호실 / 고양이 사회화 교육실	27
<그림 21> ASPCA 부검대	28
<그림 22> ASPCA 이동 진료 차량 외부 1 / 이동 진료 차량 외부 2	29
<그림 23> ASPCA 이동 진료 차량 내부 / 이동 진료 차량 수술실	29
<그림 24> ASPCA 이동 중성화클리닉 수술실과 무료이용 쿠폰	29
<그림 25> ASPCA 이동 중성화클리닉 외관과 내부	30
<그림 26> 영국동물애호협회, RSPCA 본부 건물(Horsham)	32

<그림 27> RSPCA 동물보호소 전경과 동물보호소 접수실	32
<그림 28> RSPCA 동물보호소 신체 검사실과 검사실	33
<그림 29> RSPCA 동물보호소 입원실과 준비실	33
<그림 30> RSPCA 동물보호소 세탁실과 세제, 소독약	33
<그림 31> RSPCA 개 보호실(실외)과 실내 1	33
<그림 32> RSPCA 개 보호실 실내 2와 개체 기록지	34
<그림 33> RSPCA 개 보호실 내 침대와 차량, 조사관	34
<그림 34> RSPCA의 조사관과 지위에 따른 휘장	34
<그림 35> 독일 동물보호법 제1조 1항	36
<그림 36> 슈투트가르트 전경	36
<그림 37> 티어하임 전경과 보호실	38
<그림 38> 독일의 까다로운 입양절차	39
<그림 39> 독일 반려동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40
<그림 40> 베를린 동물보호소 로고와 동물보호소 입구	41
<그림 41> 베를린 동물보호소 접수실과 교육실	41
<그림 42> 베를린 동물보호소 진료실과 동물보호소 내 소독용 매트	42
<그림 43> 베를린 동물보호소 고양이 입원실	42
<그림 44> 베를린 동물보호소 이송 차량과 이동 진료 차량	42
<그림 45> 베를린 동물보호소 개 보호실 실내	42
<그림 46> 베를린 동물보호소 개 보호실 실외와 개 운동장	43
<그림 47> 사사 야마 ARK 견사(2014년 신축)와 건축 중인 신규 시설 조감도	50
<그림 48> 오사카 ARK의 동물보호소	50
<그림 49> 설문 응답 동물보호시설 현황(공공/사설)	67
<그림 50> 동물보호시설 운영 유형별 현황	67
<그림 51> 동물보호시설 지역별 현황	68
<그림 52> 동물보호시설 규모별 현황	68
<그림 53> 유실·유기동물을 교육하는 시설 보유 또는 프로그램 진행 여부	71
<그림 54> 유실·유기동물을 교육하여 분양(입양)하는지 여부	71

<그림 55> 발생하는 분노처리 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72
<그림 56> 분과 뇨 별도 처리 시 처리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72
<그림 57> 동물 사체 처리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73
<그림 58> 동물 사체 위탁 처리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73
<그림 59> 사체 임시 보관시설 보유 여부	73
<그림 60>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74
<그림 61> 악취방지시설 보유 여부	74
<그림 62> 소독시설 보유 여부	74
<그림 63> 소음방지시설 보유 여부	74
<그림 64> 연간 민원 발생 횟수(소음, 악취 등)	75
<그림 65> 민원에 대한 관리지침(매뉴얼) 보유 여부	75
<그림 66> 지자체 지도·감독 여부 및 횟수	76
<그림 67> 지자체 지원제도 및 보조금 수혜 여부	77
<그림 68> 길고양이 중성화 대상 현황	111
<그림 69> 내장형 등록제 활성화 지원사업	112
<그림 70>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의 개 분변 비닐봉지로 넘치는 수거용기	126
<그림 71>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bean bag pooper scooper game	129
<그림 72>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개 분뇨 관련 표지판	130
<그림 73> 나이지리아 대학의 실험에 사용된 바이오 소화기 (Bio digester, 프로토타입)	131
<그림 74>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190
<그림 75>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191
<그림 76>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192
<그림 77> 광주 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194
<그림 78> 창원시 마산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195
<그림 79> 함안군 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197
<그림 80> 제주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198

<그림 81>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현장조사 사진	200
<그림 82>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202
<그림 83> 대구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203
<그림 84>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205
<그림 85> 화순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206
<그림 86> 러브펫동물병원 현장조사 사진	208
<그림 87> 디아크 동물종합병원 현장조사 사진	209
<그림 88> 죽전TNR동물병원 현장조사 사진	210
<그림 89> (사)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현장조사 사진	212
<그림 90>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유기견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213
<그림 91> 사설 동물보호소 A 현장조사 사진	215
<그림 92> 사설 동물보호소 B 현장조사 사진	216
<그림 93> 사설 동물보호소 C 현장조사 사진	217
<그림 94> 사설 동물보호소 D 현장조사 사진	219
<그림 95> 사설 동물보호소 E 현장조사 사진	220
<그림 96> 사설 동물보호소 F 현장조사 사진	221
<그림 97> 사설 동물보호소 G 현장조사 사진	222
<그림 98> 사설 동물보호소 H 현장조사 사진	223
<그림 99> 사설 동물보호소 I 현장조사 사진	224
<그림 100> 사설 동물보호소 J 현장조사 사진	225
<그림 101> 사설 동물보호소 K 현장조사 사진	226
<그림 102> 사설 동물보호소 L 현장조사 사진	227
<그림 103> 사설 동물보호소 M 현장조사 사진	228
<그림 104> 사설 동물보호소 M 현장조사 사진	229
<그림 105> 사설 동물보호소 O 현장조사 사진	230
<그림 106> 사설 동물보호소 P 현장조사 사진	231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별 연구 내용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가.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 국민의식의 변화와 관련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으로 단순히 기호에 의해서 동물을 사육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족과 같이 함께하고 사육하는 반려동물로 인간화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도래함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018년 통계청 기준 20,500천 가구 중 25.1%¹⁾인 5,146천 가구로 추정됨
 -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전체 인구 51,629천 명 중 12,968천 명(가구 평균 2.52명으로 환산)으로 반려인구 천만 명 시대에 진입함
 - 이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생활 양식의 변화, 반려동물의 인간화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요인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반려동물의 사육 가구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등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슈화됨
 -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수도 2017년 102,593마리, 2018년 121,077마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구조·보호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길고양이 관련, 동물 분실 및 구조 요구 등 다양한 민원 증가로 인하여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 교통사고, 두려움, 동물 학대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정 다툼이 급증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1) KB 경영 지주 경영연구소. 2018.12. '2018 반려동물보고서'

나.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현실적인 관리기준 미비

- 2018년 6월, 대구시에 소재하는 한 사설 동물보호소²⁾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철회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2018년 3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2013년부터 현행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신고 대상시설임에도 신고 없이 유기동물을 보호해온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하여 대구 동구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림
 - 사설 동물보호소의 폐쇄를 막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 명이 넘자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사용중지 명령 철회 요청에 대하여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사설 동물보호소의 분뇨처리 기준을 포함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하게 되어있어,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법적 개념 및 관리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음
- 2019년 1월 한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구조·보호한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보호소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안락사를 시행해 온 부분에 대한 논쟁거리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자,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유실·유기동물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공공기관과 지자체 동물보호 수용 능력의 한계와 안락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사설 동물보호소가 증가 추세임
 - 사설 동물보호소의 대부분이 개인 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령에 따른 지원 및 관리지침의 부재로 인하여 관리환경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보다 열악한 실정임
- 「동물보호법」에서 사설 동물보호소의 분뇨처리 기준을 포함한 관리기준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관련 개정안 발의 등, 기준 제시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이외의, 동물보호단체 또는 개인이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

다.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분뇨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환경시설 기준 제시를 위한 현장조사와 과학적 근거자료 및 법률적 검토

- 지자체 지정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환경시설 및 분뇨발생량과 분뇨처리 방법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전국에 산재하여 소재하고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수와 입소 되어 관리하는 유실·유기동물의 수, 그리고 환경조건 등이 각 사설 동물보호소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임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실·유기동물' 통계자료에서도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자료는 빠져 있음
 -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부족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의 분뇨발생량과 분뇨처리 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조사가 필요함
 - 현장 중심의 조사를 위해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주소 확인 가능한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여 보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할 계획임
 - 현장 중심조사를 통한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운영 주체별, 사육 규모 별 현황에 대한 파악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축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려고 함
- 「동물보호법」과 더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행정규칙(고시 등)을 검토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관련 조례의 검토를 통하여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환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제시하고자 함
 -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환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의 제시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비롯하여 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동물보호법」의 행정규칙으로 제정 고시되어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환경 및 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시설에 대한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적정 관리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가. 분뇨 처리기준을 포함하여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현장 실태조사 및 설문 조사를 통한 심층 조사로 적정시설 및 관리기준 검토
-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 환경시설 및 관리기준 제시
- 동물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시설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제 2 절 과업별 연구 내용

1.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현장실태 조사

가.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 방법 및 분뇨처리 기준 등 운영수준 분석

- 운영 주체별 :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설 동물보호센터(단체, 개인)
- 지역별(권역별), 사육 규모별(사육 규모 분류기준 선정)
 - 현장 실태조사 : 12회 - 회당 3~4개소(공공, 사설) 방문 조사
- 개·고양이의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4개소 선정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 예정

2. 현장실태조사 결과 분석

가. 축종별, 크기별 필요한 시설기준 및 분뇨처리 방식 검토

- 개·고양이 kg당 분뇨발생량 유추, 대형견, 중·소형견, 고양이의 수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용량 혹은 처리 방식(공공처리시설, 정화조, 위탁, 퇴비사 등) 제시
- 해외 동물보호센터의 법령상 규제와 시설기준, 분뇨처리방식 검토

3. 관리방안 도출

- 동물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시설기준 도출 및 제시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하는 관리방안 도출 및 제시

4. 본 연구용역 추진 방향

가. 기초 선행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

- 분뇨 처리기준이 포함된 동물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용역은 기초 선행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더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 필요
 - 기초 선행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현장실태 표본조사와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인력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 국내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현황 조사를 통해 해외 동물복지 선진지 사례와 해외 동물보호 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법령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개정사항을 검토
 - 국내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현황 조사와 동물보호시설의 현장실태 표본 및 설문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분뇨 처리기준이 포함된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제시
 -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분류를 운영 주체별, 규모별로 분류하고, 분뇨 처리 등 환경시설 기준과 동물 복지적 기준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 방안을 도출하고 제시
- 분뇨 처리기준이 포함된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의 적용을 위한 법령과 제도·정책 및 장기적인 관리기준 제안
 - 본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보호시설의 단계 별 관리기준 및 관련 제도·정책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 제시
 - 동물보호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과 정책에 근거한 정부와 지자체의 분뇨처리 시설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의 방안 제시
 - 또한, 동물보호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운영 방안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제도·정책 등 제시

제2장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제1절 국내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제2절 해외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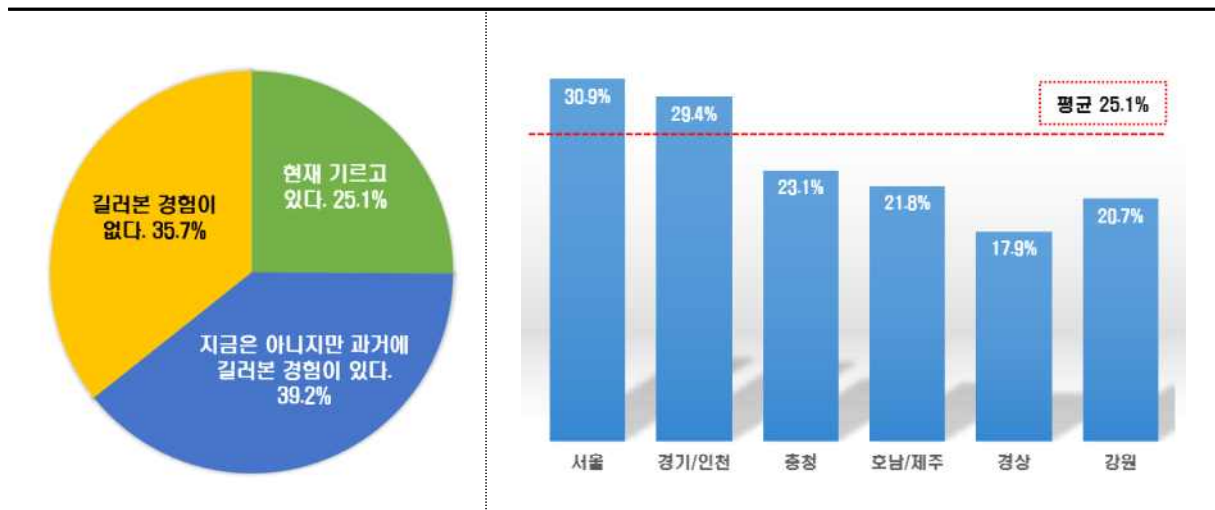
제 2 장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제 1 절 국내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1.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현황

가. 2018 반려동물 사육 현황³⁾

- 2018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1%⁴⁾이고, 과거에 길러본 적 있는 가구 39.2%를 포함하면 반려동물을 길러 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총 64.3%⁵⁾임
- 서울(30.9%)과 경기(29.5%), 인천(28.8%) 등 수도권의 반려동물 사육비율이 높으며, 특히 경기도의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등 신도시의 사육비율(34.5%)이 높음
- 전국의 사육 가구 추정 수는 502만 가구이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사육 가구 수는 295만 가구로 전체 사육 가구의 절반 이상(58.7%)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림 1> 반려동물 사육 여부(n=1,000) 및 지역별 사육비율(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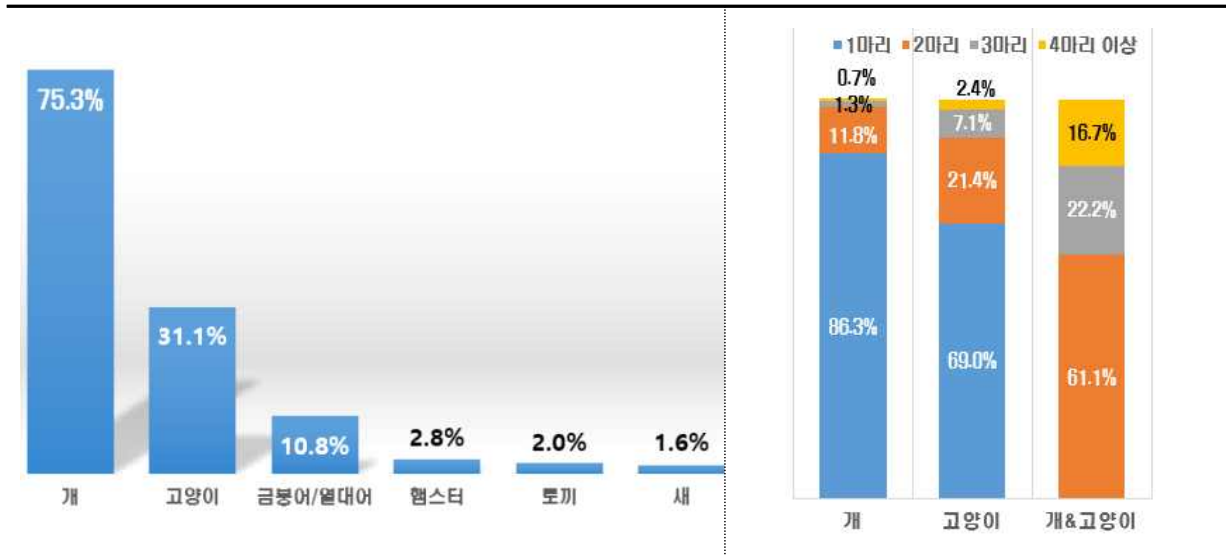
- 사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개’가 75.3%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가 31.1%로 뒤를 이음
- 그 외 ‘금붕어, 열대어’(10.8%), ‘햄스터’(2.8%), ‘토끼’(2.0%), ‘새’(1.6%) 등을 기르고 있음

3) KB 경영 지주 경영연구소. 2018.12. ‘2018 반려동물보고서’

4) 2017년 조사된 다른 연구들의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을 보면, 농촌경제연구소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연구’(성인 2,000명 대상) 29.4%, 한국펫산업협회 ‘2017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2,024명 대상) 28.8%임

5)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 현재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에서는 ‘1마리’를 기르는 경우가 6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마리’인 경우 21.2%, ‘3~5마리’ 8.2% 등임
- ‘개’는 가구당 평균 1.2마리로, 1마리(86.3%) 또는 2마리(11.8%)를 키우는 가구가 대부분임
- ‘고양이’는 가구당 평균 1.4마리로, 1마리 키우는 가구는 69.0%, 2마리는 21.4%로 2마리 이상 키우는 가구가 ‘개’보다 많음



<그림 2> 반려동물 사육 비중 및 마릿수

주 :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n=251(복수 응답) /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 n=231

나.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 현황⁶⁾

-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사육 수요도 늘어나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1%씩 성장하여 2017년 약 2조 3,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0)
- 2017년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가 2010년 대비 80% 증가했는데, 개와 고양이의 보유 비중이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까지 증가했고, 2017년 29.2%로 추정되는 등 사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내 반려동물 등 관련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가 유지되어 2023년 4조 6천억 원, 2027년 6조 원 규모의 시장을 기대하고 있음

6)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12. ‘2018년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사육실태’



<그림 3>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추이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2017)

- 국내 1인 가구, 부부가구 비중이 각각 2015년에 27.2%, 15.5%에서 2025년 31.9%, 20.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반려동물 사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사료, 장난감과 액세서리, 관리 용품, 동물병원, 미용, 호텔, 장묘업 등의 연관산업 동반 성장을 기대되고 있음
 - 최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스마트 케어, 보안카메라, IoT를 이용한 관리용 로봇/장난감, 위치 추적기 등의 전기 전자분야, 반려동물 전용 TV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및 자격증 시장까지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는 추세임
- 반려동물 시장은 크게 생산, 유통, 반려(가정), 사후 등의 연관산업 분야로 구분되며, 각 Value Chain 별로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반려(가정)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업체와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료제조 및 유통, 관련 용품 제조 및 유통, 의약품 제조/도소매, 수의/진료서비스, 미용/휴게/위탁서비스, 금융서비스(보험/카드)가 해당함
 - 반려동물의 사육과정(가정) 상에서 사료, 장난감/액세서리/패션, 관리 용품(목욕/위생/배변), 수의/의약/진료서비스 비중이 큰 편이며, 미용/위탁서비스, 장묘서비스 등도 시장을 형성하면서 확대되는 추세임
 -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 사료 산업 4,841억 원, 용품 관련 산업 3,849억 원, 수의 서비스업 6,551억 원, 장묘 및 보호 서비스 338억 원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기준)

-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해서 용품제조 및 유통, 수의 서비스 관련 기업이 각각 3,850개 3,955개로 가장 많고, 사료/식품제조업체가 844개, 동물의약품제조 및 유통업체가 각각 55개, 367개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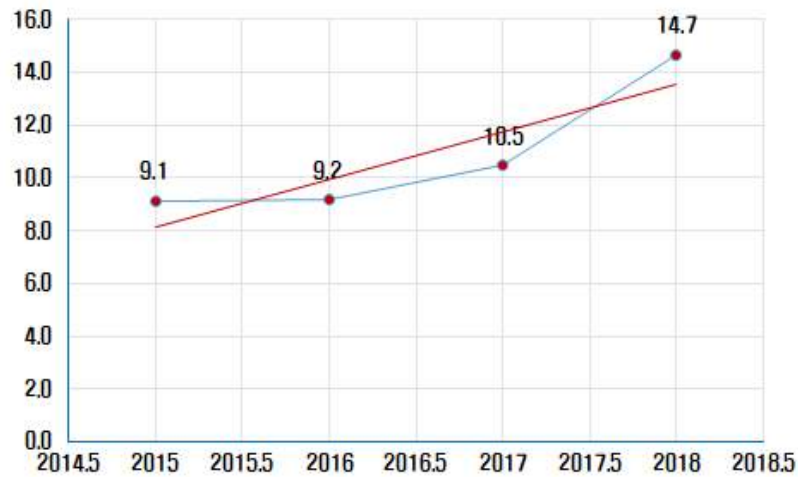
<그림 4> 반려동물 시장의 Value Chain

주 : 1) 농림축산식품부(2016), 2) 농림축산식품부(2018), 3) 농림축산검역본부(2017), 4) 통계청(2015), 5) 한국콘텐츠미디어(2018)
 자료 :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재구성

다. 유실·유기동물 관련 현황⁷⁾

- 농림축산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8년 반려동물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주제로 조사함
 -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양 현황 등을 조사함
- 2018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 6,617마리로 전년 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 4,077마리로 조사됨
 -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 이후 신규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함
 - 신규등록 반려견은 2015년 9만 1,232마리에서 2016년 9만 1,590마리로 0.4%, 2017년 10만 4,809마리로 14.4%, 2018년 14만 6,617마리로 39.8% 증가함

7)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년 반려동물보호·복지 실태 조사결과’



<그림 5> 국내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마리)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2019)

- 2018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5%, 서울 20.8%, 인천 6.3% 순이었으며, 지역별 등록 마릿수는 경기도가 4만 6,183마리, 서울 3만 0,560마리, 인천 9,297마리, 부산 7,732마리 등으로 경기도가 등록률과 등록 마릿수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는 298개소이며, 2018년 12만 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으며, 운영비용은 200억 4천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
 - 동물보호센터의 운영형태별로 보면, 민간위탁(위탁 보호) 255개소, 지자체(시·군) 직영 31개소, 시설위탁이 12개소, 순임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015년에는 97.5억 원에서 2016년 114.8억 원으로 2017년에는 155.5억 원, 2018년에는 200.4억 원의 운영비용이 소요되어 2017년과 대비하여 28.9% 증가함
- 2008년 동물등록제가 시범 도입되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하여 총 130만 4,077여 마리가 등록됨
 - 유실·유기동물 역시 증가 추세로 2018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집계되었고 이는 2017년 대비 18.0% 증가한 결과임

○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7.6%, 자연사 23.9%, 안락사 20.2%, 소유주 인도 13.0%, 보호 중 11.7% 순이며, 보호 중인 동물의 비율은 2017년 4.7%에서 11.7%로 증가함

[표 1] 유실·유기동물보호 형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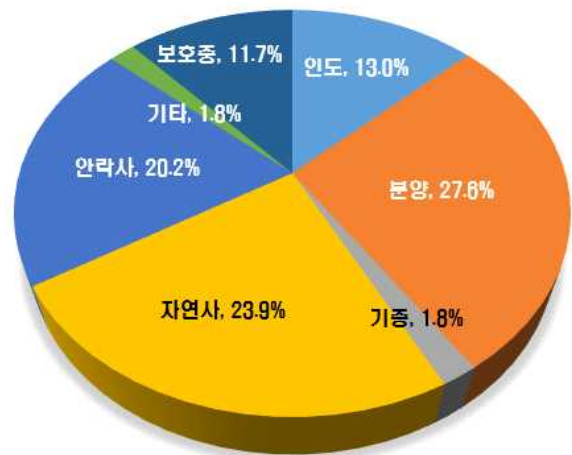
축종	계(마리)	인도	분양	기증 (임시 보호 등)	자연사	안락사	기타*	보호 중
개	91,797	15,148	25,444	1,406	14,150	22,635	855	12,159
		16.5%	27.7%	1.5%	15.4%	24.7%	0.9%	13.2%
고양이	28,090	500	7,238	773	14,572	1,807	1,265	1,935
		1.8%	25.8%	2.8%	51.9%	6.4%	4.5%	6.9%
기타 (토끼 등)	1,190	97	740	13	168	67	21	84
		8.2%	62.2%	1.1%	14.1%	5.6%	1.8%	7.1%
계	121,077	15,745	33,422	2,192	28,890	24,509	2,141	14,178
		13.0%	27.6%	1.8%	23.9%	20.2%	1.8%	11.7%

* 기타 : 포획 불가, 방사(예 : 고양이) 등

[표 2] 유실·유기동물보호 형태 연도별 현황

처리 방법	비율(%)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도	13.0	14.6	15.2	14.5	13.0
분양	31.4	32.0	30.4	30.1	27.6
기증	1.0	1.2	1.6	1.9	1.8
자연사	23.0	22.7	25.0	27.1	23.9
안락사	22.7	20.0	19.9	20.2	20.2
기타	1.0	1.3	1.7	1.5	1.8
보호 중	7.9	8.2	6.2	4.7	11.7

유기동물 처리현황 (2018)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2019)

2. 국내 동물보호시설 현황

가. 전국 동물보호센터 현황⁸⁾

○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총 298개소임 (2018년 기준)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65개소이며, 광주, 대전, 세종, 제주는 1개이고, 총 298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31개소, 시설위탁(시군구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임대.운영하는 형태) 12개소, 위탁 보호 255개소로, 대부분 위탁 보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 전국 동물보호센터 현황 (2018년 말 기준)

지역	합계 (개소)	백 분 율	운영형태			운영현황		
			시군 직영	시설위탁*	위탁보호**	운영인력 (명)	평균보호 기간(일)	운영비용*** (백만 원)
계	298	100%	31	12	255	800	34	20,039
서울	27	9.1%	1	-	26	96	14	2,241
부산	4	1.3%	-	-	4	33	20	670
대구	26	8.7%	-	-	26	50	14	655
인천	8	2.7%	-	-	8	27	19	832
광주	1	0.3%	-	1	-	11	33	530
대전	1	0.3%	1	-	-	24	18	981
울산	19	6.4%	-	-	19	47	53	358
세종	1	0.3%	-	-	1	2	33	107
경기	65	21.8%	3	-	62	166	19	3,514
강원	19	6.4%	6	6	7	48	60	978
충북	11	3.7%	-	-	11	35	30	963
충남	18	6.0%	-	2	16	34	50	1,212
전북	26	8.7%	-	1	25	77	39	685
전남	25	8.4%	5	-	20	42	51	996
경북	26	8.7%	6	2	18	43	55	1,253
경남	20	6.7%	8	-	12	52	53	1,830
제주	1	0.3%	1	-	-	13	19	2,234

* 시설위탁은 시군구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임대.운영하는 형태 / ** 위탁 보호는 동물병원 등 민간업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 / *** 연간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동물 구조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위탁비 등 전반 비용을 포함

8)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7. '2018년 반려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 현황을 보면 2015년 82,082마리, 2016년 89,732마리, 2017년 102,593마리, 2018년에는 121,077마리가 구조·보호됨

- 2018년에는 121,077마리로 전년 대비 18.0% 증가하였으며, 개 75.8%,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됨

-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 21.5%, 경남 9.4%, 서울 6.8%, 제주 6.3% 순임

[표 4] 2018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시도별, 축종별 %)

(단위 :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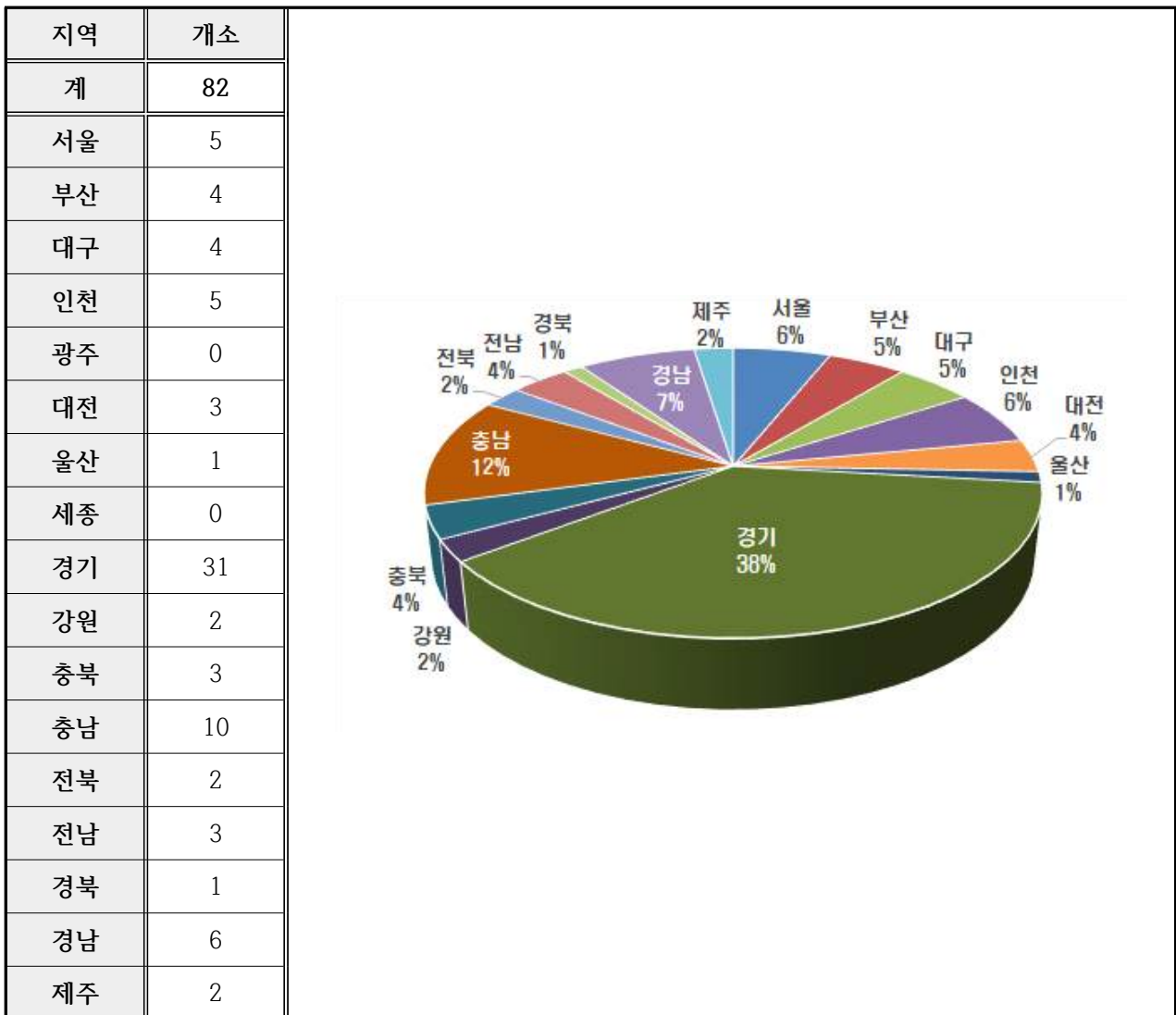
시.도	계	백분율 (시도별)	개		고양이		기타(토끼 등)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서울	8,207	6.8%	5,359	65.3%	2,603	31.7%	245	3.0%
부산	7,523	6.2%	4,370	58.1%	3,069	40.8%	84	1.1%
대구	4,799	4.0%	2,743	57.2%	2,004	41.8%	52	1.1%
인천	6,903	5.7%	4,539	65.8%	2,256	32.7%	108	1.6%
광주	3,260	2.7%	1,766	54.2%	1,471	45.1%	23	0.7%
대전	5,298	4.4%	3,112	58.7%	2,117	40.0%	69	1.3%
울산	2,906	2.4%	1,647	56.7%	1,244	42.8%	15	0.5%
세종	404	0.3%	298	73.8%	103	25.5%	3	0.7%
경기	26,018	21.5%	20,077	77.2%	5,574	21.4%	367	1.4%
강원	5,326	4.4%	4,639	87.1%	657	12.3%	30	0.6%
충북	3,750	3.1%	3,279	87.4%	441	11.8%	30	0.8%
충남	7,414	6.1%	5,858	79.0%	1,503	20.3%	53	0.7%
전북	6,041	5.0%	5,195	86.0%	817	13.5%	29	0.5%
전남	6,724	5.6%	5,048	75.1%	1,646	24.5%	30	0.4%
경북	7,514	6.2%	6,487	86.3%	1,000	13.3%	27	0.4%
경남	11,387	9.4%	10,538	92.5%	825	7.2%	24	0.2%
제주	7,603	6.3%	6,842	90.0%	760	10.0%	1	0.0%
계	121,077	100.0%	91,797	75.8%	28,090	23.2%	1,190	1.0%

* 동일지역 내 축종별 구조현황임 (서울) 개 65.3, 고양이 31.7, 기타 3.0

나. 사설 동물보호소 현황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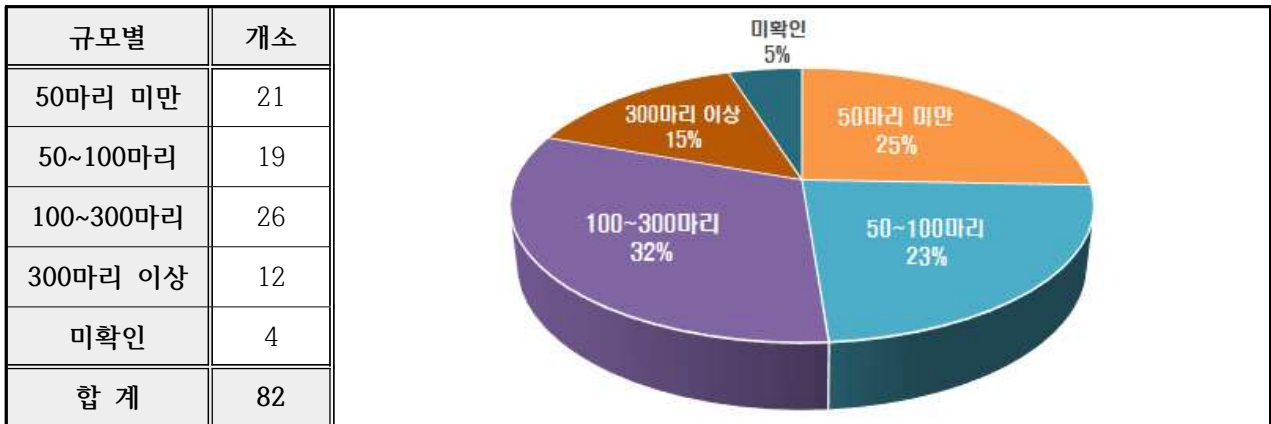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2018년도 기준 82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가장 많은 31개소이며, 광주와 세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운영 주체는 개인 51%, 단체 39%, 미등록 단체 10%로 조사됨
(전체의 90%가 사설 동물보호소, 그 외 쉼터 8%, 입양센터 1%, 가정집 1%)
- 보호 중인 동물 수는 50마리 미만 21개소, 50~100마리 19개소, 100~300마리 26개소, 300마리 이상이 12개소였고 등이었고, 보호 동물 수가 미확인된 보호소가 4개소임

[표 5] 전국 사설 동물보호소 지역별 현황



9) 농림축산식품부. 2019.3.

[표 6] 전국 사설 동물보호소 규모별 현황



3. 국내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조사 시사점

가. 국내 동물보호시설 현황조사 결과

-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98개소로 지역별 동물보호센터의 운영형태 및 운영현황에 대한 현황 파악이 비교적 쉬움
 - 경기도가 65개소, 광주, 대전, 세종, 제주는 1개, 총 298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31개소, 시설위탁(시군구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임대.운영하는 형태) 12개소, 위탁 보호 255개소임
- 다만, 2018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자료에서 지역별 개, 고양이, 기타(토끼 등)의 유실·유기동물의 마릿수 및 비율을 확인하고, 전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형태 현황 파악 후 더 구체적인 보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형태를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시스템과 지자체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확인이 불가함
 - 지역별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형태에 대한 세부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시스템과 지자체 홈페이지 통계자료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2018년 기준 82개소로 조사되어 있으나 실제 정확히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조사된 82개소도 주소나 연락처가 확인 불가한 곳이 다수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자료만을 가지고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경우처럼 사설 동물보호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 2 절 해외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

1. 해외 동물보호시설 현황

가. 미국

1) 미국의 동물보호센터 현황¹⁰⁾

- 미국은 반려동물의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고, 주마다 대다수 등록제,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한 개의 판단 기준, 개의 공공장소에서의 자유로운 활보 금지, 공공질서 위반 시 벌금형 처벌 등 주마다 개의 통제에 관한 주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 주마다 운영체계가 다르며 동물보호법 아래 주마다 주법률이 있음
 - 운영 주체 역시 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ASPCA(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HSUS(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등 큰 동물보호단체와 지부별로 운영을 하거나 지역별 동물보호단체에 의한 운영이 되고 있음
- 주마다 운영자금의 규모가 다르지만 시 직영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물보호 단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며, 후원금이나 자체 수입원(입양비, 외부 진료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이나, 단체별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이 대부분 존재하며 보호소 운영 정책 역시 지역별, 단체별 차이가 나고 있음
- 동물보호소 운영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질병 관리, 개체관리, 행동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희망자에게 신뢰를 주며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입양자도 보호하고 있음
- 동물보호소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구조인력, 행동평가인력, 관리인력, 진료 인력 등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동물보호단체(ASPCA, HSUS 등)에서 민간 자격증을 줌
- Shelter medicine(보호소 의학)이란 과목이 몇몇 수의과대학(Cornell, UC Davis, Florida 등)에서 설강이 되어 동물보호소 수의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음.

가) 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¹¹⁾

- 비영리 동물보호단체로 1866년 4월 10일 북미 최초로 설립된 최대 규모의 단체이며, 미국에서 HSUS(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HA(American Humane) 등과 함께 가장 큰 동물보호단체이며 후원금과 입양비 등으로 운영됨

10) 전남대학교 대학원 명보영. 2013.8.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1) 서울특별시. 2016.7.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각주마다 지침에 의해 지부별로 운영되고 지역보호소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음
- ASPCA 본사는 맨해튼 도심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호텔과 아파트, 놀이터가 있음 : 424 E. 92nd St. Manhattan, New York City, 10128
- 본부에서는 뉴욕시보호소 등에서 입양을 목적으로 선별한 개체와 사육을 포기한 개체, 학대 받은 동물들을 위한 보호, 치료, 행동 교정, 입양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에 관한 법 집행도 하고 있으며 캠페인, 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입양센터, 동물병원, 수의 법의학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
- 일 년에 본부에서 관리하는 동물은 4천 5백 마리 정도이며, 관리를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다른 보호시설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장소 부족의 이유로 안락사하지 않음
- ASPCA Onyx & Breezy Shefts 입양센터는 건물 1층에 있으며, 면적은 1,115㎡, 수용 능력은 약 300마리(개, 고양이)임



- 지하 1층 동물실(뉴욕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소된 동물 등 새로 반입된 동물이 3일간 머뭄)
- 1층 입양사무실, 동물실
- 2층 동물병원
- 3층 사무실
- 4층 진료실 및 사육실
- 5층 행동평가실

<그림 6> 뉴욕 ASPCA Onyx & Breezy Shefts 입양센터

- ASPCA의 기능과 역할로는
 - 동물 구조 : 동물 학대자, 투견, 동물번식자 등으로부터 동물 구조
 - 동물병원
 - 타 시설로 동물 이전 : 보호 여건 개선, 입양 촉진
 - 보호 동물 입양 : 이동입양센터 운영, 반려동물 선물카드¹²⁾, Meet your match¹³⁾
 - 동물 행동 교정 : 행동교정센터
 - 중성화 수술 : 중성화 수술 동물 운송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 중성화 수술클리닉

12) Gift-a-Pet Certificate

13) 성격이 유사한 동물과 사람을 입양대상으로 맺어주는 프로그램

- 연구개발 : 프로그램 개발, 법률 및 정책 연구, 정보 취합
- 수의사 실습처 제공

- ASPCA 산하 Humane Law Enforcement (HLE)에서 뉴욕의 동물 학대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조사관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7> 뉴욕 ASPCA 본부 전경과 HLE 집행부 배지



<그림 8> 뉴욕 ASPCA 동물병원 치료실과 동물 구조 차량

○ 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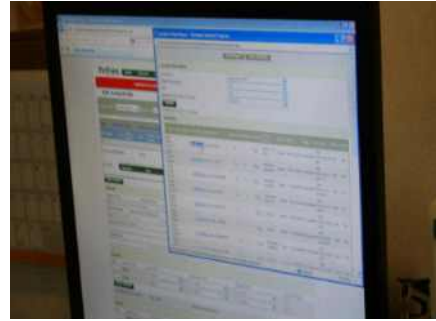
- 시 보호소뿐 아니라 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도 소유를 포기하고 입소시키는데 포기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며 동물 포기 이유, 개체 정보, 진료경력 등을 기록하며, 5천 5백 달러를 냄
- 입소 시 행동평가 및 질병 검사 등을 다시 실시하며, 입소 서류도 개, 고양이가 다름



- 입소 시 수의사에 의해 신체검사가 시행되며 각 보호실로 분류되어 보호됨

<그림 9> ASPCA 진료실

- 신체검사와 행동평가가 입소 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처럼 활용되며 개체정보기록을 미국 전역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이름 태그를 활용하며 모든 동물이 이동하여도 이름표에 있는 아이디를 조회하면 그 개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0> ASPCA 행동평가 및 교정실 / Pet point program

- 질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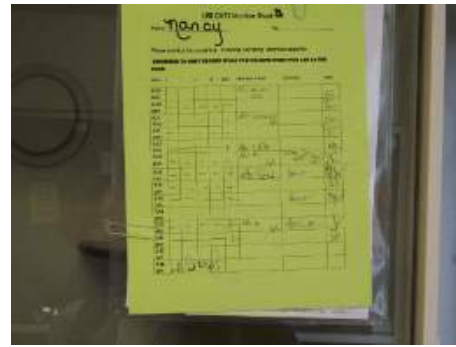
<그림 11> ASPCA 식기 소독(trifectant 이용) / 바닥 청소도구



<그림 12> ASPCA 청소도구 / 소독제



<그림 13> ASPCA 세탁물 분류 / 처치실



<그림 14> ASPCA 고양이 격리실 / 개체 치료일지



<그림 15> ASPCA 곰팡이성 피부염 격리실 / 소화기질환 개체 격리실

- 전염 우려가 있는 개체별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등이 실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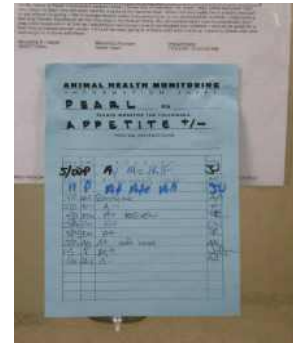
○ 개체관리

- 개체 정보 기록지(행동, 질병 등)와 개체별 특징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화장실, 식기, 장난감, 침대 등이 있음
- 물그릇을 제외한 화장실, 밥그릇은 일회용 종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체별로 먹이가 다르고 습식사료와 건식사료 등이 급여되고 있음



<그림 16> ASPCA 고양이 보호실(자묘) 1 / 고양이 보호실 2

- 개별 환풍구가 설치되어 온풍, 환기, 습도 등이 조절되고 있으며, 사회화를 위해서 질병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두 마리 이상 같은 방에서 보호함



<그림 17> ASPCA 개 보호실 1, 2 / 개체 상태 기록지

- 넓은 공간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문 앞에는 개체 정보, 산책용 줄, 장난감, 안내 문구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침대, 환기구, 배수구 등의 시설이 있음

○ 이동 보호소

-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보호소로 입양 홍보 및 캠페인을 벌임



<그림 18> ASPCA 이동 보호소 차량 / 이송 차량

○ 행동 교정

- 시 보호소에서는 행동평가까지 이루어지지만, ASPCA의 경우 전문가들에 의해 Safer test를 통해 행동평가를 하고, 행동교정훈련까지 하고 있음
- 행동 교정이 필요한 경우 Level 별로 나누는데, (고양이의 경우 1~2단계, 개는 1~3단계) Level에 따라 행동 교정을 맡는 자원봉사자가 다름
- 이 레벨과 크기에 따라 목줄의 색깔이 다름



<그림 19> ASPCA 행동 교정기구(air horn) / 행동 교정기구(clicker)



<그림 20> ASPCA 공격성 있는 개체보호실 / 고양이 사회화 교육실

○ 안락사

- 치료할 수 없는 동물의 경우 호스피스를 활용하며 안락사하는 방이 따로 있어 최대한 편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음
- 안락사 두수가 거의 없으므로 수의사가 시행함

-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사나운 동물의 경우가 대부분 안락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장애견도 입양이 되기 때문에 안락사는 많지 않음

○ 입양

- 3년 미만 동물은 75달러 정도 지급하고 입양할 수 있으며,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입양비를 받지 않고 보냄
- 이동 보호소는 목, 금, 토, 일 운영하며 입양 및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음
- 입양 시 설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 입양자에게 맞는 개체를 선택하며 파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관리 직원이 따로 있어 관리하고 있으며, 오렌지색 티셔츠(행동 교정 자원봉사자), 회색 티셔츠(전문인), 검은색 티셔츠(스텝), 초록색 티셔츠(위생, 급식, 산책 업무)와 같이 티셔츠 별로 업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자원봉사 과정- 자원봉사 핸드북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훈련을 받고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음

○ 임시 보호

- 웹사이트에 임시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 가족의 동의서 등의 정보를 작성해야 함
- 관리자에 의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친 후 동물의 상태에 따라 임시 보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ASPCA에서 필요 물품을 받는데, 동물의 치료가 필요하면 ASPCA에서 지원해줌

○ 부검실 - 수의 법의학은 미국에서 서서히 정립되는 분야임



- 동물 학대에 대한 사인 규명을 비롯하여 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보호소 내에서 발생한 병사 개체에 대한 부검을 통하여 병사 원인을 찾아 질병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그림 21> ASPCA 부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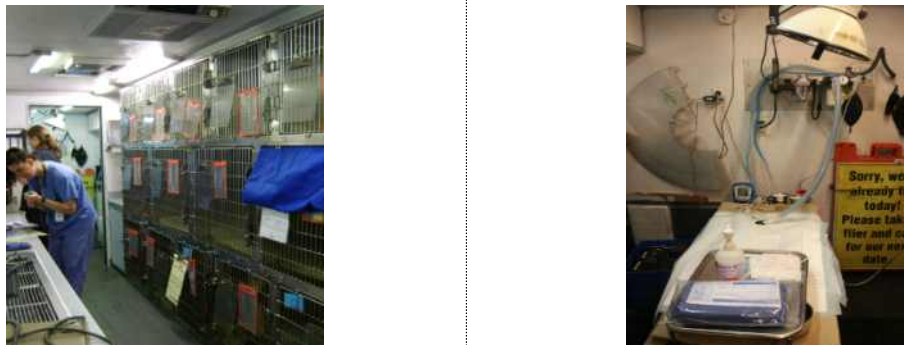
○ 이동 진료

- 요일별로 정해진 장소에 이동 진료 차를 운영하며 개, 고양이의 중성화(Neuter) 수술 및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체 수 조절 및 수술비 부담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그림 22> ASPCA 이동 진료 차량 외부 1 / 이동 진료 차량 외부 2

- 수의 간호 전문가 2인과 수의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에는 수술실, 케이지, 검사 장비 등이 갖춰져 있음



<그림 23> ASPCA 이동 진료 차량 내부 / 이동 진료 차량 수술실



<그림 24> ASPCA 이동 중성화클리닉 수술실과 무료이용 쿠폰



<그림 25> ASPCA 이동 중성화클리닉 외관과 내부

○ 뉴욕시와의 관계¹⁴⁾

- 뉴욕시 이동입양센터 차량 지원
- 뉴욕시 동물보호소 공간부족시 ASPCA 시설 공간 제공

나. 영국

1) 영국의 반려동물 사육 현황

- 영국에서는 전체의 47%인 1천 3백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데 사육하고 있는 동물은 반려견이 872만 마리, 고양이는 92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음¹⁵⁾
- 반려견은 2012년 892만 마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나, 소형견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임¹⁶⁾

2) 영국의 동물보호센터 현황¹⁷⁾

가) 영국 런던의 동물관리

- 런던의 동물관리 개요
- 영국은 2016년 4월부터 8주령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해 내장형 인식표 삽입 의무화
- 반려동물 관리는 런던시 또는 자치구보다 민간단체가 주도함
(녹색당이 동물관리를 위해 33개 자치구에 동물보호부서를 설치하고 런던시청에도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런던시청이나 33개 자치구의 역할은 크지 않으며¹⁸⁾, 런던 자치구도 유기동물 구조·보호 업무를 담당함. 그러나 보호시설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일부 자치구는 해당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14) 서울특별시. 2016.7.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15) 영국 애완 동물사료 제조업자협회 2017.
 16) Euro monitor 2017.
 17) 서울특별시. 2016.7.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18) London Green Party, 2016, London 2016 Green Party Manifesto for Animals

- 시설동물들의 건강관리와 수의 치료는 City of London의 동물건강복지팀(Animal Health and Welfare Team)이 33개 자치구와 계약을 맺고 수행함¹⁹⁾
(City of London의 동물건강복지팀이 담당하는 시설과 대상은 반려동물 판매소, 동물원, 개 번식시설, 개와 고양이 사육시설, 서커스시설, 승마시설, 공연동물, 위험한 야생동물 등)

○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역할²⁰⁾

- 반려동물의 관리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는 The Blue Cross, Cats Protection, Celia Hammond Animal Trust, Dogs Trust, The Free Neutering for Cats Scheme, The Mayhew Animal Home, The People's Dispensary for Sick Animals (PDS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RSPCA) 등임
- 동물보호단체의 역할은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약자가 보유한 병들거나 다친 동물 치료, 길거리 동물의 중성화(Neuter) 수술, 개체 인식표 달아주기, 사육 포기동물의 인수 및 입양, 반려동물 사육 및 행동 교정과 관련된 상담 등임
- 동물보호단체의 재원은 주로 기부, 유산소득이고 일부 런던시의 지원, 진료비, 수수료 등임

나) 영국 동물 애호 협회(RSPC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단체의 개요

- 1824년에 SPCA로 설립하여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의 후원을 받음. 현재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후원하고 있음
- 1840년 왕실(royal)이라는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지금의 RSPCA로 개칭하였음
-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됨(Charity number 219099, 잉글랜드와 웨일스)
- 동물 학대 감시 권한(동물보호법)을 가진 동물보호 감시관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 내에 166개소의 지부를 운영하며, 7개의 병원과 43개의 진료소 보유하고 있음
 - 2001년에 완공된 RSPCA 본부는 건물 가치가 9,500,000유로에 해당하며
 - 폐수 재활용 시스템과 채광이 잘 되는 구조, 에너지 효율이 높도록 설계
 - 동부 RSPCA Bedfordshire North Branch 외 30개소
 - 북부 RSPCA Barnsley & District Branch 외 49개소
 - 남동부 RSPCA Balham & Tooting Branch 외 52개소
 - 남부 및 남서부 RSPCA Basingstoke & Andover Branch 외 33개소
 - 북부 RSPCA Aberconwy Branch 외 40개소

19) City of London, Animal Health, <https://www.cityoflondon.gov.uk/services/animal-health-welfare/>

20) Mayor of London, 2004, Caring for Animals in London : Free and subsidized veterinary care for London's pets

- 4개 영역(반려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농장 동물)으로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함
- 인력 : 2011년 기준 1,667명의 인력이 근무하며, 330명의 조사관, 30명의 과학자, 180명의 동물복지사가 활동함



<그림 26> 영국동물애호협회, RSPCA 본부 건물(Horsham)

○ 단체 및 역할

- 동물 학대 조사 및 감시 : 330명의 조사관, 전국규모 전화상담실
- 동물 구조 : 배회 동물, 재난 피해 동물
- 동물보호소 운영 : 입소 동물 개체인식기 삽입 및 중성화 수술, 사육 포기동물 인수 (포기수수료 없음)
- 동물보호소 입소 동물 입양
- 고양이 중성화(Neuter) 수술 장려
- 동물보호 교육 : 초등학생 체험교육, 전문교육(학생, 교수, 사회복지사 등)
- 동물보호 활동 : 법령 제정
- 반려동물 보험상품 개발 :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이 RSPCA의 후원금으로 활용
- 퍼트니 동물병원 운영 : 동물보호소 입소 부상 동물 치료, 저소득층 반려동물 저가 치료, 개체인식기 장착 등



<그림 27> RSPCA 동물보호소 전경과 동물보호소 접수실



<그림 28> RSPCA 동물보호소 신체 검사실과 검사실



<그림 29> RSPCA 동물보호소 입원실과 준비실



<그림 30> RSPCA 동물보호소 세탁실과 세제, 소독약



<그림 31> RSPCA 개 보호실(실외)과 실내 1



<그림 32> RSPCA 개 보호실 실내 2와 개체 기록지



<그림 33> RSPCA 개 보호실 내 침대와 차량, 조사관

○ 정부와의 관계

- 영국 동물 애호협회(RSPCA) 동물보호 조사관은 Animal Welfare Act 2006에 따라 동물 학대에 대한 기소권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 영국 동물 애호협회(RSPCA) 조사관은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입는데, 전문성을 부여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방법임²¹⁾



<그림 34> RSPCA의 조사관과 지위에 따른 휘장

21) <http://myjobsearch.com/careers/animal-welfare-inspector.html>

다. 독일

1) 독일의 반려동물 사육 현황

- 독일 애완동물 용품 산업협회(IVH)에 따르면, 독일 가정의 4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중 고양이 22%, 강아지 17%, 새 4%, 물고기와 파충류 1%로 고양이를 가장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양이는 약 1300만 마리, 개는 약 86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반려동물 수는 약 2590만 마리임

[표 7] 독일 내 반려동물 수(2016)

단위 : 마리, %

연 번	종 류	단 위	비 율
1	고양이	1,300만	22%
2	개	860만	17%
3	소동물(햄스터, 토끼 등)	200만	2%
4	수족관	160만	2%
5	파충류	70만	1%
	총 계	2,590만	44%

자료: 독일 애완동물산업협회(IVH)

2) 독일의 동물보호센터 현황

가) 독일의 동물관리

- 독일의 동물복지
 - 1800년부터 일하는 말에 대한 학대 문제로부터 여론이 일어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1837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됨
 - 20세기에 들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에 대해 심리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1930년대에는 히틀러에 의해 동물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함
 - 2차대전 이후 동물 수가 급증하게 되어 사육밀도가 높아지고 환경문제,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사육밀도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되는 시발점이 됨
- 독일의 동물관리체계
 - 최초의 독일 동물보호법은 사회주의 시절인 1933년 제정, 현재 동물보호법은 1972년에 제정되었으며, 2002년 독일 기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가 국가 존립 목적 중 하나로 규정에 삽입되어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 운용 중임



<그림 35> 독일 동물보호법 제1조 1항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 보호하도록 함

-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의 특성에 맞게 일반적인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동물의 신체적 능력을 감소시키는 수술행위 및 동물 간의 싸움 금지
- 동물을 불가피하게 폐사시킬 때는 마취 후 행하도록 함
- 동물실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보호 담당관을 임명
-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나)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시청²²⁾

○ 슈투트가르트(Stuttgart)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erttemberg) 주, 네카어강 연안의 도시로 면적은 207.36km², 인구는 약 600,000명이고, 소수의 축산농가(가금 2,000수, 소 800두 사육)가 있으며, 다양한 반려동물을 보유, 도시 내 도축장을 폐쇄하고 있음



<그림 36> 슈투트가르트 전경

22) 농림축산식품부. 2018.11.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 개 세금

- 개 소유주는 개 입양 시 등록(1890년부터 Tattoo와 이름표, 인부 인식표 사용)을 해야 함 (현재 약 13,000마리 등록)
- 등록된 일반적인 개는 109유로(한화 14만3,352원²³⁾)/년의 세금이 부과되고 여러 마리의 경우 218유로(28만6,704원)/년 부과 (맹견은 600유로[78만9,096원]/년)
-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나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 홍보·교육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처벌 대상임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동물복지 담당 부서

- 두 개의 분과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 담당하고 있음
- 32-21 분과(정규직 1명, 비정규직 2명)에서 맹견관리를 맡고 있으며 동물등록·허가,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동물 관련 분쟁에 대한 조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학대 관련 신고 접수 시 실사 후 개선을 제시하고 개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자격 박탈 등의 조치
- 32-23 분과(수의사 9명)에서는 동물보호·법률 전문가들이 맹견에 대한 판정, 동물사육 시 동물복지 준수사항 등에 대한 검토 업무 담당

○ 동물보호소와의 협력

- 1837년 설립된 Tierschutzverein Stuttgart e.V.에는 개 100마리, 고양이 200마리, 돼지 3마리 등이 보호되고 있으며 해마다 420유로(55만2,367원)를 지원 (주민 1인당 70센트)
- Katzenhilfe Stuttgart는 Stuttgart 시내의 길고양이 보호단체로 길고양이 중성화(Neuter)를 시행하고 마리당 50유로(6만5,758원)를 지원받고 있음

○ 맹견관리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경우 지난 80년간 사고 발생률에 따라 맹견 품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주마다 다름

○ 개 짚음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여부를 조사(동물 전문경찰)하여 학대일 경우에 만 조치

- 동물 전문경찰은 경찰견 훈련·교육하는 주 정부 경찰 또는 지방정부 경찰이 담당

23) 유로 환율, 2019. 10. 기준, 1유로=1,315원

다) 독일 뮌헨 티어하임(Tierheim) 동물보호소²⁴⁾

○ 단체 개요

- 티어하임 뮌헨(Tierheim München)은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뮌헨 동물보호협회(1842년 설립)에서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설립하였음



<그림 37> 티어하임 전경과 보호실

-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임
- 2018년 기준 티어하임(Tierheim)의 인원은 직원 약 32명, 등록된 자원봉사자 3,000명 중 1,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보호소 유지비용 연간 6백만 유로 (78억9,096만 원, 수의진료비용 연간 1백만 유로[13억1,516만 원])임
- 독일 동물보호 연합 소속, 독일 동물보호 연합은 전국협회 16곳, 지역협회 740곳과 동물보호소 550곳이 소속되어 있음
- 대부분 동물보호소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뮌헨의 경우 연간 소요비용 6백만 유로(78억9,096만 원) 중 3분의 1가량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비(연회비 약 60유로 [7만8,909원])와 후원금이나, 기타 수익 활동(달력 제작 판매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수용 가능 동물 수는 일 평균 600~650마리이며 현재 1,000여 마리의 동물을 보호 중이며 모든 동물의 건강을 위한 조치(백신, 구충, 마이크로칩 삽입 등)를 제공하고 있음
- 수용 동물의 95%(80%가 6주 이내) 새로운 가족을 찾으며, 질병으로 아주 큰 고통이 있는 동물 외에는 안락사가 없음

○ 보호소 동물 입수 경위

- 유기동물 70% :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유기동물 20% 증가
- 양도 수용 30% : 양도 수용 비용 100유로(13만1,516원), 수용기준은 없음

24) 농림축산식품부. 2018.11.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 기타 : 동물원의 전시동물 등 구매 후 보호

○ 티어하임 보호 동물 입양절차

- 입양된 동물의 행복을 위해 까다롭고 엄격한 입양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38> 독일의 까다로운 입양절차

- 반려견의 입양을 위해서는 '개를 키우기 위한 자격증 필수', '모든 가족의 동의 및 서명 필수',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입양 전 모든 가족이 보호소 방문, '맹견은 행동 교정과정 필수',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일부) 등 파양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거쳐야 함

- 고양이, 개, 토끼, 햄스터 등의 동물을 입양하려면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5~6주까지 걸리는데, 특히 사향이 없는 토끼, 설치류, 고양이 등은 보호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 본 뒤 입양이 가능함

- 개의 경우, 입양자의 환경에 대해 질문을 하고 함께 산책하러 나가게 한 다음 결정, 강아지나 훈련이 어려운 개체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입양인 집을 방문하여 충분한 사육환경이 되는지 사전 확인함

- 공격성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의 입양 시에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입양할 수 있으며 재입양 시에도 새로운 주인과 적합한지를 테스트를 받는데, 처음 2~3시간은 무료 제공 이후 회당 20유로(2만6,303원)를 내고 3~5회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고양이를 위한 실내 공간, 실내·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개 사육 공간, 오리들을 위한 호수 등을 제공하며 염소와 양은 자유롭게 방목하는 등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동물보호 선진국, 반려동물의 천국, 독일

- 독일에는 반려동물 판매하는 가게가 없고,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해당 동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티어하임을 통한 입양이 일반적임



<그림 39> 독일 반려동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 전문 번식업자나 개인 번식업자를 통해 입양할 수 있으나, 전문 번식업자의 경우 큰 비용이 들고(약 2,000유로[263만320원]) 개인 번식업자는 신뢰의 문제가 있어 보편적이지 않음
- 등록된 개에 대한 세금이 있으며 티어하임은 1년 동안 면제받음
- 개의 등록은 의무사항(마이크로칩이 의무는 아님)이고, 고양이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님
- “까다로운 입양절차는 입양된 동물들의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뮌헨 티어하임 총괄 매니저 샌드라 길트너)

라) 독일 베를린 동물보호소²⁵⁾

○ 단체 개요

- 1841년에 최초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TierschutzVerein)
- 운영시간
 - 동물보호소 및 입양소 : 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동물 입소 : 매일 오전 8시~오후 4시
 - 동물병원 : 화~금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토~일 오전 11시~오후 4시,
 - 월 오전 11시~오후 1시(응급진료)
- 운영 인력 : 50여 명
- 연간 약 12,000여 마리의 동물을 보호함 (평균 1,400마리 항시 보호)

25) 서울특별시. 2016.7.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그림 40> 베를린 동물보호소 로고와 동물보호소 입구

○ 기능 및 역할

- 동물보호소 : 모든 동물 수용, 사육 포기동물 인수²⁶⁾, 보호 동물 입양 등
- 동물병원 : 동물보호소 입소 동물 치료, 수의과 전공자 실습교육
- 교육 :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양로원 방문교육, 수의보조 및 동물원 관리자를 위한 전문교육도 시행
- 시민 자원봉사 기회제공 : 동물보호소 운영의 핵심
- 반려동물 추모 시설운영
- 기타 동물보호 활동 : 고양이 중성화(Neuter) 수술 장려, 3명의 동물복지 상담사를 통한 사육 및 습성 안내, 수의학 및 야생동물에 관한 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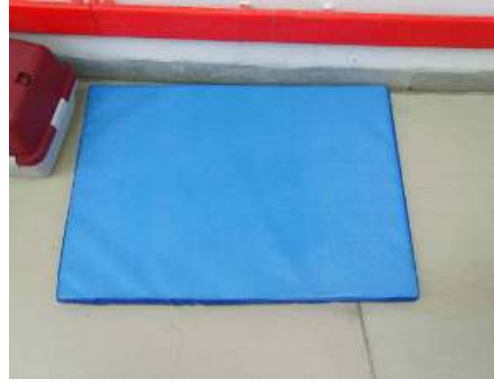
○ 베를린 동물보호소 관련 그림²⁷⁾



<그림 41> 베를린 동물보호소 접수실과 교육실

26) 사육 포기동물 인수조건 : 1) 힘들어 포기하는 경우(이사, 알레르기, 시간 부족 등), 2) 동물 학대자, 3) 경찰이 구조한 경우, 4) 검역이 안 된 야생동물 등

27) 전남대학교 대학원 명보영 2013.8.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그림 42> 베를린 동물보호소 진료실과 동물보호소 내 소독용 매트



<그림 43> 베를린 동물보호소 고양이 입원실



<그림 44> 베를린 동물보호소 이송 차량과 이동 진료 차량



<그림 45> 베를린 동물보호소 개 보호실 실내



<그림 46> 베를린 동물보호소 개 보호실 실외와 개 운동장

라. 일본

1) 일본의 반려동물 사육 현황

- “사단법인 애완동물 사료협회”가 일본 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개 고양이 전국 사육 실태조사²⁸⁾’ 자료 인용
 -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응답자 1만 4,850명 중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은 각각 6,300명(42.4%)과 4,900명(32.9%)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음
- 개의 사육 가구 수는 2014년의 789만 세대에서 2018년의 715만 세대로 9.4% 감소하고 있고, 개의 사육 마리수 또한 같은 기간 971만 마리에 서 890만 마리로 8.2% 감소하고 있음

[표 8] 개와 고양이 사육 현황

단위 : 만 세대, 만 마리

구 분	개		고양이	
	사육 가구 수	사육두수	사육 가구 수	사육두수
2014년	789	971	536	949
2015년	767	943	533	927
2016년	756	935	533	930
2017년	721	892	545	952
2018년	715	890	553	964

자료: (일사)애완동물 사료 협회(2018)

- 이에 비교해 고양이 사육 가구 수는 같은 기간 536만 세대에서 553만 세대로 3.1% 증가하고 있고, 사육 마리수 또한 949만 마리에서 964만 마리로 증가하고 있음

28) 본 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이며, 2018년에는 50,000명이 설문에 응하였음

2) 일본의 동물보호센터 현황

- 우리나라 보다 반려동물의 역사가 20년가량 앞서 있고, 정부(환경성 자연환경국 총무과)에도 반려동물 관련 직원이 6명 이상이며 지자체(공중위생부)별로 반려동물 담당 직원이 있음
- 광견병 예방법(등록제)을 통해 사육 개체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음
- 유기동물 보호의 경우 지자체별로 보호소를 설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중위생 및 유기동물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4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90%가량 살처분되고 있어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태임²⁹⁾
 - 살처분 시설에서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 촉구하고 있음
- 보건소나 동물관리센터 등에서 보호하는 개, 고양이 가운데 사육자에게 되돌아간 것은 2006년 당시 10%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15% 수준으로 조금이나마 증가하였음³⁰⁾
- 지자체의 동물수용시설 기준 제정과 전국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음
- 개, 고양이의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도, 부, 현을 묶어 이르는 말) 등에 의한 인수, 부상 동물 등을 수용하고 있음
- 동물의 애호 관리 전문기관인 ‘동물 애호 관리센터’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음
 - 시대의 요구에 맞춘 센터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추진계획 상에서는 센터의 설치나 개선을 위해 시대의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맞춘 동물 애호 관리센터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함과 동시에 시설 정비가 어렵다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음

가) 일본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³¹⁾

- 시설개요
 - 도쿄도청에서 운영하는 직영 시설(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환경 보건 위생과 산하)로 1974년 개소하였고, 도쿄도 23개 특별구(도시부)를 담당하고 있음

29) 전남대학교 대학원 명보영 2013.8.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30) 다음백과. 2019.9.

31) 서울연구원. 2016.7. 서울시 동물복지시설 도입방안

[표 9]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건물

구분	본부	조우난지마출장소	타마지소
면적(㎡)	1,021.92	4,000.07	2,810.91
업무동(㎡)	445.91(1974년)	1,123.52(1983년)	504.00(1984년)
행정동(㎡)	360.00(1990년)	642.98(1983)	296.00(1984년)
만남의 광장(㎡)	105.00(1990년)	320.00(1995년)	240.00(1984년)
외관(㎡)			

자료: 서울연구원(2016)

- 타마지소(多摩支所)는 23개 특별구를 제외한 24개 시, 3개 정(町), 1개 촌(村)의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함
- 동물 애호 상담센터 산하의 조우 난 지마 출장소(城南島出張所)는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전용소각시설임

○ 설치 근거

-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73년 10월 1일 법률 제105호)
- 동경도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06년 3월 6일 동경도 조례 제4호)

○ 역할 및 기능

- 동물보호 및 관리 : 배회 동물 및 학대 동물의 구조·보호·반환·입양·처분, 사육 포기동물 인수³²⁾
- 교육홍보 : 학생 대상 동물교실 운영, 동물 애호주간(9월 20일~28일) 기획 행사 참여, 시설견학, 소유자 대상 강습회 등
- 동물 취급업 관리 : 등록, 책임자 교육, 특정 동물 사육허가
- 길거리 고양이 공생사업 추진 : 고양이 사육법 교육 등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조사

32) 소유자 사망, 이사, 알레르기 유발, 동물의 공격성 등이 인정될 때만 인수

○ 운영 (2016년 기준)

- 운영시간 : 창구업무 오전 9시 ~ 오후 5시, 전화 업무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45분
- 인력 : 본부 28명(수의사 17명), 타마지소 23명(수의사 15명), 조우난지마 출장소 12명(수의사 7명)
- 성과 : 취급동물 수가 1985년 58,762마리에서 2014년 1,804마리로 급감
- 보호 동물처리 : 2014년은 주인에게 반환 12%,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 35%, 안락사 53%

[표 10]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보호 동물 처리방법

2014년 기준, 단위 : 마리

구 분	개	고양이	토끼 등	합 계
센터에서 주인에게 반환	179	19	0	198
포획현장에서 주인에게 반환	18	0	0	18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	252	384	0	636
안락사	52	927	2	981
합 계	501	1,330	2	1,833

자료: 서울연구원(2016)

[표 11]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취급동물 수

단위 : 마리

연 도	성 견	자 견	성 묘	자 묘	토끼 등	합 계
1985	12,387	10,552	4,247	31,569	7	58,762
1990	7,275	4,142	2,065	17,495	30	31,007
1995	5,644	1,021	1,453	13,056	24	21,198
2000	4,989	286	1,437	10,451	19	17,182
2005	2,879	77	922	5,264	10	9,152
2010	1,242	9	695	2,093	6	4,045
2011	956	2	594	1,736	7	3,295
2012	783	6	660	1,629	6	3,084
2013	696	11	512	1,127	0	2,346
2014	464	11	447	880	2	1,804

자료: 서울연구원(2016)

○ 재원 확보

- 지출 규모는 200억 엔~300억 엔(2,183억3,400만 원~3,275억100만 원)³³⁾ 규모임
- 각종 수수료 수입(동물 취급업 등록비, 소유자 반환수수료, 사육 포기동물 인수수수료 등)에

33) 엔 환율, 2019. 10. 기준, 1엔=10.92원

의한 지출액 총당 규모는 2011년 27%, 2012년 17% 수준임

[표 12]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수입지출내역

단위 : 엔

구 분		2012년		2011년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44,445,000	39,627,000	50,844,875	48,946,144
	제수입		4,818,000		1,898,731
지출	생활 환경비	261,908,000	261,908,000	198,624,762	198,624,762
	기타		0		0

자료: 서울연구원(2016)

[표 13]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사육 포기동물 인수수수료

단위 : 엔

구 분	분류		인수수료(마리당)	
개	생후 91일 이상	체중 50kg 이상	5,800	6만 3,316원
		체중 50kg 미만	3,000	3만 2,750원
	생후 91일 미만		600	6,550원
고양이	생후 91일 이상		3,000	3만 2,750원
	생후 91일 미만		600	6,550원

자료: 서울연구원(2016)

[표 14]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보호 동물 소유자 반환수수료

단위 : 엔

수용 기간	당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수수료	3,200	3,880	4,560	5,240	5,920	6,600	7,280
	3만4,933원	4만2,356원	4만9,780원	5만7,203원	6만4,626원	7만2,050원	7만9,473원

자료: 서울연구원(2016) 자료 재구성

나)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犬猫孤兒 救助隊)³⁴⁾

○ 조직의 개요

- 1995년 9월, 동물 애호 단체·고양이 고아 구조대 설립됨
- 2005년 2월 NPO(비영리 단체) 법인 취득
-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안락사에 반대하여 평생 사육을 지향
- 히로시마현과 나스시오바라 현에 평생 사육시설이 있음
- 평생 사육시설에는 600마리가 넘는 고양이 수용 중
- 2018년 7월, 히로시마현에서 사업 위탁을 받아 일본 최초의 관민 일체형 TNR 시작
- 2018년 8월, 히로시마 본부 개 보호소 건물의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함

34) 犬猫みなしご救援隊, Dogs and cats orphan rescue party, <http://www.minashigo.jp/info/index.html>

○ 역할 및 기능

-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 개와 고양이를 인수하여 평생 사육
- 재개발지역이나 자연재해현장에서 발생한 배회 동물 구조, 보호 동물 입양
- 지역 고양이 사업 추진 : 중성화 수술(TNR), 먹이 제공, 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 설득 등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강연 교육
- 고령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 고령자의 고민, 미래 불안 등 상담

○ 운영성과³⁵⁾

- 2018년에 개와 고양이 2,574마리(개 91마리, 고양이 2,483마리)를 인수하고 1,059마리(개 36마리, 고양이 1,059마리)를 입양했으며, 고양이 1,074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시행함
- 개와 고양이의 인수·보호는 유료로 진행되고 있음

[표 15]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 동물보호 실적

단위 : 마리

구 분		인 수	입 양	TNR(단독)	TNR(협동)
2015	개	39	43	-	44
	고양이	1,245	843	1,059	1,877
	계	1,284	886	1,059	1,921
2016	개	85	30	-	163
	고양이	2,145	829	1,117	982
	계	2,230	859	1,117	1,145
2017	개	25	19	-	193
	고양이	3,171	598	996	2,566
	계	3,196	617	996	2,759
2018	개	91	36	-	37
	고양이	2,483	1,059	1,074	3,529
	계	2,574	1,095	1,074	3,566

자료: 개·고양이 고아 구조대 홈페이지. [https://minashigo.jp/2018hogo/\(2019.9\)](https://minashigo.jp/2018hogo/(2019.9))

○ 재원 확보

-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함
- 회원 모집 : 일반 회원 연회비 3,000엔(3만2,750원), 프리미엄 회원 10,000엔(10만9,167원)
- 봉사자 모집 : 월~토 오전 9시~오후 7시, 일회성 봉사보다 장기봉사 가능한 봉사자를 선호함
- 용품 기부 : 쓰지 않는 반려동물용품을 기부받음

35) 犬猫みなしご救援隊, Dogs and cats orphan rescue party, <http://www.minashigo.jp/info/index.html>

다) Animal Refuge Kansai(ARK)³⁶⁾

○ 조직의 개요

- 비영리, 비정치 사설 단체이며, 동물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에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고 동물의 문제를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개선하고 진정으로 효력이 있는 동물보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동물 구호 단체임
-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NPO, 1999년 8월 등록)이자 회원제 단체
- 1990년 현재의 대표인 엘리자베스 올리버에 의해 설립되었음
- 2008년 일본 최초로 RSPCA(영국 왕립 동물 학대방지 협회) 회원으로 인정
- 2008년 사사 야마 동물복지센터 토지 매입
- 30명의 전담직원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
- 사사 야마 ARK, 오사카 ARK, 도쿄 ARK가 있음
- 사사 야마 ARK는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는 보호시설이며, 견사(200마리 수용)
- 고양이사(32개 사육장), 교육 시설, 운동장(2,000m²), 창고 등을 갖춘
- 오사카 ARK는 개 200마리, 고양이 150마리 수용 가능
- 도쿄 ARK는 입양, 임시 보호 등의 기능을 하고 동물보호소의 기능은 없음

[표 16] 사사 야마 ARK의 시설 내역

시 설	규모 및 내용
견사	200마리 수용 / 스테인리스 재질 사육장 바닥 난방 설치 / 큰 채광창 사용
고양이사	32개 사육장(단독, 2마리, 3마리 이상 사육장) 스테인리스 재질 사육장 / 바닥 난방 큰 채광창 사용 / 외부 놀이터(식물원) 설치
교육시설	전체 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로 인식 단열성 중시
독랜드(Dog land)	면적 2,000m ² / 개 운동장 겸 행사장 228m 울타리 설치 / 탈출 방지를 위해 이중문으로 제작
창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문으로 제작 경수를 저장하는 공간 마련

자료: 서울연구원(2016)

36) Animal Refuge Kansai(ARK), <http://www.arkbark.net/>



<그림 47> 사사 야마 ARK 건사(2014년 신축)와 건축 중인 신규 시설 조감도

자료: Animal Refuge Kansai(ARK), <http://www.arkbark.net/>(2019)

<p>사무실</p>	<p>산책길</p>	<p>직원 휴식 공간</p>
<p>켄넬 1</p>	<p>켄넬 2</p>	<p>치료보호실</p>
<p>식사준비실</p>	<p>그루밍실</p>	<p>보호소 지도</p>

<그림 48> 오사카 ARK의 동물보호소

자료: 서울연구원(2016)

○ 역할 및 기능

- 동물보호소 운영 :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
- 입양 : 큰 개와 고양이 입양 노력, 입양자 적격성 검토, 사전 만남 등
- 개와 고양이 중성화(Neuter) 수술 장려

- 반려동물 사육자에게 올바른 사육방법 전달 : ZASSHU BEAUTY 캠페인,
- 뉴스레터 발간
- 일반 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

○ 오사카 ARK³⁷⁾

- 2019년 7월 기준 개 121마리, 고양이 87마리, 토끼 8마리가 보호되고 있음
- 모든 동물에 백신과 중성화(Neuter) 수술을 하고, 개에게 마이크로칩의 매입을 시행,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의 치료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어 입양시키고 있음
- 동물 관련 학교를 졸업 한 자,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 관리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상시 30명 근무하고 있음

○ 오사카 ARK 운영실적

- 오사카 ARK의 경우 2017년에 개 129마리, 고양이 108마리 등 237마리를 입양
- 2011년 개 293마리, 고양이 111마리 등 총 404마리의 입양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

[표 17] 오사카 ARK 개·고양이 입양 실적

구 분	개 (Dogs)	고양이 (Cats)	합 계
2001	153	71	224
2002	148	60	208
2003	110	36	146
2004	167	44	211
2005	177	47	224
2006	196	97	293
2007	194	107	301
2008	184	100	284
2009	199	101	300
2010	204	116	320
2011	293	111	404
2012	172	141	313
2013	179	128	307
2014	146	135	281
2015	174	128	302
2016	150	149	299
2017	129	108	237
합 계	2,696	1,422	4,118





자료: Animal Refuge Kansai(ARK), <http://www.arkbark.net/>(2019)

37) Animal Refuge Kansai(ARK), <http://www.arkbark.net/>(2019)

○ 재원 확보³⁸⁾

- 수입의 64%를 회원 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
- 보호시설 운영수수료, 달력 판매, 제품 판매 등 다양한 재원 구축
- 회원 모집 : 다이아몬드(120,000엔/연), 루비(60,000엔/연), 사파이어(36,000엔/연), 진주(12,000엔/연), 가족회원(10,000엔/연), 지원회원(5,000엔/연), 개인 회원(3,000엔/연) 등
- 후원자 모집 : 스폰서 1(36,000엔/연, 사료비), 스폰서 2(54,000엔/연, 사료비+의료비), 스폰서 3(72,000엔/연, 사료비+의료비+유지비), 스폰서 4(150,000엔/연, 사료비+의료비+유지비+인건비)
- 입양수수료 징수 : 개 - 20,000엔 + 등록 비용 3000엔 + 광견병 주사 550엔
고양이 - 20,000엔. 토끼 3,000엔
 - 백신 / 혈액 검사 / 불임, 중성 / 마이크로칩 - 비용 포함
- 운반 비용 : 입양수수료(10km까지 기본요금 + 1,000엔/추가 3km)

○ 설치 근거

- 2014년 11월 13일, 제1종 동물 취급 업에서 제2종 동물 취급 업으로 변경됨
- 제2종 동물 취급 업
 - 비영리로 사육시설을 보유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물을 입양, 보관, 대여, 훈련, 전시하는 경우(동물보호소, 무료 공원 전시 등)
 - 일정 수 이상의 동물을 취급할 경우 신고신청이 필요(대형동물 3마리 이상, 중형동물 10마리 이상, 소형동물 50마리 이상)

○ 도쿄 ARK

-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오사카 ARK와 같은 보호소(쉼터)가 아니라 사무실만을 운영하여 보호 동물들이 입양될 때까지 가정에 위탁하는 「포스터 제도」에 의해 보호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양부모(사육자) 회를 개최 양부모(사육자) 찾기를 하고 있음
- 일본의 동물들의 현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동물 애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사진전이나 자선 행사 미디어에의 움직임 등의 홍보 활동도 하고 있음

38) Animal Refuge Kansai(ARK), <http://www.arkbark.net/>(2019)

2. 해외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조사 시사점

가. 해외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조사 분석

- 해외 동물복지 선진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대한 반려동물 사육 현황, 동물보호시설 현황 등을 조사함
 - 해외 동물복지 선진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동물보호에 대한 역사와 나라의 환경적, 지리적 입지조건에 따라 단순히 사육동물에서 애완용 동물로 또, 반려동물로 변화하는 과정과 필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려동물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은 문화와 산업의 발달과 함께 진화된 체계적인 동물보호시설의 동물복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해외 동물보호시설은 대부분 비영리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동물복지의 근본적인 개념의 정립이 되어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외 동물보호시설은 운영자금의 규모가 다르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직영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물보호 단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후원금이나 자체 수입원(입양비, 외부 진료비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장기적인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적용 가능한 운영 개선 모델로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동물보호시설은 지역별 조례나, 단체별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이 대부분 존재하며 보호소 운영 정책 역시 지역별, 단체별 차이가 나고 있으며, 동물보호소 운영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질병 관리, 개체관리, 행동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희망자에게 신뢰를 주며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입양자도 보호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소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구조인력, 행동평가인력, 관리인력, 진료 인력 등의 교육을 저체적으로 실시하고, 동물보호단체(ASPCA, HSUS 등)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바, 국내 민간 사설 동물보호소와 동물권 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장기적인 차원의 지원 검토가 필요함
 - 해외 동물복지 선진지의 동물보호시설 관련 조사를 통하여 동물의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지속 가능한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견고하게 확립된 동물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기본권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동물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제3장

동물보호시설의 현장실태 조사 등

제1절 동물보호시설의 현장실태 조사

제2절 동물보호시설 대상 설문조사

제3절 자문단회의

제 3 장 동물보호시설의 현장실태 조사 등

제 1 절 동물보호시설의 현장실태 조사

1. 현장 실태조사 계획

- 운영 주체별 :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설 동물보호센터 (단체, 개인)
- 지역별(권역별), 사육 규모별 (사육 규모 분류기준 선정)
- 표본조사 : 중·소형견, 대형견의 평균 체중 도출 - 원 단위 발생량 유추
- 현장 실태조사 내역
 - : 12회 - 총 33개소 현장 실태조사 (371개소 중 33개소 실태조사, 9%)
(공공[직영] : 5개소, 운영 위탁 : 2개소, 업무 위탁 8개소, 사설 18개소, 총 33개소)
- 약취 분석 : 공공 동물보호센터 3개소 동물보호센터 시료 채취 및 분석
(A 동물병원, B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C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 분뇨 분석 시행 :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복지센터 시료 채취 및 분석
(환경조건 충족, 사료 정상급이 등 - 선정)
 - 분뇨 시료 채취 : 정상적인 사료 공급을 전제로 분뇨 시료 채취
- 분뇨 표본 및 분석을 통한 수질오염 물질농도 조사, 약취 측정 및 분석
 - : 약취 분석 - 대상 : 설문 조사 시 약취 민원이 있다고 응답한 동물보호센터 3개소
 - 복합약취 (관능 법) 조사 (실내 - 내부, 실외 - 부지 경계선)
 - 성균관대학교 무배출형 환경설비지원센터 약취 측정 의뢰
 - 분석항목 : 복합약취, 시료 채취 방법 : 공사 기간 희석 관능 법
(공정시험법)
 - : 분뇨 분석 - 대상 :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 SS, BOD, COD, TN, TP (수질오염 물질농도 조사)
 - 현장 분 채취 후 아이스박스 처리 바로 분석 의뢰
 - 엔솔(NELAP 국제인증기관) 분석 의뢰
 - : 소음 및 진동 분석
 - 소음 및 진동의 법적 기준 검토 : 소음 진동관리법 적용 기준 및 범위
 -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조사

2. 현장실태 조사

가. 현장 실태조사 표본 구성

- 현장 실태조사 총 12회, 33개소 현장 실태조사
(공공 및 사설 전체 모집단 371개소 중 33개소 실태조사(9%))
 - 공공(직영) : 5개소, 운영 위탁 : 2개소, 업무 위탁 8개소, 사설 18개소, 총 33개소
 - 현장 실태조사 보호시설의 전체 조사내용은 [부록 1]에 첨부하고, 가축분뇨 관련 항목 만 시설 별로 분석함

나. 현장 실태조사 결과

1)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분뇨 처리방법은 일반 종량제 봉투 처리, 자체 정화조를 보유하여 정화조에 처리, 자체 퇴비화 시설을 보유하여 직접 퇴비화 처리, 임시 보관 후 정기적으로 외부 자원화 업체로 위탁 처리, 주변에 매립하는 형태 등으로 분류됨
 - 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때도 있지만, 뇨를 별도로 처리 시에는 바닥 물청소, 소변 패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 세부 처리방법별 비율은 설문 조사(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공공 동물 보호센터 중 직영과 지자체 시설운영 위탁의 경우 모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동물병원 등 소규모의 동물보호센터나 사설 동물보호소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음
- 폐사 동물처리 방법
 - 폐사 동물(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은 대부분의 동물보호센터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외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사설 동물보호소에서는 매립하는 경우가 있음
 - 외부 폐기물처리업체는 화장(소각), 렌더링(재활용) 업체 등이 있었으며, 처리방법별 비율은 설문 조사(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2) 현장조사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분류

○ 운영 주체별 분류 및 특징

- 운영 주체별로는 크게 공공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로 분류함
-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 ② 지자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 ③ 단체나 개인과 위탁계약을 통해 동물보호 업무를 위임,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법정 보호 기간을 준수하고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나 봉사자의 감시와 민원으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동물보호센터도 있음
- 공공·위탁동물보호센터(직접 운영과 시설운영 위탁)는 운영지침(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일부 위탁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시설에 운영 위탁 형태)의 경우 안락사율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보호 방침 등으로 입소 동물이 누적되어 과포화 상태인 곳도 있음
- 위탁계약을 통해 동물보호 업무를 위임, 동물보호센터를 지정받은 곳은 사설 동물보호소나 동물병원 등이 있는데,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 내 유기동물 보호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케이지와 같은 곳에 보호하고 공간적으로 좁은 특징이 있었고, 입소 시 질병 전염의 우려로 격리실을 둔 곳도 있지만, 격리실이 없는 곳도 다수 있음
- 사설 동물보호소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회원의 후원과 봉사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①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② 개인(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곳 포함)이 운영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운영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시설 수준에서도 편차가 커서 시설운영 규모에 대한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
- 사설 동물보호소는 불가피하게 안락사 시행을 제외하고 장기간 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있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평균보호 기간에 대한 질문에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 사설 동물보호소는 대부분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후원자와 봉사자를 모집, 지원받고 있음
- 지속적인 후원과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권 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운영체계와 시설,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경우 관리인력 1인당 10~15마리 정도를 보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인력과 보호 동물을 단순 산술 평균으로 산정하였을 때)

- 개인 운영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1인당 관리 보호 동물 마릿수가 100~200마리 이상도 있었는데, 후원과 봉사자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보호소도 있지만, 수용 범위를 초과한 곳도 다수 있어, 사설 동물보호소의 인력문제를 애로사항으로 가장 먼저 언급함

○ 동물보호시설 형태별 분류 및 특징

- 동물보호시설 형태별로는 실내와 실외 보호시설, 케이지 형태와 바닥 형태, 그리고 독립 공간과 혼합 공간의 형태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각 형태가 복합된 유형으로 구성됨
- 실내 보호시설은 건물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로 건물(또는 임시 가건물)에 보호하고 있어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날씨(비, 온도)의 영향으로부터 일정 정도 관리가 가능한 시설임
- 실외 보호시설은 지붕이 없거나 그늘막으로 가린 상태에서 외부로 노출된 보호시설임
- 대부분 동물보호센터가 실내 보호이나 수용 범위 초과 시 실외 보호시설을 두는 경우도 있음
- 케이지 형태 보호시설은 보호 동물 크기 별로 일정한 틀(케이지)에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형태로 바닥 형태의 보호시설에 비해 일정한 면적에서 더 많은 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분뇨처리 등 관리적 편의성을 가질 수 있으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음
- 바닥 형태 보호시설은 바닥에서 동물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는 시설임
- 공공 동물보호센터 중 공간이 협소한 동물병원 등에서 케이지 형태의 보호시설로 동물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모든 사설 동물보호소는 바닥 형태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독립 공간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1~3마리 정도로 펜스나 방을 통해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는 형태이며, 혼합 공간은 여러 동물이 함께 지내는 형태임
-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대부분 독립 공간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사설 동물보호소는 운영 방침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고 혼합되어 있음

3)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결과 시사점

○ 동물보호센터 현황

- 공공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및 시설 수준에서는 보호센터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위탁 보호시설의 경우 환경적,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남
- 공공 위탁 동물보호센터인 동물병원의 경우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어 악취나 소음의 민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지에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는 동물의 활동을 제한하여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공 동물보호센터의 기타 의견으로는 각종 민원 처리의 과다로 인한 어려움과 업무량 과중, 포획의 어려움, 유기동물 관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설 동물보호소는 후원 규모에 따라 운영형태와 현황이 매우 다양하고 시설 수준에서도 편차가 크며, 제도권 밖에 있어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도 다수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태를 현장조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중 시설 현황이 열악한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인력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남
- 사설 동물보호소는 인력적인 측면에서 1인당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동물 수가 100마리 이상 되는 곳도 있어 노동량이나 동물의 상태 확인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분노나 사체를 매립하는 경우 비점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도 있었고, 운영 면으로는 진료비 및 사료비 부담 커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 지역별 유실·유기동물 발생 현황 및 특성

- 정부의 통계는 유실·유기동물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지역별로 그 양상은 다른 것으로 조사됨
- 농촌 지역이나 도농복합 지역은 등록하지 않고, 시골 마당이나 공장 내에서 키우는 개의 임의 번식 등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도시 지역은 유기동물 발생량이 일정하거나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원인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별로 유기동물 발생 특성을 고려한 유기동물 억제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함
- 동물보호시설의 환경적·동물 복지적인 측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시행하였으며, 조사를 통하여 반려동물 산업 및 유기동물 발생 현황에 대한 현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유실·유기동물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인 것은 반려견 사육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기유실동물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악취 민원 유발 동물보호시설 실태조사

1) 악취 민원 유발 동물보호시설 현황

- 지자체의 악취 발생 민원현황에 따라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시설운영 및 악취관리 실태를 조사함
- 조사는 입소상태인 사육시설 내 및 외부환기구 등을 조사하였고 주로 분뇨처리방법 및 운영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함
- A 시설의 경우 냄새 배출이 일정한 곳(밀폐시설인 경우) 및 시설 경계 부근에 있는 환기구에 서 측정함
- B 시설은 운영 시 냄새로 인하여 작업자가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출입하는 상황이며, 조사 당시 부지경계에서는 환기로 인하여 냄새가 거의 못 느낄 정도임
- 하지만 시설 내부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냄새로 확인되었고 측정지점도 내부에 서 실시함
- C 시설은 구조가 창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자연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며, 대형 견과 중 소형 견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공 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서 주변 정리정돈이나 분뇨처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호 동물 자체의 냄새와 시설 내벽의 찌든 냄새가 시설 전체 냄새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표 18] 조사 동물보호시설 기본운영 현황

순번	대상 조사내용		현황							
			A 동물병원			B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C 동물보호 관리협회		
1	운영형태		위탁(개인 동물병원)			지자체 직영		위탁(사단법인)		
2	보호 동물 규모	소형견	20	33	33	140	210	120	215	305
		중형견	10			30		60		
		대형견	3			40		35		
		자묘	0	0	0	60	90			
		성묘	0	0	0	30				
3	시설면적		16평 (동물병원 면적)			150평		1,650평		
4	분뇨처리방법		일반 종량제 봉투에 처리			플라스틱 통(10L) 임시 보관 후 1회/주 (1회 16통 [160kg] → 국화 양묘장)		분, 뇨 - 물청소 (정확조 보유), 일부 분변은 퇴비화 처리		
5	상시 보호 동물 수		20~25마리			190마리		250마리		
6	연간입소 동물 수		250~300마리			540마리		3,679마리		
7	평균보호 기간		15일			100일		25일		
8	연간 입양 동물 수		40~50마리			60~70마리		835마리		
9	연간 폐사 동물 수		200마리			60마리		2,752마리		

-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의 경우 변화가에 위치하여 주거지역 주민 등의 활동이 빈번한 곳으로 악취³⁹⁾ 및 소음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 A 동물병원의 경우 보호되는 동물의 쾌적한 공기순환 목적으로 주거지역 진입로 방향인 골목으로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이때, 환기구는 악취방지법상 허가시설 필지(주소지) 경계에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 기타 지역 15배수 이내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
 - B 유기동물보호소는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주변 1km 이내에 냄새로 인한 민원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으나, 분양 등의 보호소 출입 시 냄새로 인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 C 보호소의 경우 주거지역과의 거리는 200m 정도로 냄새가 심할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야기 될 수 있음
 - 해당 시설들은 냄새로 인한 직접 및 간접 피해도 겪고 있으며, 당국의 냄새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을 원하는 곳이 상당함
- 한편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 복합악취⁴⁰⁾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2) 민원 악취 조사결과 및 제어방안

- 일반적 A 보호소의 경우 복합악취 측정결과 10배수로써 부지경계 선상의 15배수를 만족하지만, 환기구 위치가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골목길에 있으므로 선제 대응은 환기구 방향을 건물 위 또는 주민이 활동 안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B 보호소는 시설과 주거지역의 거리가 있으므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30배수의 농도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관리하는 직원과 방문자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포집, 탈취 등의 악취제어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C 보호소는 평상시 운영 측면에서 주민들과 이해하는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개발에 따른 이주민이 정착할 경우 자연 환기로 배출되고 있는 복합악취 20배수는 행정적 처분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상시 분뇨처리 후 청소, 보호 동물의 목욕,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 시설 내벽, 바닥청소, 일정 시간의 자연 환기, 시설의 최적화된 탈취시설이 필요함

39)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40) 복합악취 : 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표 19] 복합악취 측정결과

조사일시	대상/지점	복합악취 결과	배출허용기준	단위
2019년 10월 7일	A 동물병원 환기구	10	기타 지역 배출구 : 500 부지경계 : 15	희석배수
	B 시 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실내	30		
	C 동물보호 관리협회 창문	20		

3) 악취 분석결과 시사점

- 국내 타 축종에 비해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방법 및 악취 저감 연구사례가 적으며, 대부분 보호시설의 민원 행동지침 또는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서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대응 방법이 없음
- 악취방지법상 1년 이내 지속적인 민원 발생 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음
- 설문 결과 56개소 중 6개소(10.7%)에서 악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악취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가축시설과 달리 동물보호시설은 주거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리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할 경우 적정 관리기준과 당국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임

[표 20] 국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거리 변경(안)

구분	환경부 권고안	국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거리 변경(안)			
		설문 조사 (중간값)	지자체 조례 현황 (중간값)	악취확산 예측 분석결과	
한·육우	100m	20~1,000m (250m)	60~500m (200m)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젖소	250m	50~3,000m (1,000m)	100~1,000m (250m)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	500m	50~3,000m (1,000m)	50~2,000m (500m)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500m	50~2,000m (600m)	200~2,000m (500m)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50,000마리	450m
				50,000마리 이상	650m

자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2015.1.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최종보고서)

○ 약취방지법 제7조 -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취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 설치기준(시행규칙 제8조) · 약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다만, 약품 등 이용 시 제외 - 액비의 살포기준(시행규칙 제13조) · 액비는 충분히 부숙 시켜 사용 (약취방지법 제7조에 기준 적합) - 처리시설 관리기준(시행규칙 제15조) · 약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복합약취 15배수, 지정약취 물질[ppm] 2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 물질: 22종 (시행규칙 제2조) 규제(`05년~12종→`08년~17종→`10년~22종) - 지역 구분 : 공업·기타지역(축산시설 포함) - 약취관리지역 지정(시장·군수 등) (법 제6조) · 약취 민원 1년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산농가 : 약취 저감 인식 낮음-법적 규제 미흡) - 가축사육제한구역권고안(환경부) (한우 100m, 젖소 250m, 닭 500m, 돼지 500m) · 시·군 조례 재정운영:157개 시·군(87.2%)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 한국축산학회. 2016

제 2 절 동물보호시설 대상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가. 설문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전국의 공공 동물보호센터 289개소 및 주소확보 가능한 사설 동물보호소 44개소, 총 33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함

○ 설문 조사 기간 및 조사방법

- 조사 기간 :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 조사방법 : 공공 동물보호센터 - 전자 우편(이메일), 사설 동물보호소 - 우편조사 (지역별, 운영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이 필요한 동물보호센터는 현장방문 시 인터뷰와 함께 조사를 시행함)

나. 설문의 구체적 내용

○ 관리 규모 (마릿수)

- 개 : 소형견(5kg 미만),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대형견(15kg 이상)
- 고양이 : 자묘, 성묘

- 기타 : 개, 고양이 외 기타동물
- 규모별 분류 : 50두 미만 / 50~100두 미만 / 100~300두 미만 / 300두 이상

○ 관리실태 점검

- 노견/허약견/질병 감염견 처리현황
: 도태 시 처리방법 및 비용
- 분뇨처리량 및 처리방식 / 분뇨처리시설 면적
- 악취방지시설 보유 여부 / 소음방지시설 보유 여부

○ 민원 실태 점검

- 연간 발생 민원 횟수
- 민원의 종류 : 악취, 소음, 혐오 등
- 민원에 대한 관리 지침(매뉴얼) 보유 여부

○ 유실·유기동물 관리 시 애로사항

- 환경 관리, 환경오염, 사료 등 영양 문제, 인력문제, 민원 등

○ 유실·유기동물 교육 시설 보유 및 운영 여부

○ 유실·유기동물 교육 후 분양

- 연간분양 규모 조사

○ 경제성 조사

- 사료비, 인건비, 도태 등 처리비용

○ 지자체 지도 감독

- 지도 감독 여부 및 제도 조사

○ 지자체 지원사항

- 지원 여부 및 제도 조사

○ 현장조사 어려운 곳은 추가로 전자 우편을 통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 제고

2. 설문 조사결과 및 분석

가. 동물보호시설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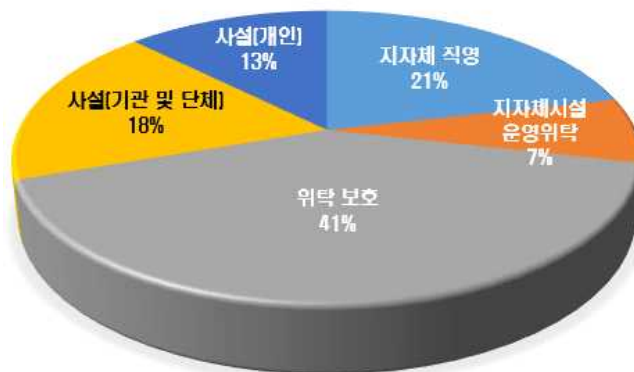
○ 공공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 응답 현황

-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39개소(14%), 사설 동물보호소 17개소(39%), 총 56개소가 응답함
- 운영 주체별로는 기관(단체)이 운영하는 곳이 33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23개소로 나타남



<그림 49> 설문 응답 동물보호시설 현황(공공/사설)

- 공공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지자체 직영이 12개소, 지자체 시설의 운영을 위탁 계약한 곳이 4개소, 동물병원 등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 23개소임
-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단체(기관)가 운영하는 곳이 10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7개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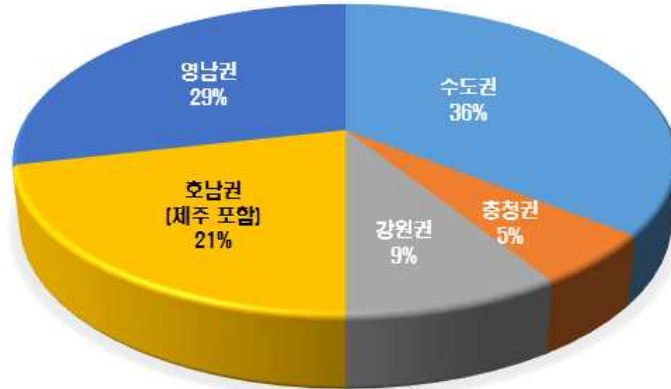


<그림 50> 동물보호시설 운영 유형별 현황

○ 지역별 응답 현황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20개소(36%)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3개소(5%)

- 강원권(강원) : 5개소(9%)
-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 12개소(21%)
-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16개소(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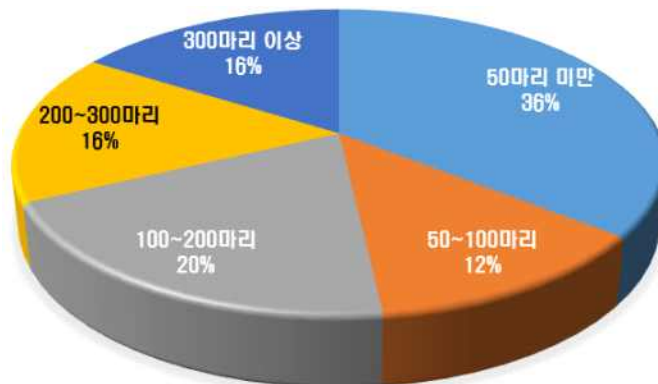
<그림 51> 동물보호시설 지역별 현황

○ 평균 운영 연수 및 인력

- 응답한 동물보호센터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운영 연수는 10.6±9.3(년), 평균 인력 인원수는 4.5±5.4(명)로 나타남

○ 규모별 응답 현황

- 50마리 미만 : 20개소(35.7%)
-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 7개소(12.5%)
- 100마리 이상 200마리 미만 : 11개소(19.5%)
- 2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 9개소(16.1%)
- 300마리 이상 : 9개소(16.1%)



<그림 52> 동물보호시설 규모별 현황

○ 보호 동물 평균 마릿수

- 응답한 동물보호센터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호 동물 중 개의 경우 평균 176.0±399.9(마리), 고양이의 경우 28.7±36.6(마리)으로 나타남
- 공공 및 사설 동물보호소를 구분하여 교차 분석한 결과, 공공의 개는 평균 102.7±113.1(마리), 고양이는 31.4±38.1(마리), 사설은 개는 평균 344.2±690.0(마리), 고양이는 22.5±19.3(마리)으로 나타났고, 개의 경우 사설에서 더 많이 보호하고 있었고, 특히 입양(분양)이 어려운 대형견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타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곳은 13개소였으며, 토끼, 햄스터, 거북이, 앵무새 등이 있음

[표 21] 보호 동물 평균 마릿수 (전체)

개 (마리)		고양이 (마리)	
소형견	95.2±279.5	자묘	15.3±16.5
중형견	44.3±52.1	성묘	18.3±27.5
대형견	45.1±114.4	합계 평균	28.7±36.6
합계 평균	176.0±399.9		

[표 22] 보호 동물 평균 마릿수 (공공)

개 (마리)		고양이 (마리)	
소형견	50.2±64.0	자묘	16.6±15.7
중형견	29.5±33.0	성묘	16.9±22.9
대형견	18.9±26.2	합계 평균	31.4±38.1
합계 평균	102.7±113.1		

[표 23] 보호 동물 평균 마릿수 (사설)

개 (마리)		고양이 (마리)	
소형견	214.1±474.1	자묘	4.0±1.8
중형견	81.8±70.7	성묘	20.7±18.8
대형견	106.1±186.6	합계 평균	22.5±19.3
합계 평균	344.2±690.0		

○ 상시 보호 동물 마릿수

- 상시 보호 동물 마릿수도 위의 현황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설문 응답 전체 동물보호센터 평균은 181.5 ± 402.2 (마리)이며, 공공은 107.1 ± 124.8 (마리), 사설은 352.1 ± 689.0 (마리)임

○ 연간입소 동물 마릿수

- 연간입소 수는 전체 평균 $940.5 \pm 1,725.3$ (마리)이며, 공공은 $1,235.4 \pm 1,876.7$ (마리), 사설은 146.5 ± 150.2 (마리)로 조사됨
- 공공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실, 유기동물 관련 민원 발생 시 반드시 대응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입소 동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호 기간

- 보호 기간은 전체 평균 971.9 ± 1681.5 (일)이며, 공공은 63.5 ± 84.1 (일), 사설은 3015.8 ± 1870.0 (일)으로 조사됨
-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지속해서 유기동물이 입소 되는 상황 가운데 적정 운영을 위하여 법정 보호 기간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입양이 되지 않으면 평생 보호한다고 응답한 곳도 상당수 있음

○ 연간 분양(입양)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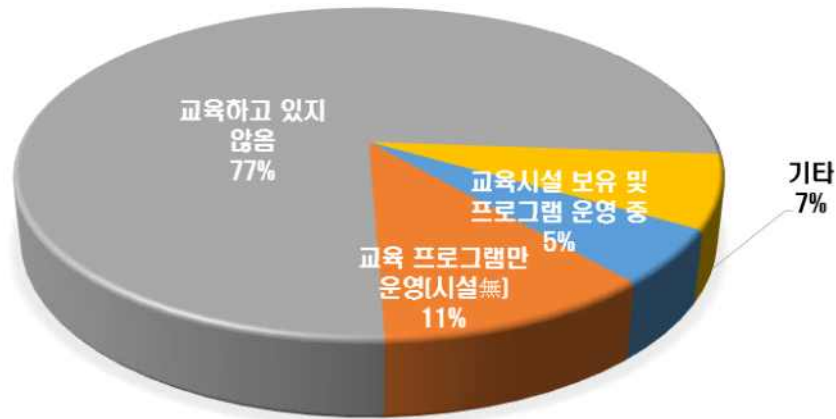
- 연간 분양(입양) 마릿수는 전체 평균 247.3 ± 402.4 (마리)이며, 공공은 311.2 ± 446.1 (마리), 사설은 83.0 ± 91.9 (마리)로 나타남
- 전체적인 경향은 사설 동물보호소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분양(입양)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분양(입양) 현황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때도 있지만, 사설의 경우 분양(입양)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간 폐사 동물 마릿수

- 연간 폐사 동물 마릿수는 전체 평균 293.5 ± 756.8 (마리)이며, 공공은 408.6 ± 806.1 (마리), 사설은 10.3 ± 6.6 (마리)으로 나타남
- 주로 유실·유기동물의 직접적인 구조와 포획을 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질병 감염이나 사고 및 안락사 등으로 폐사되는 동물이 많고,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폐사 동물 현황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많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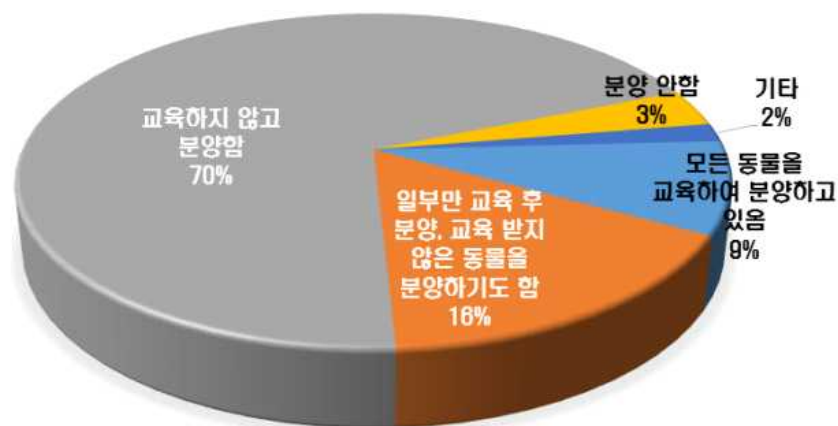
○ (동물을 대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교육하는 시설 보유 또는 프로그램 진행 여부

- 유실·유기동물을 교육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는, 교육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3개소(7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시설은 없으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곳이 6개소(10.7%), 교육 시설도 보유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곳이 3개소(5.4%)로, 별도 프로그램은 없으나 성격순화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등의 기타 응답이 4개소(7.1%)로 응답함



<그림 53> 유실·유기동물을 교육하는 시설 보유 또는 프로그램 진행 여부

- 분양(입양) 시 유실·유기동물을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하지 않고 분양한다는 곳이 39개소(69.6%)로 가장 많았고, 일부만 교육하고 그렇지 않은 동물을 분양(입양)하는 곳이 9개소(16.1%), 모든 동물을 교육하여 분양(입양)하는 곳이 5개소(8.9%)로, 분양(입양)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곳도 2개소(3.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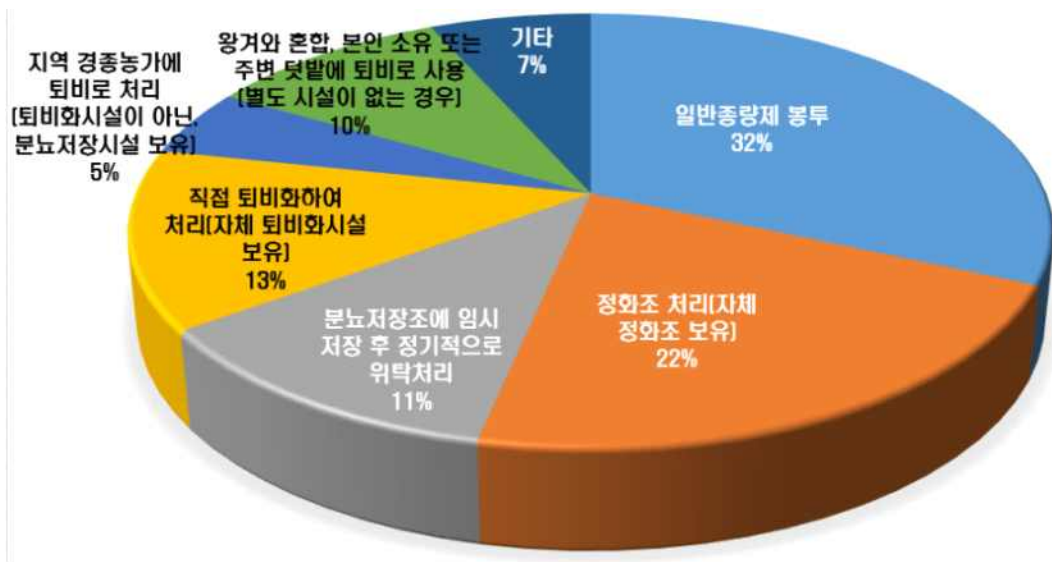


<그림 54> 유실·유기동물을 교육하여 분양(입양)하는지 여부

나. 동물보호시설 환경 관리 현황

○ 발생하는 분뇨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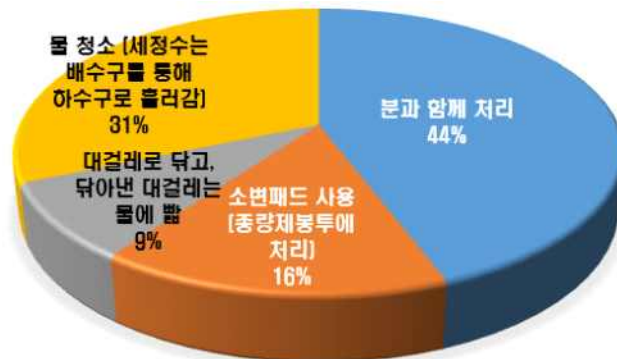
- 발생분뇨의 처리는 일반 종량제 봉투 처리가 19개소(31.7%)로 가장 많았고, 자체 정화조 보유 처리 13개소(21.7%), 자체 퇴비화 시설 보유 퇴비화가 8개소, 분뇨저장조(또는 용기)에 임시 저장 후 외부 자원화 업체로 위탁처리 7개소(11.7%), 별도 시설 없이 왕겨와 혼합하여 본인 소유 또는 주변 텃밭에 퇴비로 활용 6개소(10.0%), 분뇨저장시설이 있어 지역 경종 농가에 퇴비 처리 3개소(5.0%)로, 기타 소각업체 위탁, 구덩이나 산에 매립 4개소(6.7%)가 있었음



<그림 55> 발생하는 분뇨처리 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 뇨의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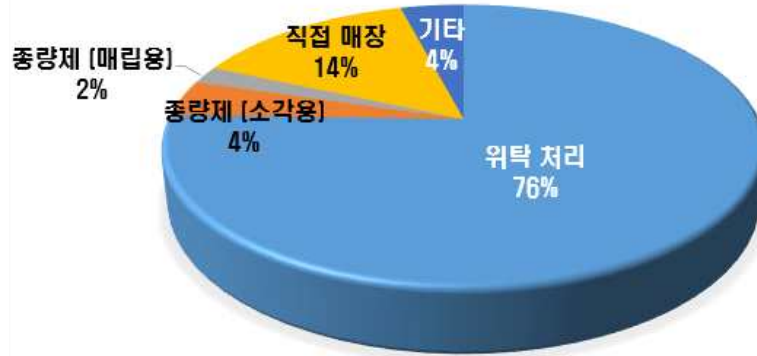
- 분과 뇨의 구분 처리는, 분과 함께 처리 31개소(44.3%), 뇨를 구분 처리 시는, 바닥 물 청소하며 세정수는 배수구를 통해 하수구 방류가 22개소(31.4%), 소변 패드를 사용하여 종량제 봉투에 처리가 11개소(15.7%), 대걸레로 닦아내고, 대걸레는 물에 빨다가 6개소(8.6%)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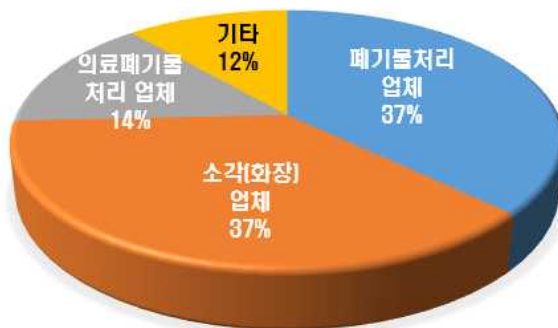
<그림 56> 분과 뇨 별도 처리 시 처리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 동물 사체의 처리방법

- 동물의 사체처리 시 위탁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탁처리가 37개소(75.5%)로, 그 밖에 직접 매장하는 곳이 7개소(14.3%)로 모두 사설 동물보호소로 나타났으며,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처리하는 곳은 1개소(2.0%),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처리하는 곳이 2개소(4.1%)로, 기타 응답은 2개소(4.1%)로 조사되었는데 기타로 응답한 곳은 냉동보관 및 도시관리공단(환경관리원)에서 처리, 군 매립지에 수의사 검안서 첨부하여 처리한다고 응답함



<그림 57> 동물 사체 처리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가 13개소 (37.1%)로, 소각(화장)하는 업체도 13개소 (37.1%)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은 5개소(14.3%), 기타 응답은 4개소(11.4%)였는데 기타 응답은 렌더링 처리업체, 지정폐기물처리업체, 위생업체 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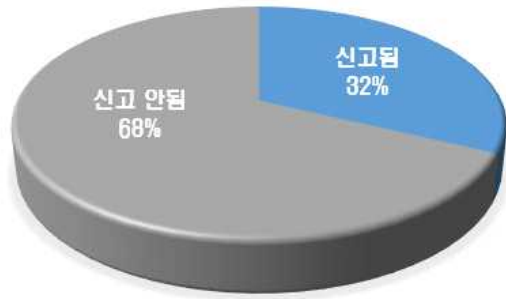
<그림 58> 동물 사체 위탁 처리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 사체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29개소(69.0%)에서 냉동시설 보유, 냉장고 보유 2개소(4.8%), 없는 곳이 10개소(23.8%), 기타 1개소(2.4%)임

<그림 59> 사체 임시 보관시설 보유 여부

○ 지자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된 곳이 18개소(32.1%), 신고가 안 된 곳이 38개소(67.9%)로 나타났으며, 공공과 사설을 교차 분석한 결과, 공공의 경우 신고 16개소(41.0%), 미신고가 23개소(59.0%), 사설의 경우 신고 2개소(11.8%), 미신고 15개소(88.2%)로 나타남

<그림 60>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기타 환경 관련 시설 보유 여부

- 악취방지시설은 보유 11개소(19.6%), 미보유 45개소(80.4%)였으며, 악취방지시설은 환풍시설, 덕트, 공기청정기 등으로 응답하였는데, 실제 악취 탈취시설은 1개소임
- 소독시설은 보유 31개소(58.5%), 없는 곳이 10개소(18.9%), 기타는 12개소(22.6%)로, 대부분 소독약 분무, 발판 소독조, 락스, 알코올, 차아염소산 등의 소독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응답함
- 소음방지시설은 보유 8개소(14.3%), 없는 곳이 46개소(82.1%), 기타로 응답한 곳은 2개소(3.6%)였는데, 소음방지시설은 방음벽을 설치, 벽체 보강, 2중창 보강 등으로 응답함



<그림 61> 악취방지시설 보유 여부



<그림 62> 소독시설 보유 여부



<그림 63> 소음방지시설 보유 여부

다. 동물보호시설 민원 발생 현황

○ 연간 민원 발생 횟수 (소음, 악취 등)



- 동물보호시설의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연간 민원 발생 횟수는 민원이 없는 곳이 24개소(42.9%), 3회 미만이 18개소(32.1%), 약 3~5회 10개소(17.9%), 약 6~10회 2개소(3.6%), 11회 이상 2개소(3.6%)로 조사됨

<그림 64> 연간 민원 발생 횟수(소음, 악취 등)

- 민원 발생 동물보호시설의 민원 유형 조사결과, 악취 민원 6개소, 소음 민원 16개소, 기타 민원 17개소였으며, 기타 민원 유형은 외부로 보호 동물의 탈출 시, 불법 건축물(가설 건축물)에 대한 민원, 동물 분양(입양) 후 치료 관계 등 사후처리 등의 민원이 있음

○ 민원에 대한 매뉴얼 보유 여부



- 민원에 대한 관리지침(매뉴얼)을 있는 곳은 6개소(10.7%)에 불과하였으며, 없는 곳이 48개소(85.7%)로 나타나 대부분 동물보호센터에서 민원대응 관리지침(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65> 민원에 대한 관리지침(매뉴얼) 보유 여부

라. 동물보호시설 경영실태

○ 동물보호센터(보호소) 월평균 운영비용 조사

- 동물보호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사료비, 인건비, 진료비, 사체처리 등 동물처리비, 분뇨처리비, 기타 운영비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호 동물의 규모, 인력 현황, 후원 여부 등에 따라 운영비용에 관한 결과는 다르나 큰 틀에서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공공 직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는 그렇지

않지만, 공공 위탁과 사설 동물보호소는 노동력 투입 대비 운영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인건비 외에 진료비 및 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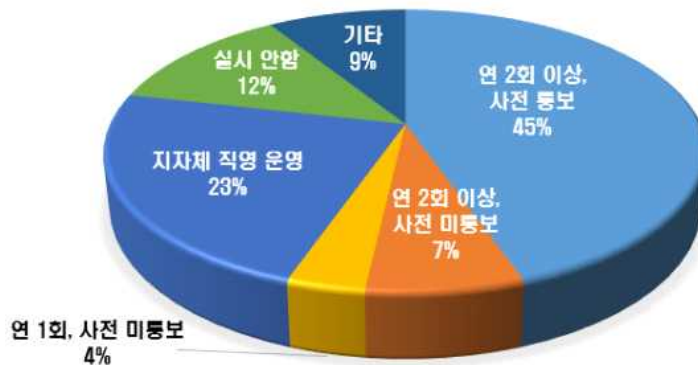
[표 24] 동물보호센터(보호소) 운영비용 (만원/월)

구 분	전체 평균	공공 평균	사설 평균
사료비	203.2±248.5	147.7±133.3	340.0±369.4
인건비	1,324.5±2,297.3	1,265.3±1,911.0	1,544.3±1,923.3
진료비	287.6±359.6	231.9±302.6	399.2±355.4
동물처리비용(사체 등)	75.2±82.8	87.3±81.0	38.6±26.9
분뇨처리비	29.3±44.1	19.5±27.5	54.6±42.6
기타 운영비용	412.4±843.1	504.7±843.5	250.8±255.6

마. 지자체 지도·감독 및 지원사항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도·감독 여부

- 연 2회 이상 지도·감독과 사전 통보를 받는 곳이 25개소 (44.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설 동물보호소 5곳(8.9%)도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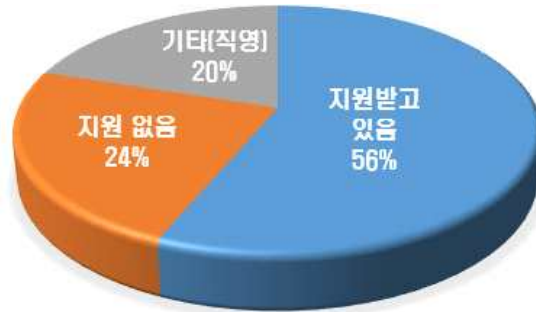


<그림 66> 지자체 지도·감독 여부 및 횟수

- 2회 이상 지도·감독을 받으나 사전 통보하지 않는 곳이 4개소(7.1%), 연 1회(사전 미통보)가 2개소(3.6%)였으며, 연 1회(사전 통보)는 없음
- 그 외에, 지자체 직영이므로 직접 관리하는 곳이 13개소(23.2%), 사설 동물보호소를 중심으로 별도로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곳이 7개소(12.5%), 기타 응답이 5개소(8.9%)였는데, 세부 내용은 민원 발생 시에만 지도 감독, 전화로 지도 감독, 항시 소통 함 등임

○ 지방자치단체 지원제도 및 보조금의 수혜 여부

- 지원받고 있는 곳이 31개소(56.4%), 지원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곳이 13개소(23.6%)로 나
타남



<그림 67> 지자체 지원제도 및 보조금 수혜 여부

- 세부적으로 공공과 사설 동물보호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원받고 있는 곳 31개소 중 공공은 25개소, 사설은 4개소(소독약, 광견병 제제, 심장사상충 예방 제제 등)였으며, 미지원 13개소 중 공공은 1개소, 사설은 12개소로 나타나, 상당수의 사설 동물보호소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그 외에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응답한 곳이 11개소(20.0%)임

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

○ 동물보호시설의 보호 동물 1마리당 적정 수용면적

- 보호 동물 마리당 적정 수용면적은 소형견(5kg 미만)의 경우 0.8 ± 0.7 평, 중형견(5~15kg)은 1.7 ± 1.5 평, 대형견(15kg 이상)은 2.9 ± 2.2 평이, 고양이의 경우 자묘는 0.7 ± 0.8 평, 성묘는 1.1 ± 1.2 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공공보다 사설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향을 보임

[표 25] 보호 동물 1마리당 적정 수용면적 (평/마리)

구 분		전체 평균	공공 평균	사설 평균
개	소형견 (5kg 미만)	0.8 ± 0.7	0.8 ± 0.7	1.1 ± 0.5
	중형견 (5~15kg)	1.7 ± 1.5	1.5 ± 1.6	2.4 ± 1.1
	대형견 (15kg 이상)	2.9 ± 2.2	2.1 ± 1.8	4.7 ± 2.3
고양이	자묘	0.7 ± 0.8	0.6 ± 0.7	1.1 ± 0.7
	성묘	1.1 ± 1.2	0.9 ± 0.9	2.0 ± 1.3

- 동물보호시설에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보호 동물 수
 - 동물보호시설 관리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보호 동물 수를 적정관리가 가능한 규모와 최대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나누어 조사함
 - 적정 관리를 위한 보호 동물 수는 1인당 31.3±21.3마리, 최대 관리할 수 있는 보호 동물 수는 1인당 51.0±37.0 마리로 조사됨
 - 공공보다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됨

[표 26] 1인당 유기동물 관리 마릿수 (마리/사람)

구 분	전체 평균	공공 평균	시설 평균
적정관리를 위한 보호 동물 수	31.3±21.3	30.43±22.6	36.0±20.7
최대 관리할 수 있는 보호 동물 수	51.0±37.0	50.2±40.3	54.3±30.3

사.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1)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측면의 의견

- 인력적인 문제
 - 휴일 없이 365일을 같이 생활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림
 - 정상적 운영이 힘들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낮은 시급과 열악한 환경임
 - 시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운영자가 고령이며 후계자가 없음
 - 동물사육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리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및 양성이 필요함
 -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인력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의견 수렴되었는데, 보호센터 내 견사 청소, 먹이 급이, 질병 관리 등을 혼자 하고 있으며, 유기 유실동물 구조, 포획은 공중방역 수의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행정업무는 거의 손을 댈 수 있는 시간이 없음 (동물 관련 사업장의 인력 기준처럼 동물보호센터의 인력 기준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예) 총괄관리 0명, 행정업무 0명, 시설유지·관리 0명, 포획·구조 0명, 보호·관리 0명 등)
 - 민원접수 및 관리, 포획 인은 한정되어 있으나, 민원은 24시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인당 근무시간과 휴무일을 준수해서 운영하려면 민원접수, 동물관리, 포획에 각 업무에 6명 이상 총 18명 내외가 종사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지장은 없지만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함

- 야간에 보호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는 지자체 당직실에서 민원접수 및 포획 후 보관하고 다음 날 보호소로 인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매일 당직자가 바뀌는데 저녁 이후 해당 업무를 잘 모르는 당직자가 여러가지 민원을 전달하며 보호소 운영자 측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 가중이 되고 있음)
- 보호시설 운영자의 휴식시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
- 무분별한 민원에 대한 문제
 - 새벽까지 민원에 대해 전화를 하는 민원인이 있음
 - 야간 민원 전화에 대한 문제
- 동물보호단체와 봉사단체의 무분별한 운영 간섭
 - 동물보호단체의 지나친 관심, 조례 개정
 - 안락사 금지 요청 등 봉사단체의 시 행정 관여
 - 안락사 기준이 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감시로 인해 시행이 어려움
 - 보호시설 출입에 대한 통제규정이 필요함
 - 동물보호단체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민원 제기
 - 동물보호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나친 민원(보호시설의 환경 및 동물에 대한 처우, 인도적 처리에 대한)과 인력 부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함

2) 동물보호시설의 공간 및 시설 측면의 애로사항

- 공간적인 측면
 - 일부 보호시설의 입지적 부적합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적정 시설기준이 필요함 (적정관리 가능)
 - 분리 사육의 기준 제시가 필요함 (노령, 허약견, 대형견)
- 시설적인 측면
 - 보호센터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분뇨처리 시설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보호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복지시설(목욕 시설, 격리시설, 입소 후 적응시설)이 필요함
 - 복지시설기준으로 목욕 시설, 냉난방시설, 충분한 공간 등이 필요함

- 동물보호센터의 분뇨처리 방식을 정확조, 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함 (퇴비사 운영은 반대하는데, 분변 수거에 인력 소모가 크고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 가중과 민원 발생이 우려됨)

3) 공공(직영 및 위탁) / 사설 동물보호소의 운영에 대한 의견

○ 공공/위탁/사설 운영 관련 의견

- 공공시설은 위탁 운영 시 전문성 확보의 장점이 있음
- 보호시설의 대형화가 필요함 (조직화, 효율화 기대)
-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에 지원금이 사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위탁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은 잦은 민원과 관리 감독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
- 동물병원은 향후 동물보호 업무(위탁대행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함
- 도시지역 동물보호 업무 위탁과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
- 지자체 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연계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구조업무의 경우 공공과 사설이 구분되어야 함)
- 동물보호와 관리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동물 복지적인 측면은 민간단체에서 구분하여 이원화 관리가 필요함
- OO 지자체의 경우 각 구청과 보호소 간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업무량과 무관하게 (동선, 보호시설 규모 등)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자들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협의체 구성 주체 : 동물단체, 보호소 운영자, 담당 공무원)

○ 사설 동물보호소 관련 의견

- 모든 사설 동물보호소는 정부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함 (인력 등 직접 고용)
- 사설 동물보호소의 폐해가 있으므로 공공화되어야 함
- 민간 보호시설의 미입양 유기동물이 관리되지 않으면 학대수준이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함 (단계적으로 사설 동물보호소 폐쇄 및 공공 영역으로 가져가야 함)
- 일부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시설 낙후에 대한 대안 부재, 경제적으로 열악함)

- 사설 동물보호시설은 적정규모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함
- 사설 동물보호소는 공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기타 건의사항

- 발생 유기견의 80% 이상은 바로 반환이 되거나 입양되고 있으므로, 쉽게 주인이 확인할 수 있고 입양이 편리하도록 발생 인근에서 20일 이내 보호의 소규모 보호소 여러 개소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여러 곳의 소규모 보호시설에서 사납거나 문제가 있어 입양되지 않는 장기간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유기동물은 교외에 넓은 대형 보호시설에서 보호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소규모 보호소와 대형 보호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건강상 문제가 없어 안락사시키기 어렵고, 장기간 입양되지 않는 유기동물의 경우 장기보호와 심하게 다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심에 설치하기 힘든 넓은 좋은 환경의 교외 시설을 국가가 운영하여 연계 체계를 시스템화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임)
- 동물보호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 시군 자체 직영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군 직영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 규모가 작고 보호 개체 수가 많아 질병, 악취, 소음 문제 등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정부가 직접 시군마다 유기동물보호소 확장 건립 혹은 신축 건립 지원사업 등을 마련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해 주길 바람

4)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의견

○ 동물보호센터에서의 관리

-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실에서 수의사 점검 후 입소가 필요함
- 입소 동물의 건강 확인과 치료의 의무화가 필요함 (홍역, 파보, 심장사상충)
- 입소 시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순회 수의사 지정 등 유기동물의 초기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밀집 사육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수용 능력 초과)
- 중성화 수술의 의무화가 필요함 (특히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강화 필요)
- 유기동물 관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근거 기록을 남겨야 함
- 현재 20일의 보호 기간은 짧아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함
-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의 구분관리가 필요함

○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자신의 능력치보다 많은 반려동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 일부 사설 동물보호소에서의 임의번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함 (일부 고령의 보호소장이 있음)

○ 안락사에 대한 의견

- 안락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임 (전염병, 공격성, 보호 동물의 개체 수 조절)

- 안락사 적정 시행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결정 기구가 필요함

- 안락사는 필요악임 (합리적인 사유이면 무엇보다 강조해야 함)

- 안락사를 최소화해야 함 (지자체 민원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음)

5) 유기동물 발생 현황 및 억제에 관한 의견

○ 유기동물 현황

- 증가 추세인 원인은 시골 지역 마당개, 공장개의 번식으로 인한 잡종 개 발생임

- 지방의 경우 피서철 유기동물 증가, 사설의 경우 시·군 보호시설의 입양 가능한 동물 또는 긴급한 동물은 데려와 보호 동물이 증가함

- 서울, 대구, 성남 등 도시지역은 감소 추세임

○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

- 동물등록 강화가 필요함

- 중성화 지원 또는 의무화가 필요함

- 농촌 지역 마당개 등 외부에 방치되어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등록 및 중성화 지원)

○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 동물등록제의 확실한 이행 등 동물보호법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 (동물등록 의무화, 내장형 칩 의무화 및 단속 [과태료])

- 동물 학대자 소유권 금지 등 법적 처벌강화 하여야 함

- 동물등록을 강화해서 유실동물의 발생을 감소시켜야 함

- 유기, 학대자에 대한 벌금, 처벌강화가 필요함
- 무등록자는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함
- 개 사육시설과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등록 의무화가 필요함
- 번식장과 판매장(애완동물 가게)에서의 중성화 수술 의무화가 필요함
- 동물보호법 개정 시, 보호자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사육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함 (지자체장 책임제)
- 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적정시설 두수의 기준 제시가 필요함
- 우수 보호소에 대한 정책적 차등 지원을 위해 보호소 평가 기준마련과 평가가 필요함
-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불법 반려동물 사육자의 고발 등 단속 강화가 필요함
- 법 기준을 명확히(구체화) 하여 보편타당하게 집행하여야 함
-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법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중 보호 동물의 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는 제외해야 함)
- 구조 보호 대상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산업 동물과 반려동물의 구분)
- 야생화된 들개의 경우 포획 및 보호에 대한 별도의 처리 지침이 필요함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다친 고양이와 3개월 이하의 고양이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길고양이가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함

6) 예산 관련 의견과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

○ 예산 측면

- 사체처리비의 부담 :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체 발생을 억제하려고 함
-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의 지원방안이 필요함 (250만 원/월)
- 위탁 보호비 산정이 일괄적용이 아닌, 대형견, 소형견, 특히 임신견, 수유견 등의 보호 기간을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위탁 보호비가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하여 명실상부한 동물의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함

○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 사료와 진료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함

- 진료비/예방접종, 중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마리당 입소 위탁비가 1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운영상 비용이 너무 적음
- 마리당 10~18만 원 지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함
- 마리당 현재 평균 관리비용은 최소 17만5천 원으로 산출됨
- 입소 동물에 최소한의 의약품 지급(검사 장비, 구충제, 영양제 기타)을 통한 생명 연장으로 기본적인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에 맞게 지원되길 바람

○ 동물복지를 위한 예산 확대 방안

-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동물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문제로 접근해야 함)

○ 분양(입양) 후 사후관리 방안

- 개 주인(견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필요함
- 입양(분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위탁 보호비 상향 조정과 적극적인 홍보, 관심을 통한 입양의 극대화로 보호 기간 연장, 최소한의 안락사 등 실질적인 동물복지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함

7) 그 밖의 기타 의견

- 동물농장 등과 같은 TV를 통한 모금 활동 등의 아이디어가 필요함
- 동물보호단체의 사고 전환이 필요함 (일방적 주장이 아닌, 소통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
- 외국의 평생 관리시스템과 같은 유기동물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동물보호센터의 진료 수가, 보험 등 관련 제도 적용이 검토되어야 함
- 반려동물에 대한 중성화 지원방안이 필요함
- 동물의 임의 도살 금지 방안이 필요함
- 전국 150여 개로 추정되는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 보호비는 나오나 수술비는 나오지 않아 직접 부담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함
- 반환 시 날짜 계산 지급되는 지자체도 있음
- 방사 관리가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함
- 유기동물이 보호되는 마지막 장소인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등록제와 동물의 복지 교육 안

내가 아닌, 처음 애견 판매소에서부터 동물등록제와 키울 수 있는 여건 확인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센터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경계가 일반인의 생각과 차이가 큰데, 일반인(민원인)의 생각은 동물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기동물"이라는 한정된 대상을 지원되는 비용만으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유기견의 문화가 사회의 현실과 같이 맞물려 진행되는 가운데 개고기 식용 금지나 동물보호 단체의 요구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되지 않고, 전통적인 개고기 문화 및 애견문화를 너무 많이 변화시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기견이나 애견문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됨
- 태국의 사례를 보면 방콕시장은 은퇴 후 국가 소유의 유기견보호소(약 5만 마리) 책임자로 가는 봉사의 길을 선택함

3. 설문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분뇨처리 및 사체처리 등 관련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 방법은 일반 종량제 봉투 처리하는 곳이 가장 많았고, 자체 정화조를 보유한 곳, 자체 퇴비화 시설을 보유한 곳, 정기적으로 외부 자원화 업체로 위탁 처리하는 곳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구덩이나 산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등 일부 불법적 처리 가능성이 있는 동물보호센터도 있음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는 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분변 청소를 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만 명시되어 있고 처리방법 및 시설기준은 없으며,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또한 분뇨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상황임
- 동물보호시설의 분뇨발생량은 소나 돼지와 같은 경제 동물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나, 환경오염의 우려를 해결하고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의 분뇨처리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체 처리방법

- 동물보호시설의 사체 처리방법으로는 설문 응답의 75.5%가 폐기물관리법이나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외에 일부 보호소에서는 매장(매립)하는 곳이 있었고, 종량제 봉투에 처리한다고 응답한 곳도 있음

- 동물의 사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서 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에 속하는 동물의 사체, ②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의 동물 사체, ③ 생활폐기물 중 동물성 잔재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의 동물보호센터가 300kg일 발생 사업장 기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① 의료폐기물 또는 ③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음
-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의 경우, 현재로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어떻게 분류하여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며, 별도로 관련 법률에 처리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함

○ 그 밖의 환경 관련 시설

- 소음방지시설은 설문 응답의 82.1%, 악취방지시설은 80.4%의 동물보호시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음 및 악취 민원이 연간 한 번 이상 발생한 동물보호시설이 57.1%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주요 유형이 소음과 악취 민원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법적 안 기준마련 및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 동물보호시설 운영 시 복지적 측면

○ 보호 동물 1마리당 적정 수용(보호 관리) 면적

- 보호 동물 1마리당 적정 수용(보호 관리) 면적에 대하여, 개의 경우 소형견(5kg 미만) 0.8±0.7평, 중형견(5~15kg) 1.7±1.5평, 대형견(15kg 이상) 2.9±2.2평, 고양이의 경우 자묘 0.7±0.8평, 성묘 1.1±1.2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으로 개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고양이는 면적보다는 캣 타워나 모래(벤토나이트) 같은 시설 구비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본 문항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모은 결과로 참고치로써 평가할 수 있으나, 동물보호시설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동물행동학적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써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시설기준 제시 시 권장 사항 수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물보호시설에서 1인당 관리 가능 보호 동물 수

- 동물보호시설 현장조사와 설문 조사 시 인력적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보호 동물 수를 적정 수준과 최대 수준으로 나누어서 조사함

- 적정 관리를 위한 보호 동물 수는 1인당 31.3±21.3마리, 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보호 동물 수는 1인당 51.0±37.0마리로 나타남
- 본 문항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분석한 결과로 참고치로써 평가할 수 있으나 동물보호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며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능 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력 기준 제시 시 권장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 응답 유형 분류 및 시사점

- 설문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시설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과 정부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응답자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응답 유형별로 주제를 나누고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측면의 의견
 - ② 보호시설의 공간적·시설 적인 측면의 의견
 - ③ 공공(직영 및 위탁) / 사설 동물보호소의 운영에 대한 의견
 - ④ 동물보호시설 내에서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의견
 - ⑤ 유기동물 발생 현황 및 억제에 관한 의견
 - ⑥ 예산 관련 의견과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
 - ⑦ 그 밖의 기타 의견
- 본 연구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①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측면의 의견, ② 보호시설의 공간적·시설 적인 측면의 의견, ③ 공공(직영 및 위탁) / 사설 동물보호소의 운영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이 본 연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반려동물 산업 및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이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상당수 의견을 제시한바, 이러한 문제들은 동시에 해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즉, ④ 동물보호시설 내에서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의견, ⑤ 유기동물 발생 현황 및 억제에 관한 의견, ⑥ 예산 관련 의견과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동물보호시설이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 가운데 가치사슬로서 가지는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및 역할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러므로 연구 목적에 따른 결론과 더불어, 연구결과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4장 성과 요약 및 기대효과에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최소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동물보호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 제안을 세분화하여 수록하고자 함

제 3 절 자문단 회의

1. 자문단 회의 개요

- 자문단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검토 결과 본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시 참석하였던 기관과 자문이 필요한 단체를 대상으로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자문의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의 과정과 중간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과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을 확인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함
 -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간 중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주요 업무 등으로 고정된 일자에 한 장소에서 회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 방문하여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해당 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함

2. 자문단 회의

- 착수보고 시 참석하였던 기관과 단체 등에 협조 요청 결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성남시청,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권 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반려동물생산자조합 한 울타리를 자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별 방문하여 의견 수렴함 (전문 자료는 부록 2에 수록함)

3. 자문단 회의 시사점

-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자문단은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기본적으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자문단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가 발생 후의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억제(최소화) 정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려동물 사육자의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육포기자의 경우 재입양과 사육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입양 전 관련 교육의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사육자에 대한 책임 의무 강화에 대한 의견임
-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자문단이 내장형 동물등록 칩 의무화와 장기적으로는 식용견을 제외한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동물의 등록 의무화, 전 생애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동물등록증(패스포트) 발급 등의 의견에 동의함

- 중성화 수술 의무화 및 중성화 사업(TNR, Trap-Neuter-Return)과 관련하여서는 동물등록 의무화와 같이 중성화(Neuter)도 의무화되어야 하고, 사업의 지원과 확대(중성화 수술 비용 30~4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시, 사전 심의회를 통하여 사육포기자의 범위를 정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사육 포기동물을 인수하는 제도에 대한 확대와 강화하자는 의견임
- 번식장과 판매장 관련하여서는 번식장의 경우 10% 정도의 농장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90%의 농장 폐쇄에 대한 검토와 번식장 내 상시 수의사가 상주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문생산업자 자격증 제도, 반려동물생산학과의 개설 등과 같은 지역별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와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임
판매장의 경우 적정한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조건에 충족하는 판매장만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억제(최소화) 방안으로 반려견 놀이터와 교육센터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하여 한강공원과 같은 하천부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여 조속한 하천법의 개정 의견과 지자체 또는 광역 단위별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일반인과 사육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정 교육 수수료 후 분양받도록 하자는 의견임
- 동물 등록세, 입양수수료, 사육 포기동물 인수수수료, 동물소유자 반환수수료, 등과 같은 조세제도 활성화와 벌칙과 관리·감독 강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음

제4장

국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노처리 현황

제1절 국내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노처리
현황

제2절 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노처리
현황

제 4 장 국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 현황

제 1 절 국내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 현황

1. 국내 연구 동향

가. 선행 연구결과

- 공주대학교 김병수 교수 연구팀(2011.10)은 농식품부 연구용역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실태조사 및 해외 선진 보호시설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함
 - 공공재 성격의 정부 주도형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안) 및 운영실태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함
 - 표준화 기준 제시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시설운영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과 역할, 설계,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질병 관리 프로그램, 안락사, 입양프로그램, 행동프로그램, 길고양이 TNR 프로그램 정립,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 재난 발생 대응 길잡이 등 종합적인 운영 방침을 정립함
 - 관련 조사를 통하여 동물보호센터의 분뇨 발생·처리에 대한 문제는 파악되었고 보호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바닥 관리 및 배수 시스템, 청소 요령 등은 제시되었으나,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기준 등은 검토되지 않음
- 전남대학교 대학원 명보영 (2013.8)은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국내 동물보호소의 질병 현황조사와 국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장조사를 통해 계약방식, 운영상태, 시설 현황, 구조, 질병 관리, 개체관리, 입양, 안락사, 사체처리, 자원봉사자 관리, 길고양이 Trap -Neuter-Return (TNR) 사업 등 동물보호소 운영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함
 - 미국, 유럽(영국, 독일)의 현장조사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체계 및 유기동물 보호 시설 운영, 시설 등을 확인하고 국내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확인함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정립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동물보호 선진국의 여러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동물보호센터 설계, 구조, 질병 관리, 개체관리, 안락사, 입양프로그램, 길고양이 TNR 프로그램 등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을 소개함

- 국내 유기동물보호소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소개함으로써 모범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정립하였으나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음
- 부산대학교 우병길 (2015.8)은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효율적 관리방안-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의 대한 연구를 수행함
-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국내 반려동물의 현황 및 실태 파악,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립 및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 정부 주도의 보호센터와 민간위탁 형태의 보호소 간 운영 차이, 동물보호센터의 재정 상태, 동물보호법과 지자체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법적 현황 및 동물보호센터 표준 방침의 부재, 운영 인력의 비전문성 등 문제점을 도출함
 - 해결방안으로 동물등록제의 확대·강화, 반려동물 판매업 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개선을 제시함
 - 또한,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동물보호센터의 정부 주도형으로 전환 및 운영 표준화를 제안함
 - 그러나 사례 중심의 연구 한계로 동물보호센터의 법률적 검토 및 운영지침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 잘 키움 행동 치료 동물병원 이혜원 (2019.3)은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전국에 산재한 사설 동물보호소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파악된 사설 동물보호소 중 일부 보호소를 방문하여 시설·운영·동물의 상태를 심층 조사하여 사설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사설 동물보호소와 애니멀호더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고,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명시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대비하여 사설 동물보호소의 운영수준을 비교 분석함
 - 사설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제안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환경시설 및 분뇨관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 및 운영지침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함

2. 국내 동물보호 관련 법령

가. 동물보호법의 개요

- 「동물보호법」(動物 保護法, animal protection act)은 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8세기 영국의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철학자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에서 동물권리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었는데,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들은 관행에 따라 법제들은 상이하나, 학대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서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있음⁴¹⁾
-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로 동물보호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⁴²⁾
 - 동물보호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실험동물에 관해 규정한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해외에서 개고기의 식용에 대해 비판받은 후에야 제정된 법으로 선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음⁴³⁾
- 반려동물 관련 법규 : 「동물보호법」이 근간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시, 구, 군의 역할과 세부규정은 조례에 규정됨
 -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법규는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 자치 시, 군, 구의 동물보호 조례임
-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은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실험, 동물복지 축산농자의 인증, 영업 등을 다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를 예를 들면 시장의 책무,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 구조·보호, 관련 시설의 운영, 길고양이 등의 관리, 시의 지원 등을 다루며 시설운영, 수수료 책정 및 감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치구 동물보호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도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와 유사하게 구청장의 책무,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보호 및 관리,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길고양이 관리, 관련 시설 설치·운영, 자치구의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41) 다음 백과. 2019.9.

42) 위키백과. 2019.9.

43) 박수현. 2008. “동물보호법과 이종이식에서의 공여 동물의 보호”

- 현재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 등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이하 생략

-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은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실험,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인증, 영업 등을 다루고 있으나, 반려동물 사육 가구 및 관련 산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인 이슈를 해결하고, 급격히 변하는 시대의 흐름 및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포함하는 개정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동물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는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기준과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물보호법」에서는 제15조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처리 및 관련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3. 21] [대통령령 제29614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2. 11.] (이하 생략)

-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물보호법」의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에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별표 1에서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을 명시하고, 별표 4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별표 5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중략)

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이하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중략)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 50 × 70 × 60(cm) (중략)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서는 시설별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신뢰성 있는 기준에 근거한 시설기준과 가축분뇨 처리 등 구체적 관리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및 청소 횟수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8. 26>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제19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0항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하여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반사항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되는 동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항에서 동물의 구조 및 포획부터 사체처리까지의 관리 및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칙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시행 2016. 3. 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 2016. 3.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서는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과 관리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과 관리, 동물의 구조 및 운송, 보호조치, 질병 관리, 동물의 반환 및 분양,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대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시설과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나. 그 밖의 관련 법률 (가축분뇨법, 약취방지법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3.24.>

[별표 2] 신고 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배출 시설·처리시설의 관리,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등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기동물과 관련된 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유래된 유기동물과 같이 보호 동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1조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제12조에서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사설 동물보호소)의 배출시설 설치,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6조 허가 대상 배출시설,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별표1,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유기동물보호센터와 시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3. 23] [환경부령 제750호, 2018. 3.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별표 2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별표 6에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별표 12에서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은 검토 결과 산업용 동물(가축)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관리 및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용 동물이 아닌 반려의 목적을 가진 동물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에서 관리 및 규제사항을 두는 것이 적절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 대상 배출시설,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별표1, 별표 2에서 규정하고, 별표 2, 신고대상에서는 개 사육시설의 면적을 면적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육성을 위한 단순 사육이 아닌 관리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는 적용 대상이 아님

○ 「악취방지법」

- 환경부는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배출시설로 정의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악취방지법에서 악취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악취방지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5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6.]
(이하 생략)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1.]
(이하 생략)

○ 「악취방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은 반려동물 사육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보호시설의 악취에 관한 시설과 배출허용 기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악취방지법」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악취 배출시설”을 정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유래된 유기동물 등의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 「악취방지법」에서는 제6조에서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시설의 악취에 대한 관리와 배출 허용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악취방지법」 시행령은 1조의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5조에서 과징금 처분대상 악취 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시설과 관련된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악취방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은 검토 결과 대부분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호 및 관리목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에서 관리 및 규제사항을 두는 것이 적절함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2에서 악취 배출시설을 축산시설의 경우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육성을 위한 단순 집단 사육이 아닌 관리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
- 「건축법」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서 건축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중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중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하생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중략)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이하생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중략)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8., 2012. 12. 12.>

(중략)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동물보호시설의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의 ‘축사’ 또는 ‘가축시설’과 가장 유사하나, 두 시설 모두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항의 [별표 1]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축사와 가축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시설은 규정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에서 관리 및 규제사항을 두는 것이 적절함
- 사설 동물보호소를 적법화하고 제도권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용 법률의 검토와 개정이 필요함

나. 자치단체 조례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1)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 현재 8개 광역자치 시와 9개 광역자치 도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는 동물보호 조례로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27] 광역자치 시 현황 및 관련 조례 명

구 분	광역자치시			
	인구 (천명)	행정 단위		관련 조례 명
		구청	군청	
서울특별시	9,751	25	0	동물보호 조례
부산광역시	3,441	15	0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2,956	8	2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대구광역시	2,449	7	1	동물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1,481	5	0	동물보호 조례
광주광역시	1,459	5	0	동물보호 조례
울산광역시	1,150	4	1	동물보호 조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330	0	0	동물보호 조례
8개	21,537	69	4	

자료 : 행정안전부 통계청. 2019.7.

[표 28] 광역자치도 현황 및 관련 조례 명

구 분	광역자치도			
	인구 (천명)	행정 단위		관련 조례 명
		시청	군청	
경기도	13,176	28	3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경상남도	3,366	8	10	동물보호 조례
경상북도	2,668	10	13	동물보호 조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충청남도	2,125	8	7	동물보호 조례
전라남도	1,868	5	17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1,825	6	8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충청북도	1,599	3	8	동물보호 조례
강원도	1,540	8	11	동물보호 조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670	2	0	동물보호 조례
9개	21,335	65	58	

자료 : 행정안전부 통계청. 2019.7.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 서울시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보호 조례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59호, 2019.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019-06-03 조례 제61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03-04-07 조례 제 3243호,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 56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증진과 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이하생략)

- 「광역 자치시와 광역 자치도의 동물보호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설 동물보호소의 정의와 관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보호센터도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 「광역 자치시와 광역 자치도의 동물보호 조례」는 관내 사설 동물보호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광역 자치시와 광역 자치도의 동물보호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에서 관련 조항 개정 후 사설 동물보호소의 정의 및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기준 등의 규정이 필요함

2)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에 의해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음
- 「동물보호법」과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검토를 통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시설 및 관리기준의 반영 정도를 확인하고 자 함

[표 29] 기초자치단체(광역시 구) 현황 및 관련 조례 명

구 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시 구)			관련 조례 명
	구청(군)		인구(명)	
	수	인구(多)		
서울 특별시	25	송파구	678,553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 광역시	15	해운대구	407,104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 광역시	8(2)	서구	543,07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유실·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대구 광역시	7(1)	달서구	571,2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대전 광역시	5	서구	481,964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주 광역시	5	북구	435,80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울산 광역시	4(1)	남구	325,875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7개	69(4)		3,443,615	

자료 : 행정안전부 통계청. 2019.7.

[표 30]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도 시 군) 현황 및 관련 조례 명

구 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도 군)			관련 조례 명
	군(시청)		인구(명)	
	수	인구(多)		
경기도	3(28)	양평군	116,91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10(8)	함안군	66,1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 조례
경상북도	10(8)	칠곡군	117,86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7(8)	홍성군	100,80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17(5)	무안군	282,63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8(6)	완주군	92,97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8(3)	음성군	95,3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강원도	11(8)	홍천군	69,4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0(2)	-	0	-
9개	74(68)		684,351	

자료 : 행정안전부 통계청. 2019.7.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송파구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1988·5·1] 조례 제54호 (일부개정) 2013.12.31 조례 제12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6·5, 2009·4·6, 2011.12.12.> (이하생략)

[표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분석

1	제1조 (목적)	5	제5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2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6	제6조 (사육자의 의무)
3	제3조 (사육허가)	7	제7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4	제4조 (삭제)	8	제8조 (시행규칙)
부칙 <제1,202호, 2013.12.3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유실·유기동물의 정의와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동물보호시설의 구체적인 사육허가 등도 규정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88·5·1] 규칙 제40호
 (일부개정) 2015.10.22 규칙 제7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이하생략)

[표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

1	제1조 (목적)	3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2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4	제4조 (보건소장의 의견첨부)
부칙 <제762호, 2015.10.22.>			

자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9.8.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 가금 류 등으로 정의하고, 가축사육 제한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7.09 조례 제1924호
 (일부개정) 2018.03.27 조례 제24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표 33] 경상남도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항

1	제1조 (목적)	6	제6조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2	제2조 (정의)	7	제7조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3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8	제8조 (처리수수료 감면)
4	제4조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9	제9조 (준용)
5	제5조 (수집·운반 대행)	10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2018.3.27. 조례 제2414호>			

자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9.8.

- 「경상남도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가축의 사육제한과 수집·운반지역의 범위 및 처리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정의와 관리는 규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육허가 등도 규정하지 않음

○ 「경상남도 함안군 동물보호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2008.10.21 조례 제19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표 34] 경상남도 함안군 동물보호 조례 조항

1	제1조 (목적)	5	제5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2	제2조 (정의)	6	제6조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3	제3조 (보호시설 설치)	7	제7조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4	제4조 (유기동물의 포획)	8	제8조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자료 : 경상남도 함안군 동물보호 조례. 2019.8.

- 「경상남도 함안군 동물보호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에서 관련 조항 개정 후 연계하여 사설 동물보호소의 정의 및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사항의 규정이 필요함

3. 국내 동물보호 관련 제도·정책

가.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1) 동물등록제 (동물등록 현황)⁴⁴⁾

○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동물등록제 2013년 도입, 2014년 의무화)

-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제47조(과태료)

○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3,49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92.8%가 동물병원인 것으로 조사됨

- `18년 3,498개소 : 동물병원 3,245, 동물보호센터 141, 판매업소 108, 동물보호단체 4

`17년 3,483개소 : 동물병원 3,173, 동물보호센터 164, 판매업소 142, 동물보호단체 4

[표 35] 동물등록제 대행기관 현황

시.도	계	백분율	등록대행정기관 수			
			동물병원	보호센터	동물판매	보호단체
서울	837	23.9%	772	42	21	2
부산	239	6.8%	236	2	1	-
대구	157	4.5%	154	3	-	-
인천	179	5.1%	174	5	-	-
광주	93	2.7%	92	1	-	-
대전	109	3.1%	103	5	1	-
울산	53	1.5%	31	13	9	-
세종	17	0.5%	17		-	-
경기	962	27.5%	928	16	18	-
강원	110	3.1%	80	5	23	2
충북	97	2.8%	84	6	7	-
충남	108	3.1%	89	10	9	-
전북	93	2.7%	67	17	9	-
전남	61	1.7%	52	3	6	-
경북	142	4.1%	130	9	3	-
경남	192	5.5%	189	3	-	-
제주	49	1.4%	47	1	1	-
계	3,498	100.0%	3,245	141	108	4

4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7.

- 2018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 6,617마리로 전년 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 4,077마리로 조사됨
-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 이후 신규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등록률과 등록 마릿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신규등록 반려견 (마리, 증가율) : ('15) 9만 1,232마리 → ('16) 9만1,590마리 (0.4%) → ('17) 10만 4,809마리 (14.4%) → ('18) 14만 6,617마리 (39.8%)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 6,183마리(31.5%), 서울 3만 0,560마리(20.8%), 인천 9,297마리 (6.3%) 순임 (부산 7,732마리 5.3%)

[표 36] 동물등록 현황

(단위 : 마리)

구분	2018년		누계 ⁴⁵⁾	
	두수	백분율 %	두수	백분율 %
서울	30,560	20.8%	287,165	22.0%
부산	7,732	5.3%	106,063	8.1%
대구	6,264	4.3%	64,961	5.0%
인천	9,297	6.3%	83,423	6.4%
광주	3,837	2.6%	23,335	1.8%
대전	5,695	3.9%	52,935	4.1%
울산	2,751	1.9%	27,274	2.1%
세종	972	0.7%	3,568	0.3%
경기	46,183	31.5%	386,015	29.6%
강원	3,754	2.6%	40,525	3.1%
충북	3,726	2.5%	28,729	2.2%
충남	5,173	3.5%	36,670	2.8%
전북	2,970	2.0%	25,683	2.0%
전남	2,833	1.9%	16,322	1.3%
경북	5,059	3.5%	37,281	2.9%
경남	5,834	4.0%	62,130	4.8%
제주	3,977	2.7%	21,998	1.7%
계	146,617	100.0%	1,304,077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8.

45) '08.01.27.부터 도입, '13년 10만 이상의 전국시군지역 142개로 확대, '14.1월부터 전국 시군구 확대시행

○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 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61%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내장형 89,482마리 ('17년 70,777마리), 외장형 40,657마리 ('17년 27,005마리), 인식표 16,478마리 ('17년 7,027마리)

[표 37] 2018년 지자체별 동물등록 현황

(단위 :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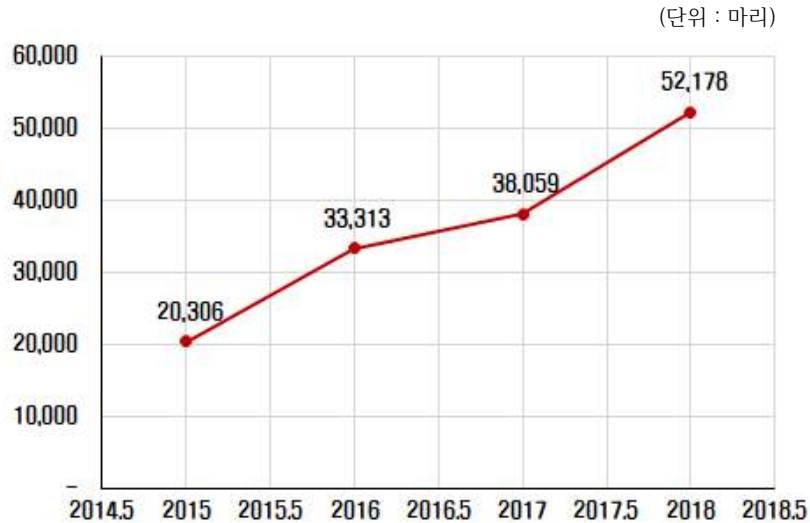
구분	2018년 계	2018년도 등록 마릿수					
		내장형	백분율	외장형	백분율	인식표	백분율
서울	30,560	18,457	60.4%	9,200	30.1%	2,903	9.5%
부산	7,732	4,236	54.8%	1,187	15.4%	2,309	29.9%
대구	6,264	3,529	56.3%	2,285	36.5%	450	7.2%
인천	9,297	5,057	54.4%	2,731	29.4%	1,509	16.2%
광주	3,837	2,168	56.5%	1,368	35.7%	301	7.8%
대전	5,695	3,593	63.1%	1,715	30.1%	387	6.8%
울산	2,751	1,849	67.2%	757	27.5%	145	5.3%
세종	972	582	59.9%	285	29.3%	105	10.8%
경기	46,183	27,016	58.5%	14,444	31.3%	4,723	10.2%
강원	3,754	2,566	68.4%	558	14.9%	630	16.8%
충북	3,726	2,445	65.6%	883	23.7%	398	10.7%
충남	5,173	3,678	71.1%	1,052	20.3%	443	8.6%
전북	2,970	2,089	70.3%	606	20.4%	275	9.3%
전남	2,833	1,831	64.6%	759	26.8%	243	8.6%
경북	5,059	2,778	54.9%	1,334	26.4%	947	18.7%
경남	5,834	3,929	67.3%	1,206	20.7%	699	12.0%
제주	3,977	3,679	92.5%	287	7.2%	11	0.3%
계	146,617	89,482	61.0%	40,657	27.7%	16,478	11.2%

2)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TNR)⁴⁶⁾

○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TNR)을 통해 길고양이 5만 2,178마리를 중성화(Neuter) 하였으며, 67억 9천만 원이 소요 됨

- 중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인 길고양이는 2017년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소요비용은 41.5% 증가함

4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7.



<그림 68> 길고양이 중성화 대상 현황

- 운영비용(억 원) : 2015년 31.4억 원 → 2016년 42.9억 원 → 2017년 48.0억 원 → 2018년 67.9억 원으로 증가함

[표 38]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운영비용

(단위 :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운영비용	31.4	42.9	48.0	67.9

3)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원 등 운영⁴⁷⁾

○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원은 375명으로,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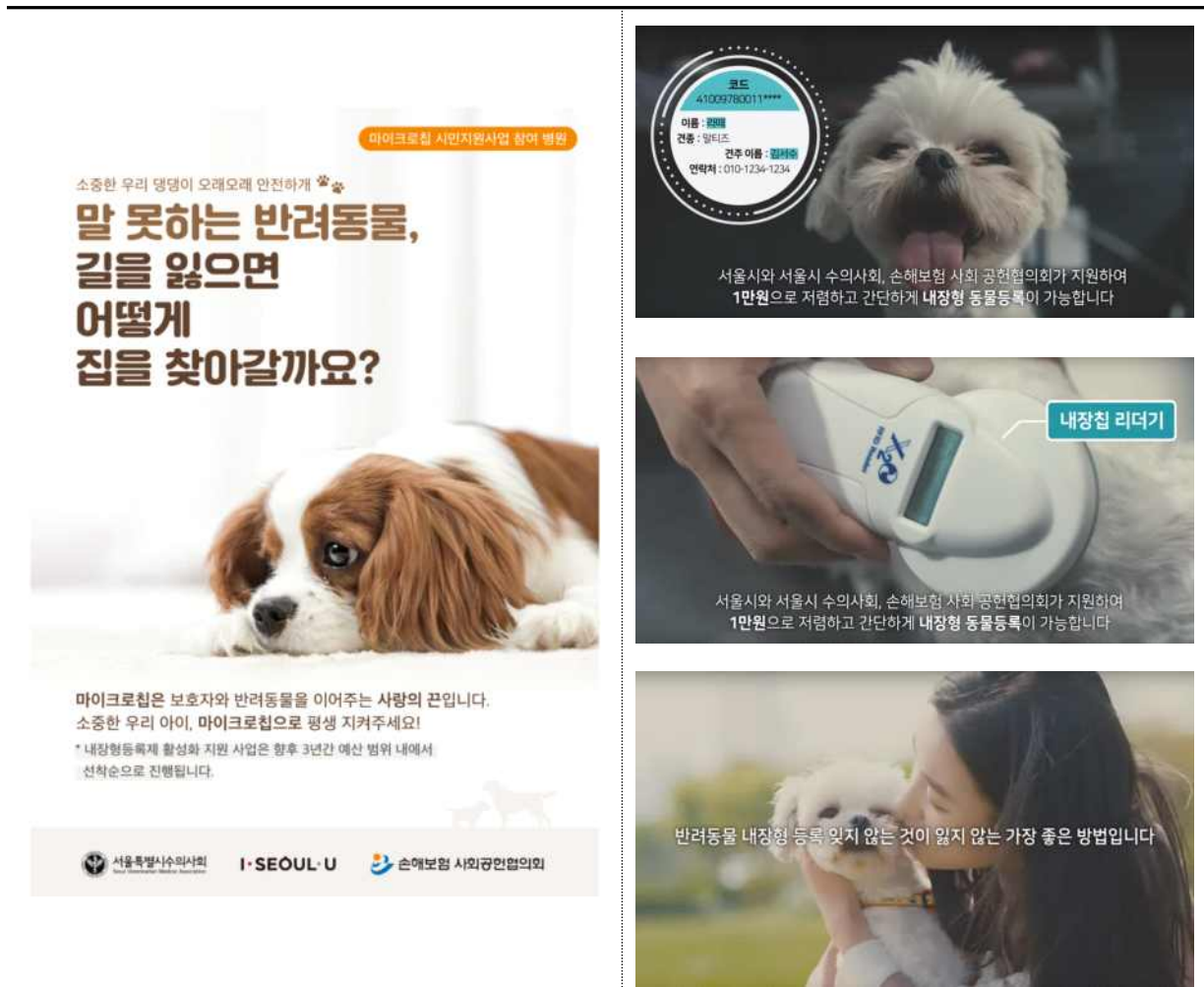
- 적발된 주요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임
-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며,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됨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제4항,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제1항, 제13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제1항,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허가),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인원은 351명으로 전년 대비 19.0% 증가하였고, 교육·홍보 및 감시원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3,390건으로 전년 대비 176.5% 증가함

4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7.

4) 내장형 등록제 활성화 지원사업⁴⁸⁾

- 서울시와 수의사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가 기존 4만~8만 원 정도 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자기부담금 1만 원만 지급하고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 캠페인'을 전개해옴
 - 서울시와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가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무상 제공한 내장 칩(마이크로칩) 4만 개가 전량 배부됨
 - '내장형 등록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동물병원이 늘어나면서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내장 칩 4만 개 배부가 끝났는데, 향후 추가 배부 없이 일부 병원에 남은 물량이 소진되면 올해 사업은 완전히 종료됨⁴⁹⁾
 - 내장형 등록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되며 2020년 사업을 위한 내장 칩 4만 개는 내년 1월 중 배부가 시작될 예정임



<그림 69> 내장형 등록제 활성화 지원사업

48) 서울시. 2019.7.

49) 서울시수의사회. 2019.7.

4. 국내 동물보호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의 시사점

가. 현행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실험,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영업 등 동물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 자치 시, 군, 구의 동물보호 조례에서 규정하여 관리함
- 「동물보호법」은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시설(환경)과 관리(동물복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4]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에서 일반과 개별기준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의 개별기준은 보호 관리(사육) 시설의 기준과 분뇨(배설물) 처리에 대한 사항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동물보호법」의 본질적인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제2항에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규정된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의 개별기준은 마항 제4조에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구체성이 부족하여, 분뇨발생량, 규모, 면적 등의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

2)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령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자치 시, 군, 구의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여 관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 2] 「신고대상 배출 시설」에서 개를 규제 대상 가축(동물)으로 규정하고, 사육면적 60m²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일부 동물보호시설은 60m² 이상 규제 대상의 범위에 있음

- 현재 유실·유기동물의 입소 및 출소, 질병과 분노 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한 동물보호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별표 4]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의 개별기준 사항 제4조에서만 유일하게 명시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 「악취방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령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악취방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은 검토 결과 대부분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2에서 악취 배출시설을 축산시설의 경우 개 60m², 그 밖의 가축은 500m²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육성을 위한 단순 집단 사육이 아닌 관리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시설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령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항의 [별표 1]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축사와 가축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시설은 규정되지 않아,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사설 동물보호소를 적법화하고 제도권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용 법률의 검토와 개정이 필요함

나.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 유실·유기동물 억제정책의 한계

○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Neuter) 지원사업, 지자체 동물보호 감시원 운영, 서울시의 내장형 등록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두수는 증가 추세여서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원인,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구조·보호에 따른 비용 지출과 길고양이 관련, 동물 분실 및 구조 요구 등 다양한 민원 증가로 인하여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5.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 현황

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⁵⁰⁾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 전국 289개(2018년 06월 기준) 동물보호시설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는 32개소(11.1%), 미신고는 237개소(82.0%)이며, 무응답이 20개소(6.9%)임

- 배출시설 신고 보호시설 중 직영 6개소, 위탁 23개소, 시설위탁 3개소로 나타났음

- 배출시설 미신고 보호시설 중에는 직영 26개소, 위탁 207개소, 시설위탁 4개소로 나타났음

[표 39]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2) 60㎡ 기준 면적 구분

○ 전국 289개의 동물보호시설 중 가축분뇨법 배출신고 기준인 60㎡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60㎡ 이상은 56개소(19.4%), 60㎡ 미만은 206개소(71.3%), 무응답은 27개소(9.3%)임

- 60㎡ 이상 동물보호시설 중 직영 17개소, 위탁 33개소, 시설위탁 5개소로 나타났음

- 60㎡ 미만 동물보호시설 중에는 직영 15개소, 위탁 190개소, 시설위탁 1개소로 나타났으며, 위탁 190개소는 대부분 동물병원으로 추정됨

[표 40] 사육면적 60㎡ 구분에 따른 분류



50) 내부 행정조사 자료, 2019.7.

3) 분뇨처리시설 보유 여부 및 처리방식

- 전국 289개의 동물보호시설 중 분뇨처리시설 보유 여부로는 보유하고 있는 곳이 51개소 (17.6%), 미보유 218개소(75.4%), 무응답은 20개소(6.9%)임
 - 분뇨처리시설 보유 동물보호시설 중 직영 14개소, 위탁 34개소, 시설위탁 3개소로 나타났음
 - 분뇨처리시설 미보유 동물보호시설 중에는 직영 18개소, 위탁 196개소, 시설위탁 4개소로 나타났음
- 처리방식으로는 자체처리와 위탁처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체처리는 대표적으로 퇴비화 처리가 있고, 위탁처리는 외부 분뇨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있음

[표 41] 분뇨처리시설 보유 여부 및 처리방식



4) 동물보호시설 분뇨 배출시설 현황조사 시사점

- 전국 289개 동물보호시설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는 직영 6개소, 위탁 23개소, 시설위탁 3개소로 분석됨
 - 이는 직영 동물보호시설 33개소 중 6개소 만 가축분뇨 배출신고를 한 것으로 나머지 27개소는 시설의 규모가 작음을 알 수 있어, 시설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배출시설 미신고 보호시설은 직영 26개소, 위탁 207개소, 시설위탁 4개소로 나타나 동물병원과 같은 위탁 동물보호시설 249개소 중 207개가 60m²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배출된 분뇨를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고 있어 가축분뇨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음
- 전국 289개의 동물보호시설 중 가축분뇨법 배출신고 기준인 60m²를 기준으로 60m² 이상 동물보호시설은 직영 17개소, 위탁 33개소, 시설위탁 5개소로 분석됨
 - 직영 33개소 중 17개소가 60m² 이상 배출신고 대상 동물보호시설로 나머지 16개소는 60m² 이하로 배출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직영 동물보호시설 배출신고 수가 6개소 만 신고되어 있어 나머지 11개소는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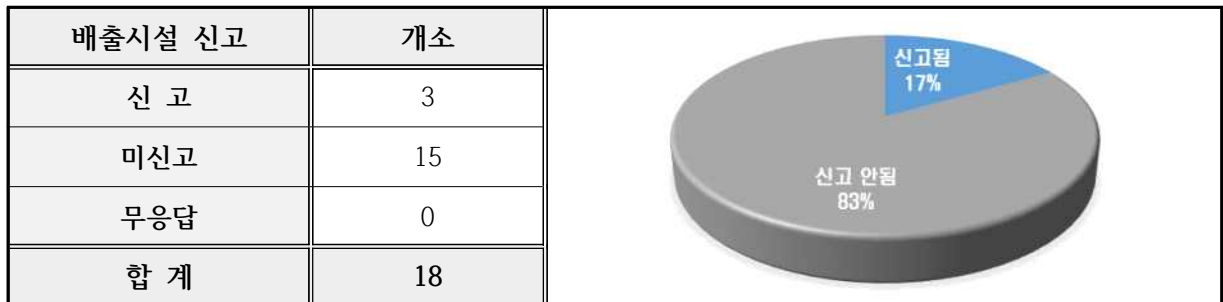
- 위탁 동물보호시설은 전체 249개소 중 60㎡ 미만 동물보호시설이 190개소로 조사되어, 대부분 동물병원으로 추정되며, 가축분뇨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음
- 전국 289개의 동물보호시설 중 분뇨처리시설 보유는 직영 14개소, 위탁 34개소, 시설위탁 3개소로 분석됨
 - 직영 동물보호시설 33개소 중 직영 14개소가 분뇨처리시설을 보유하고, 나머지 19개소는 미보유하여 분뇨 배출시설 신고 분석 결과와 같이 분석되어 시설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 동물보호시설 분뇨 배출시설 현황조사 결과 직영 동물보호시설의 규모가 작고,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법상 분뇨 배출시설 기준과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시설 분뇨 배출 기준을 마련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됨

나. 사설 동물보호소 분뇨 처리현황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 현장 실태조사 시 방문한 18개 사설 동물보호소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를 집계한 결과, 신고 3개소(16.7%), 미신고는 15개소(83.3%)이며 무응답은 없었음

[표 42]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2) 분뇨처리 방식

- 사설 동물보호소의 분뇨처리는 일반 종량제 봉투 처리가 5개소(26.3%)로 가장 많았으며, 분뇨저장조(또는 저장통)에 임시저장 후 정기적으로 위탁처리가 4개소(21.1%), 기타-매립이 3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사설 동물보호소 분뇨 배출시설 현황조사 시사점

- 사설 동물보호소 대부분이 가축분뇨법상 분뇨 배출시설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시설 분뇨 배출 기준을 마련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됨

제 2 절 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 현황

1. 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정책

가. 각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및 제정 시기⁵¹⁾

- 공식적인 각국의 동물보호 관련 법 및 제정 시기를 보면 영국이 1930년 개 관리 명령, 독일이 1933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보호 선진국이 됨

[표 43] 각국의 동물보호 관련 법 및 제정 시기

구 분	동물 관련 법률 및 규정
193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국 : 개관리명령('30) ◦ 독 일 : 동물보호법('33)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본 : 광견병예방법('50) ◦ 영 국 : 애완동물법('51), 개허가법('59)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국 : 동물유기금지법('60), 동물안락사금지법('64)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본 : 동물보호관리법('73)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 : 동물보호법('85)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 : 애완동물보호법('90) ◦ 대한민국 : 동물보호법('91) ◦ 영 국 : 위험개관리법('91), 개배설물수거법('96) ◦ 호주 캔버라 : 동물보호법('92), 시드니 : 반려동물법('96) ◦ 뉴질랜드 : 개관리법('96) ◦ 일 본 : 동물애호관리법('99)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국 : 동물보호법(2000) ◦ 독 일 : 동물보호명령('01), 위험개보유법('01) ◦ 호주 시드니 및 퀸즈랜드 : 동물보호법('01), 캔버라 : 가내동물법('02), 브리스번 : 동물법('03) ◦ 대한민국 : 동물보호법 개정공고('92.9., 농림부공고 제2002-101호) ◦ 일 본 : 가정동물사육보관기준('02)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9)

나.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령⁵²⁾ 및 규제사항

- 영국은 세계 80위 243,610km²의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GDP 약 3조 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며, 앞서가는 경제활동만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임
- 영국에서 1822년 제정된 '마틴법'은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임

51) 서울 시정개발연수원. 2019.3. 서울시 애완동물 관리실태와 외국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

52) UPI 뉴스. 강이석. 2018.8.

- 마틴 법은 ‘가축동물의 부당한 취급 방지를 위한 법률’로 동물의 학대 및 부당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법을 시작으로 영국은 동물보호 선두 국가가 됨
 - 1849년 동물 학대행위를 광범위하게 막고자 다시 동물 법을 제정했으며, 1876년에는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 학대방지법’을 통해 동물실험법의 윤리적 모델을 제시함
 - 영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의 토대는 1911년에 마련됐고 1951년 동물판매 규제, 1954년에는 동물에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마취를 규제하는 등 생명보호 규정까지 마련했음
 - 이후 영국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법안으로 발전했는데 이를테면 1973년 개 사육법, 1986년 동물실험에 관한 법, 1996년 야생동물 학대방지 규정, 1999년 개 사육 및 매매법 등이 그 예임
 - 특히 영국은 동물보호에 ‘관리의무’라는 조항을 통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동물보호가 의무’라는 내용까지 마련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동물을 기르는 권리를 박탈하고, 더불어 동물의 사육 의무와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의무의 위반 시 최고 1년(51주 이하)의 징역과 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동물보호의 5가지 원칙인 ‘갈증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라는 최소한의 동물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영국의 경우 강아지 등록세 및 동물등록제도를 1987년도에 폐지하였는데, 폐지 전에도 일회성 세금에 불과하였으며, 등록률도 50%에 불과하여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였음⁵³⁾
- 단, 2016년도부터 모든 개의 내장 칩(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이 동물 등록세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동물복지법의 필수조항으로 20~30파운드(만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내장 칩(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으면 500파운드(8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⁵⁴⁾

다. 독일의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

-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1933년에 제정된 <제국 동물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1972년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됨⁵⁵⁾
- 총 13장으로 구성된 이 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동물의 정의를 따로 정하지 않고, 고통을 느낄

53) 비마이펫. 2019.2. <https://mypetlife.co.kr/17844/>

54) 서울 연희실용전문학교. 2016.3. <https://syonhee.tistory.com/233>

55) 다음 백과. 2019.9.

수 있는 동물을 우선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은 동물의 동료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은 대표적으로 강아지 등록세를 내는 국가로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인 강아지 등록세를 폐지한 가운데, 여전히 등록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⁵⁶⁾
 - 강아지 등록세는 지자체별로 다른데, 베를린에서 첫 번째 강아지를 등록할 경우 연 120유로 (15만7,819원, 2019. 10. 기준, 1유로=1,315원)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두 번째 강아지부터 마리당 연 180유로(23만6,728원)의 세금을 내야 함
 - 누진세 성격을 보이기도 하는 동물 등록세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 개체 수를 관리하여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견종마다 내야 하는 세금도 다른데,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의 ‘동물 등록세’를 내야 함
- 등록한 경우 개에게 허가증(신분증)이 발급되고, 신분증을 달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을 때는 세금포탈죄가 적용됨

라.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

-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1966년 당시 애완동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실험실 동물복지법(Laboratory Animal Welfare Act)>에서 시작됨⁵⁷⁾
 - 1970년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동물복지법 (AWA)」으로 개정되었고 수 차례 개정되어 동물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옴
- 미국은 연방 국가로서 동물에 관해서도 관습 및 환경에 따라 동물의 보호·학대방지·복지 관계 법 등이 주별로 다양하지만, 크게는 연방 국가가 제정한 동물보호법인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AWA」과 「건강연구법 (Health Research Act), HRA」으로 구분됨
- 「동물복지법 (AWA)」은 1983년에 미국농무성이 제정하였으며,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⁵⁸⁾
 -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온혈동물, 교육 및 실험용의 모든 동물에 대하여 동물 사용기관을 연 1회 불시 순찰하여 동물 학대, 비양심적인 동물생산, 불법 유통 판매자 검거 등을 감독하고 있음

56) 비마이펫. 2019.2. <https://mypetlife.co.kr/17844/>

57) 지인배(2019). 세계농업 식품 동향 4월호

58) UPI 뉴스, 강이석(2018)

- 「건강연구법」은 동물의 실험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모든 척추동물에 대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 여러 동물단체의 활동으로 미국 내 80% 이상 기관들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주마다 다양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보호 측면을 강화하고 있어 반려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있음⁵⁹⁾
 -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기도 함
 - 동물 학대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이외에 치료목적의 심리 상담이나 교육을 추가 적으로 명령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 국가인 만큼 주마다 강아지 등록세에 대한 제도가 다름
 - 뉴욕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연 \$8.5(약 1만 원)에서 \$34(약 4만 원)의 등록세를 내야 함
 -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중성화(Neuter)하지 않으면 \$34.5를 내야 하지만, 중성화(Neuter)한 경우 \$8.5를 내면 된다는 점인데, 중성화하지 않으면 4배 이상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이유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체 수를 관리하여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구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킴⁶⁰⁾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AB485'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하고 사육하는 애완동물 가게 등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할 시 500달러 (한화 약 5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애완동물 가게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키워진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없음 (다만, 주인끼리 1대 1로 하는 소규모 입양절차는 규제하지 않음)
 - 동물구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애완동물 가게 등을 "고양이 공장" 혹은 "강아지 농장"으로 부르며 동물권 침해에 규제를 촉구해왔으며, 애완동물 가게 등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장기적인 감정적, 신체적 상처를 남긴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7년 말 처음 발의된 이번 법안은 앞으로 판매되는 동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키워지고

59) 김지현(2018)

60) BBC 뉴스코리아. 2018.12. '반려동물: 유기동물만 입양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주 펫샵 입양 금지'

있는지 감시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으나, 일부 애완동물 가게 관계자들은 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음

- 미국에서 가장 큰 동물보호단체 중의 하나인 ASPCA(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에 따르면 매년 650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하지만, 150만 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음

마.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법⁶¹⁾ 및 규제사항

- 일본은 한국과 같이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해왔으며, 그 안에서 동물의 사육 및 보호에 대해서는 산업 동물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됨
 - 1970년대에 들어서 핵가족화, 고령화가 진전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 산업 동물이 아닌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람과 공생할 수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이나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1973년 9월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보호 관리법」)이 제정⁶²⁾됨
 -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 애호 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 법은 모든 동물의 적절한 사육을 규정하는 등 동물사육 등에서 기초법이 되었으며, 이후 이를 기초로 한 「동물 사료법」, 「광견병 예방법」 등 동물사육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동물보호 관리법」은 동물의 학대 금지를 벌칙 규정으로 두는 한정적인 보호조치의 시행과 동물의 적절한 사육에 관한 사육자의 책무 노력 명시 등 동물보호를 위한 행위규범으로써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 때문에 법률 제정 직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동물 애호 단체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관리법」의 개정 요구가 있음
- 「동물보호 관리법」 제정 이후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육자와 미사육자 간의 의식차 등에 기인하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도 표면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야생동물의 애완 동물화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의 사육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조치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1999년 「동물 애호 관리법」이 개정됨

61) 신동철(2019). 세계농업 식품 동향 5월호

62) 동물보호 관리법의 시행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2000년부터 시행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명칭 변경과 사육자 책임의 강화, 그리고 동물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추가됨
 - 개정 전, 제1조의 목적에서 ‘보호’와 ‘애호’를 나누어서 명시하였으나, 동물에 대한 실제적 행위를 ‘보호’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애호’의 의미와 해석이 모호해짐
 - ‘애호’라는 용어에는 적절하게 사육하는 등의 실제적인 행위에 대한 이념과 내용이 내포되어, 1999년의 개정에서는 ‘보호’를 ‘애호’로 바꾸어 동물의 ‘애호’의 개념과 내용을 명확히 했음
 - 개정 전, 법률상 사육자의 책임은 첫째,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제5조 제1항), 둘째, 동물에 의한 사람에의 위해 방지(제5조 제2항), 셋째, 동물의 사육 등에서 사람에의 위해 방지(제5조 제3항)로 규정되어 있음
 - 사육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 판매자에게 있어 동물 구매자에 대한 적정 사육방법 등의 설명 책임을 명기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됨 (제6조)
 - 동물 취급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추가되었는데, 사업장마다 해당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시설의 현장조사나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었음 (자세한 규정은 법률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고,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 위임됨)
 - 그 밖에 개정법에서는 동물의 살상을 포함한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을 벌금 3만 엔 이하에서, 살상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1엔=1120원, 2019. 10. 기준), 1,118만 9,400원 이하의 벌금, 사육방치 등의 학대나 유기에 대해서는 30만 엔(1엔=1120원, 2019. 10. 기준), 335만 6,82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등 대폭 강화함
 - 「동물 애호 관리법」은 법률 제정 당시에는 총리부 소관이었으나, 개정 직후 내각부로, 현재는 환경성으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음
- 「동물 애호 관리법」은 개정 전의 「동물보호 관리법」보다 매우 엄격해졌으나, 당시는 더욱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임
 - 이에 부칙으로 시행 5년 후 법률의 시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2005년 6월에 「동물 애호 관리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짐
- 개정된 「동물 애호 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기본지침과 추진계획의 수립, 「동물 취급업자의 등록제」 도입, 개체식별 조치 및 특정 동물의 사육 등 규제의 전국 일원화, 처벌의 강화임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성 장관이 기본지침(2006

년 10월 31일 공표)을 정하고, 도도부현은 이 기본지침에 맞게 동물 애호 관리 추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체제는 향후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주도적인 추진계획 설정이 가능해짐

- 동물 취급 업의 적정화 대책으로서, 「동물 취급업자의 등록제」가 도입되었는데 동물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도덕한 업자에 대해서 등록 및 갱신의 거부·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명령 조치가 마련됨
- 사람의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정 동물에 대해서 마이크로칩 등의 개체 식별조치가 의무화되었고, 특정 동물에 의한 위해방지에 더 확실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사육 또는 보관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국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게 됨
- 또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었는데, 애호 동물에 대한 학대나 유기의 벌금이 30만 엔 이하에서 50만 엔(1엔=1120원, 2019. 10. 기준), 559만4,700 원 이하로 올라갔으며, 그 외에도 특정 동물의 사육 허가제나 실험동물의 복지향상, 학교·지역·가정에서의 동물 애호 관리의 교육 및 홍보 추진 등도 새롭게 포함됨

바. 스위스의 반려동물 관련 법 및 규제사항

-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는 일찍이 1893년 연방헌법에 도살금지규정을 도입했음⁶³⁾
 - 또한, 형법 제264조로 동물학대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동물보호법으로 편입됨
 - <동물보호법>은 1978년 제정되었으며,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22조에는 동물 학대 금지목록이 명시되어 있음
 - 일반적인 학대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 잔혹함을 시험하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 동물이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한 데에도 동물을 전시나 홍보, 촬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개의 귀를 자르거나 성대 수술을 시키는 등을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음
- 스위스에서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애견학교에서 반려견 기본정보를 습득하고, 필기시험과 함께 반드시 4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료해야 함⁶⁴⁾
 - 1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취리히 동물보호협회가 있는데, 경찰, 수의사들이 모여 함께 애완견과 동물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63) 다음 백과. 2019.9.

64) UPI 뉴스, 강이석. 2018.9.

- 또한, 정부 차원에서 동물변호사를 독려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이며, 이를 반영하듯 스위스는 모든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 약 13개 사항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세세하게 법률로 정하고 있음
- 반려견뿐만 아니라 돼지, 가금 류, 고양이 심지어는 물고기의 권리까지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데, 160페이지에 달하는 동물보호법에는 말과 소의 경우 축사 밖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시켜 줘야 하며, 돼지, 금붕어 및 기타 반려동물들을 홀로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 해외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 현황

가. 해외 애완(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시설 분뇨처리 현황

- 개 배설물의 생성 및 관리와 관련된 문제와 환경오염이 간과되고 있으며, 놀랍게도 개 배설물 관리와 관련된 검증된 자료는 비교적 적음 (Okoroigwe et al., 2014; Okin, 2017)
 - 평균적으로 개는 하루에 0.34kg (0.75 파운드)의 배설물을 발생시킴 (Taylor 2004)
 - 미국에서 개는 매년 1,600만 톤의 폐기물(분뇨)이 발생 됨 (Stevens & Hussmann, 2017)
 - 유럽에는 연간 약 430만 톤의 고형 분뇨가 발생하고, 약 4,400만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FAAC, 2018)
 - 스페인의 통계조사에서 약 540만 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으며, 건조 중량 기준으로 연간 100~200,000 톤의 고형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캐나다의 퀘벡에서는 주민의 23%가 개를 한 마리 이상 사육하고(Leger Marketing 2002), 1,742,728마리의 개가 태어나고, 몬트리올 섬에서만 432,000마리가 태어나(Institut de la statistique Québec 2005a, b), 몬트리올에서만 매일 약 146,860kg의 분뇨를 처리해야 함

○ 해외 애완(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시설 분뇨 처리방식

[표 44] 해외 애완동물 발생 분뇨 처리방식

구분	분뇨 수거 방법 및 주체		처리방법 및 주체	
미국	비닐봉지 담아 일반 수거 용기 투입	견주 또는 수거업체	매립지에 매립	관할 자치단체
캐나다	비닐봉지 담아 일반 수거 용기 투입		매립지에 매립	
스페인	비닐봉지 담아 일반 수거 용기 투입		매립지에 매립	
호주	비닐봉지 담아 전용 수거 용기 투입		매립지에 매립	

-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애완(반려)동물 선진국 대부분이 애완(반려)견 발생 분뇨에 대하여 도시 폐기물로 간주하여 견주 또는 수거 업체가 비닐봉지에 담아 일반 쓰레기 수거 용기 또는 전용 수거 용기에 투입하고, 수거 차량을 통해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호주는 9세기 도시의 도시 가축 감소로 인해 가정용 애완(반려)동물이 증가(Olson and Hulser, 2003)하고, 호주 가구의 40%가 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애완(반려)동물 소유 비율 중 하나임(호주 동반자 동물 협의회, 2010)

-
- 호주는 공공장소의 애완(반려)동물 분뇨의 수거를 위해, 크기, 실링 메커니즘, 색상, 포장 등의 다양한 전문 폐기물 봉투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재료 소비를 발생시켰으며, 분변이 담긴 전문 비닐봉지는 전용 수거 용기에 처리되어 매립지에 매립됨⁶⁵⁾



<그림 70>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의 개 분변 비닐봉지로 넘치는 수거용기

- 호주는 애완(반려)견의 분뇨를 매립지에 매립하는 공공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 해결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닐봉지에 대한 처리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음

○ 해외 애완(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시설 분뇨처리의 문제점

- 개의 분뇨로 인한 폐기물 증가는 도시지역의 건강 및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분뇨와 같은 폐기물은 많은 박테리아와 병원체의 운반체이기 때문임(Okoroigwe et al., 2014)
- 미국 7,000개 이상의 지자체가 빗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교육 캠페인을 추진해야 하며 (Herbert, personal communication, 2011), 미국 수로의 많은 박테리아와 영양 오염원은 개 폐기물(분뇨) 임(Schueler, 1999)
- 현지 하천과 호수로 고형 폐기물(분변)과 영양소뿐만 아니라 대장균, 살모넬라균,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다양한 장내 벌레와 기생충을 포함한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개와 포유류에게 전염되는 것이 문제임
- 해외의 선진국 대부분이 애완(반려)견 발생 분뇨를 비닐봉지에 담아 수거 용기에 투입 후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는데, 발생 분뇨를 담는 비닐봉지에 대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함

65) Dog Waste, Wasted Dogs: The Contribution of Human-Dog Relations to the Political Ecology of Australian Urban Space. 뉴저지주 뉴캐슬 대학교 환경 생명 과학 대학 도시와 지역 연구 센터, NSW 2308, 호주. 2013.

- 이에 따라 분해율이 낮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분해성 재질의 비닐 봉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해외의 애완(반려)동물 발생 분뇨에 관한 재활용 연구

- 애완(반려)견의 분뇨로 인한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및 처리가 필요한데,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다량의 영양소가 개 배설물(분뇨)에 포함되어 있어 퇴비화 또는 혐기성 소화를 통한 연구가 활발해짐
-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애완(반려)견의 분뇨를 활용한 퇴비화와 바이오 에너지화(혐기성 소화, 바이오가스)에 관한 연구와 실험이 시행됨

○ 스페인의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교에서 연구 등에서 연구한 개 배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 퇴비와 혐기성 소화에 대한 실험⁶⁶⁾을 조사함

- 실험의 목표는 퇴비화와 혐기성 소화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생물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개 배설물을 관리하고 재활용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임
- 실험 설계 : 공동 퇴비화 및 혐기성 소화 실험에 사용된 유기 폐기물은 공동 기질, 도시 고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 및 전지목(도시 가지치기 폐기물)과 혼합된 개 배설물 폐기물임
: 개 배설물 - 오리후엘라(스페인 알리 칸테)에 소재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수집함
: 도시 고품폐기물 - 칼리콜라(스페인 발렌시아) 발생 폐기물 중 수집한 선택적 수거물임
: 전지목 - 오리후엘라시(스페인 알리 칸테)의 도시 원예 가지치기 후 발생한 식물 폐기물임
- 퇴비화 실험 과정 : 실험 1은 듀어 용기(이중벽 사이가 진공으로 된 플라스크)를 사용한 자가 가열 시험, 실험 2는 실험실 규모의 퇴비화, 실험 3은 상업적 규모 퇴비화 실험
- 퇴비화 실험 결과 : 퇴비화 과정의 최적화를 통해 얻은 열에 대한 유효한 자료와 식물 독성의 부재, 비료(퇴비)의 가치는 개 배설물, 도시 고품폐기물, 전지 목의 적절한 혼합물 사용이 퇴비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나타냄
- 개 배설물의 높은 염도를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을 상업적 규모의 실험에서 발견함
- 퇴비화 시스템에서 발견된 중요한 질소(N)의 손실은 퇴비혼합물에서 더 높은 비율의 증량제를 사용해야 함을 확인함
- 혐기성 소화 실험 과정 : 실험 1은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 실험 2는 혐기성 공동소화, 바이오

66) 스페인(2018) 「Comprehensive management of dog faeces: Composting versus anaerobic digestion」 ANFAAC, 2018. Asociación nacional de fabricantes de alimentos para animales de compañía : Censo de mascotas. <http://www.anfaac.org/macromagnitudes-del-sector>

메탄화로 진행

- 혐기성 소화 실험 결과 : 단일 성분(개 배설물) 바이오 메탄 분석 실험 1에서 229mL/g, 총 고형물(TS)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됨
- 혼합 성분 바이오 메탄 분석 실험 2에서는 도시 고형폐기물의 혼합물 2항목이 가장 높은값(각 279 및 291mL/g TS)을 보이고, 전지 목의 혼합물 2항목이 메탄(CH₄)의 가장 높은 백분율 값(각각 78.6 % 및 79.2 %)을 보여, 바이오 가스화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함

○ 스페인의 종합적인 개 배설물 관리 : 퇴비와 혐기성 소화에 대한 최종 실험 결과

- 도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대규모 개 폐기물(분뇨) 퇴비화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도시 매립지에 유입되는 고체 유기 폐기물의 양을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함
-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결과는 개 배설물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또는 "옥소" 분해성 폴리에틸렌 봉지 대신에 퇴비화가 가능한 분해성 물질의 봉지를 사용하여 개 배설물 관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견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함
- 개 배설물(분뇨)은 일반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식물성 물질과 이 폐기물의 혼합물이 바이오가스를 생성할 가능성을 가축 폐기물(분뇨)과 같은 값으로 높힐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도시 환경에서 개 배설물(분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한 통합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함

○ 애완(반려)견 분뇨(배설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은 건강 신념 모델(HBM, 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애완(반려)동물 폐기물(분뇨)과 같은 우수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봉사 활동 캠페인을 개발⁶⁷⁾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건강 신념 모델(HBM, Health Belief Model)은 변화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 방송 및 전달자가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함(Andreasen, 1995; Rosenstock & Kirscht, 1974)
- 건강 신념 모델(HBM, Health Belief Model)은 인식된 위협 : 애완(반려)동물 폐기물(분뇨)을 수거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인식된 혜택

67)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2014) 「Managing Dog Waste: Campaign Insights From the Health Belief Model」

: 애완(반려)동물 폐기물(분뇨)을 수거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인식되는 혜택을 발생시킴, 지각된 장벽 : 장벽은 애완동물 폐기물 수집을 방지하는 것으로 인식됨, 행동의 신호 : 메시지, 메신저 및 미디어는 애완동물 폐기물 수거 행동에 대해 개인에게 신호를 주는 데 가장 효과적임을 바탕으로 대표적 구성을 확인함

- 건강 신념 모델(HBM, Health Belief Model) 적용 결과를 통해 길거리와 산책로를 위한 두 가지 애완(반려)동물 폐기물(분뇨) 감소 캠페인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길거리 캠페인은 수거 용기와 함께 고정식 봉투 공급기와 애완(반려)동물의 분뇨를 수거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작은 표지판을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산책로 캠페인에는 산책로에 큰 표시가 있고 애완(반려)견의 견주를 위한 휴대용 비닐봉지 공급기가 있어야 함
- 표지판에는 애완(반려)견의 견주에게 분뇨를 비용을 지불 하지 않고 수거할 수 있는 이점과 이를 이웃에게 확대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함
- 단순히 애완(반려)동물 폐기물(분뇨)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행동을 촉구하지 않는 비싼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및 인쇄 광고를 절약 할 수 있음
- 미국 매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연간 16,964,640kg의 애완(반려)동물 폐기물(분뇨)이 발생하고, 150,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 분뇨 중 60% 만이 매립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20,412kg의 분뇨가 하수로 유입되고 있음
- 이에 매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 교육청은 간판과 전단 같은 전통적인 캠페인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과 취학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참여시키는 게임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시행함
- 게임 방식으로 어린애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학교에서 “**A bean bag pooper scooper game**”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적절한 용기(bean bag)에 개 배설물을 넣어 폐기물 장소에 “개 폐기물”을 쌓아 점수를 얻도록 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됨



<그림 71>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bean bag pooper scooper game

- 프린스 조지 카운티가 취한 또 다른 혁신적인 접근법은 2017년, 2018년에 애완(반려)동물 폐기물 정상 회담(Pet Waste Summits)을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 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75명 이상의 인원을 초청함
- 프린스 조지 카운티 교육청은 메릴랜드 대학교의 환경 금융 센터 및 변화를 위한 사람들과 협약을 맺고 빗물 관리 수수료 자금으로 소규모 폐기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애완동물 폐기물 발생 장소와 지역 사회에 표지판을 제공함



<그림 72>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개 분뇨 관련 표지판

- 프린스 조지 카운티 교육청은 지금까지 86개의 표지판을 지역 사회에 제공했으며 2019년까지 146개를 배치할 계획이며, 개 공원과 대규모 지역 사회에서 개 폐기물 오염의 영향을 줄이려면 카운티 기관 및 지역 사회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접적이고 활기찬 접근 방식을 취함

○ 해외 애완(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시설 분뇨처리 현황조사 시사점

-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의 주요 관점은 애완(반려)견 발생 분뇨에 대한 적정 수거 시스템과 수거 시 사용하는 일반 비닐봉지를 분해성 비닐 봉지로 대체하여 퇴비화 또는 바이오 가스(에너지)화로 활용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배출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 교육 및 홍보하고 있음
- 해외 국가의 경우 애완(반려)동물이 많아 산책 등 운동을 위한 공원 수가 증가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빗물 등으로 인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과 다른 개와 포유류에 대한 전염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

- 한국도 애완(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질병 관련 위생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적정 배출 방법, 수거 시스템,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그림 73> 나이지리아 대학의 실험에 사용된 바이오 소화기(Bio digester, 프로토타입)

- 공원 등에 소형의 바이오 소화기 설치 등,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에 애완(반려)견 분뇨 전용 수거 용기를 배치하고, 분해성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등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해외 애완(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시설 분뇨처리 현황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배출 방법, 수거 시스템, 퇴비화, 바이오 가스화 등 재활용 시스템, 그리고, 수거 시 분해성 비닐봉지 사용 등을 반영하여 애완(반려)동물에 대한 분뇨처리(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제5장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

제1절 분뇨처리 기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

제2절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 수립의
기본 원칙

제3절 지자체 동물보호시설 관리방안

제 5 장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

제 1 절 분뇨처리 기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

1. 동물보호시설의 분류

가. 운영 주체별 분류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위탁 동물보호센터,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로 분류됨
-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3가지 분류)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자료에서 공식 분류하고 있음
 - ⊙ 공공(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 직접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관련 부서가 관리함
 - ⊙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 (2가지 분류)
 - : 시설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
 - :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자가/임대)하는 형태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중략)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의 명세서 (중략)
-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 사설 동물보호소 (2가지 분류)
 -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 (자가/임대)
 - :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물권 단체 등과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 (자가/임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p>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시설 및 관리기준 방안

가. 동물보호시설 가축분뇨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규모별 유형 검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에 근거하여 규모별 유형을 분류하고자 개 사육시설의 면적 규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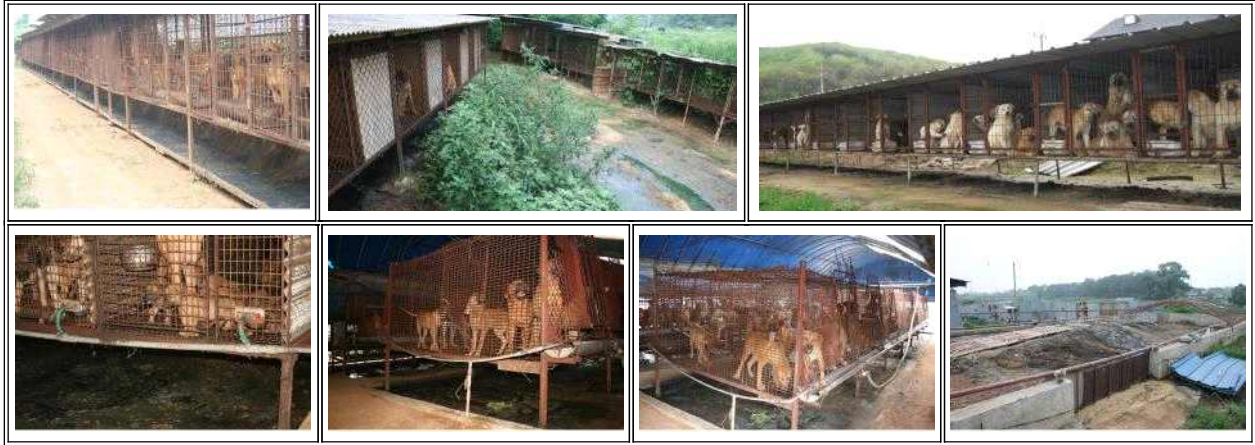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3.24.> [별표 2] 신고 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개 사육시설	면적 60m ² 이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개 사육시설은 면적 60m² 이상일 때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07. 09. 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포함함⁶⁸⁾
 - 면적 60m²(약 80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08.0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09.09.27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 개 사육 농가는 2005년 12월 말 기준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68) 환경부. 2018. 「방치된 “개” 사육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보도자료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80마리 이상)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함

사육 규모	계	1~10마리	11~40마리	41~80마리	80마리 이상
마릿수	2,310,972	1,140,917	250,181	152,510	767,364



- 신고대상 기준을 80마리 이상으로 하고, 개 사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육면적 규모를 60㎡(약 80마리)로 규정함 (0.75㎡/마리, 4.4마리/평[3.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 사육시설의 면적 60㎡(약 80마리) 이상을 근거로 동물보호시설의 배출시설 신고대상 기준을 검토함

- 다양한 품종과 체중의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의 체중과 분변량을 조사하여 기준 산정에 반영함

○ 대·중·소형견의 평균 체중 산정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 (제15조 제1항 관련)을 검토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제15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중략)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 50 × 70 × 60(cm) (이하 생략)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서는 소형견은 5kg 미만, 중형견은 5kg 이상 15kg 미만, 대형견을 15kg 이상으로 중량 단위로 크기를 규정하고 있음

○ 대·중·소형견 평균 체중과 분변 발생량 산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의 대·중·소형견 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량 단위를 기준으로 평균 체중을 산정함 (대형견 15kg, 중형견 10kg, 소형견 2.5kg)

- 분변 발생량은 대형견과 소형견 실험 결과를 적용하고, 중형견은 실험 결과를 유추하여 반영함 (대형견 8.9g/kg/일, 중형견 8.9g/kg/일, 소형견 8.9g/kg/일)

- 분변 발생량 산출 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산정한 분변 발생량에, 크기별 평균 체중을 곱하여 대형견 134g, 중형견 89g, 소형견 22g을 분변 발생량 동물 단위 기준으로 산정함
: 대형견 $15 \times 8.9 = 133.5 \rightarrow 134g$, 중형견 $10 \times 8.9 = 89g$, 소형견 $2.5 \times 8.9 = 22.3g \rightarrow 22g$ (소수점 이하 절삭)

○ 대·중·소형견 분변 발생량 동물 단위 (Animal Unit/Feces, AUf)의 기준의 산정 및 적용

- 대형견 1AUf = 134g을 기준으로 중형견 0.67AUf = 89g, 소형견 0.17AUf = 22g으로 계산됨

- 최종 동물 단위는 대형견 1AUf, 중형견 0.7AUf, 소형견 0.2AUf로 산정 (소수점 이하 절삭)

개의 1일 분변 발생량 산정 근거 및 산출 결과 (기초 자료 데이터 별도 붙임)

1. 대형견 분변(생분) 발생량 산출 실험⁶⁹⁾

- 저먼 셰퍼드 성견 9마리 시험 대상으로 공시 (9마리 × 2 반복)
- 실험 결과, 평균 체중 31.03kg 대형견의 1일 분변 발생량은 275.5g이며, 체중 1kg 당 일 분변 발생량은 8.879g/kg/일로 조사됨

2. 소형견 분(생분) 발생량 산출 실험⁷⁰⁾

- 말티즈, 포메라니안, 요크셔테리어, 푸들, 닥스훈트의 성견 10마리 시험 대상으로 공시
- 실험 결과, 평균 체중 4.24kg 소형견의 1일 분변 발생량은 36.1g이며, 체중 1kg당 1일 분변 발생량은 8.886g/kg/일로 조사됨

○ 동물보호시설의 대·중·소형견 분포도 조사를 위해 설문 조사 56개소 자료를 검토함

[표 45] 설문 조사 동물보호시설 평균 대·중·소형견 보호 관리 비율

구분	관리 두수	비율 (%)
소형견	55	47
중형견	35	30
대형견	28	23
계	118	100

69) 농촌진흥청. 2013. 탐지견 사료 개발을 위한 분뇨 데이터

70) 건국대학교. 2019. 환경학실험실 제공자료

- 설문 조사 동물보호시설은 평균 대형견은 23%, 중형견은 30%, 소형견은 47%의 비율로 보호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 사육시설의 면적 60㎡, 약 80마리는 개 사육시설(동물생산업 시설)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바 대부분 품종이 대형견임

- 따라서, 60㎡, 80마리 = 80AUf로 동물보호시설 기준 산정에 적용하고, 산정된 동물 단위 80AUf를 1AUf = 134g/일을 적용하여 분변 발생량을 추정함

[표 46] 산정된 80AUf 기준 분변 발생량 추정

구분	동물 단위(AUf)	총 AUf	발생량(g)/일	발생량(kg)/월
소형견	0.2	80	10,733	322
중형견	0.7			
대형견	1			
계		80	10,733	322

- 추정 결과 80AUf일 때 10.8kg/일(10,773g/일), 322kg/월의 분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나.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마련

○ 유기동물 보호 마릿수 등을 고려한 분뇨처리 기준마련

[표 47] 「가축분뇨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배출시설의 종류	관리기준 분류		비고
개 사육시설	면적 60㎡ 미만	신고 미만	개
	면적 60㎡ 이상	신고	개
	축종별 규모 기준	허가	돼지, 소, 젓소, 말,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대상

- 현행 「가축분뇨법」 상 60㎡² 이상의 개 사육 농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실질적인 현장관리 시 효율적 적용(322-> 300kg) 등을 고려하여 분변 발생량 동물 단위 80AUf, 300kg/월 이상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함

[표 48]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0] 신고대상 배출시설 기준(안)

배출시설의 종류	관리기준 분류		비고
동물보호시설	80AUf 미만 또는 300kg/월 미만	신고미만	신고 의무화 (100%)
	80AUf 이상, 300kg/월 이상	신고	처리장치 등 배치

- 사설 동물보호소를 포함한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사업자)를 의무화하고, 사설 동물보호소는 장기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타 법령 준수 등의 허가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공 동물보호센터나 사설 동물보호소로 신고(사업자)한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명시함
 - 배출신고 미만(80AUF 미만, 300kg/월 미만) 범위에 해당하는 동물보호시설은 발생 분뇨를 「폐기물 관리법」의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거나 「하수도법」상 분뇨로 간주하여 하수도(수거식 화장식 -> 정화조 시설) 등으로 연계처리하도록 하고, 배출신고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감량장치(기기) 처리 후 처리 부산물이 300kg/월 미만일때는 생활 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배출신고 미만 범위의 동물보호시설 발생 분뇨를 일반 변기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현재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 처리능도가 높아짐으로 인한 부하가중이 문제가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 법의 개정과 처리비용 징수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배출신고 범위의 동물보호시설은 발생 분뇨처리를 위해 (가칭)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저장 용기, 처리장치 및 시설(퇴비화) 등을 현장에 설치하고, 해당 지자체(시, 도)에 신고 후, 지자체는 발생 분뇨처리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지 평가 후 등록·관리하도록 함
 - 현행 「가축분뇨법」의 규정과 같이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업체 등에 분뇨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전용 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 동물보호시설의 분뇨 저장 용기에 관한 기준을 검토함
- 동물보호시설 발생 분뇨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저장 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전용 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을 검토하였으며, 신고기준의 동물보호시설이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합성수지류 용기를 대상으로 하여 구조·규격·품질 등을 규정함
 -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임시저장 보관하는 용기의 특성상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전용 용기보다는 한정된 종류이고, 구조가 간단함
 - 배출시설 신고 미만의 동물보호시설이더라도 분뇨의 특성상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위생 안전(야생동물로 인한 훼손, 우수 등으로 인한 질병 매개 원으로 작동)을 위하여 생활 폐기물로 처리 시 종량제 봉투를 임시저장 용기에 보관 후 처리를 권고함

동물보호시설의 분뇨 저장 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등에 관한 기준

1. 종류: 상자형 용기로 합성수지류 용기로 한다.
2. 구조
 - 가. 합성수지류 용기는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로, 용기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한다.
3. 규격
 - 가. 합성수지류 용기의 두께는 1mm 이상이어야 하며, 저장 용기의 실제 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품질
 - 가.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에 흙, 갈라짐,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 되어야 하고,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5. 그 밖에 저장 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기초로 하여 가칭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검토함

- 배출신고 범위 이상의 동물보호시설 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마련을 위하여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으나, 본질이 같은 물질인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므로 일부 감량 장치(기기) 등의 처리장치를 제외하고는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

(가칭)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장치 및 시설 설치기준

1. 공통 기준

- 가. 감량 장치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건조 등으로 인한 처리조건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동물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동물분뇨 및 생산된 퇴비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동물분뇨 및 퇴비가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 가림 시설이나 유출 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물보호 관리 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물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분뇨 유출 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동물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스컴·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바.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사. 동물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 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아. 가스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 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 동물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감량 장치(기기)

-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동물분뇨가 월 300kg 이상이면 건조 등을 통해 감량할 수 있는 감량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감량 장치는 처리 부산물을 재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 나. 감량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감량된 처리 부산물을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처리 부산물 저장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저장용기는 처리 부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동물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퇴비화 시설

-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동물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동물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칭)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는 신고 범위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저장 용기 사용 및 감량 장치(기기)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동물보호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량 장치(기기)의 일반 조건을 검토함

동물분뇨 감량 장치(기기)의 일반 조건

1. 감량률이 높아야 함
2. 처리 부산물이 재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방식이어야 함
3.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합리적인 제거방식을 확보하여야 함
4. 자동종료(상태전환) 기능 등의 적용으로 소비전력이 합리적이어야 함
5. 건조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리조건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함
6. 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
7.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감량화 처리방식이어야 함

- 동물보호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량 장치(기기)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동물분뇨를 발효·건조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장치로 정의함

동물분뇨 감량 장치(기기)의 사용 가능 종류		
		
건조기	발효건조기	

- 동물보호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량 장치는 건조기, 발효건조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현재 일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 감량 장치는 소화 및 발효되지 않은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건조하는 장치로 기술적인 완성도가 검증되어 이미 1차 소화(발효)된 동물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 감량 장치 중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발효건조기에 대하여 일부 예시를 통하여 발효건조기의 원리 및 규격과 가격, 장치 유지 비용 등을 검토함

-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미생물 및 담채 투입) -> 교환/발효/건조 -> 배출 -> 10일 후 배출(30L 기준) -> 비료/사료 활용



- 발효건조기(하이 브리드 발효방식)의 사양 예시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발효 건조)장치 사양 예시 1 (다량배출사업장용)			
용량	30L/1일	적용방식	미생물 발효형식
규격(MM)	500 X 700 X 950	전기요금	20,000~22,000원 (월 평균)
소비전력	0.2Kw(월 0.2Kw x 24H x 30Day = 144Kwh/월)		
감량율	99.7% 발효분해	가격	6,500,000원 내외
침출수	없음	배출	10일 (30L 투입 기준)
탈취장치	있음	잔존물 활용	사료, 퇴비로 활용 가능

- 동물보호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용 감량 장치(기기)의 전력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30일 사용 기준으로 산정 검토하였는데, 단일 세대 기준 실제 사용량은 16,975원/월이며, 기본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 적용 시 20,720원/월 사용량 요금이 확인됨

감량(발효건조)장치 전력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예시 1

144Kwh (세대사용량) + 65Kwh (세대공용사용량) = 209Kwh (세대별 총사용량) 에 대한 비교분석(종합/단일)

종합계약(저압)	단일계약(고압)
기본요금 (원미만절사) : 910원	기본요금 (원미만절사) : 1,260원
사용량요금(원미만절사) : 11,609원	사용량요금(원미만절사) : 16,975원
- 1단계 : 100kWh * 60.7원 = 6,070.00원 - 2단계 : 44kWh * 125.9원 = 5,539.60원 총계: 144kwh 11,609원	- 1단계 : 100kWh * 57.6원 = 5,760.00원 - 2단계 : 100kWh * 98.9원 = 9,890.00원 - 3단계 : 9kWh * 147.3원 = 1,325.70원 총계: 209kwh 16,975원
사용량요금 (원미만절사) : 910원 + 11,609원 = 12,519원	사용량요금 (원미만절사) : 1,260원 + 16,975원 = 18,235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원미만절사) : (12,519원) * 0.037 = 460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원미만절사) : (18,235원) * 0.037 = 670원
부가가치세 (원미만 4사5입) : (12,519원) * 0.1 = 1,252원	부가가치세 (원미만 4사5입) : (18,235원) * 0.1 = 1,824원
사용량요금 12,519원 + 460원 + 1,252원 = (10원미만절사) 14,230원	청구금액(10원미만절사): 18,235원 + 670원 + 1,824원 = 20,720원
공용사용량요금 : 65Kwh * 123원 = 7,995원	
청구금액(10원미만절사): 14,230원 + 7,995원 = 22,220원	
최종결과 : 단일계약요금이 1,500원 유리 세대를 단일요금으로 부과시 득실차액 : 1,500원	

※ 계산된 금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세는 포함되고 TV수신료, 위약금, 기타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산된 금액은 최근 전기요금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과거의 전기요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효건조기(미생물 발효·건조방식)의 사양 예시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발효 건조)장치 사양 예시 2 (가정용)			
용량	1kg/1일 (최대)	적용방식	미생물 발효형식
규격(MM)	300 X 350 X 500	전기요금	8,300~11,440원 (월 평균)
소비전력	0.06Kw(월 0.06Kw x 24H x 30Day = 43.2Kwh/월)		
감량율	60.9%	가격	798,000원 내외
침출수	없음	배출	60일~90일 (1kg 투입 기준)
탈취장치	복합탈취방식	잔존물 활용	사료, 퇴비로 활용 가능

- 소규모 동물보호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감량 장치(기기)의 전력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30일 사용 기준으로 산정하여 검토하였는데, 단일 세대 기준 실제 사용량은 6,570원/월이며, 기본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 적용 시 8,300원/월 사용량 요금이 확인됨

감량(발효건조)장치 전력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예시 2

43.2Kwh (세대사용량) + 65Kwh (세대공용사용량) = 108.2Kwh (세대별 총사용량) 에 대한 비교분석(종합/단일)

종합계약(저압)	단일계약(고압)
기본요금 (원미만절사) : 410원	기본요금 (원미만절사) : 730원
사용량요금(원미만절사) : 2,622원	사용량요금(원미만절사) : 6,570원
<p>- 1단계 : 43.2kWh * 60.7원 = 2,622.24원</p> <p style="text-align: right;">총계: 43.2kwh 2,622원</p>	
사용량요금 (원미만절사) : 410원 + 2,622원 = 3,032원	- 1단계 : 100kWh * 57.6원 = 5,760.00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원미만절사) : (3,032원) * 0.037 = 110원	- 2단계 : 8.2kWh * 98.9원 = 810.98원
부가가치세 (원미만 4사5입) : (3,032원) * 0.1 = 303원	총계: 108.2kwh 6,570원
사용량요금 3,032원 + 110원 + 303원 = 3,440원 (10원미만절사) 원	사용량요금 (원미만절사) : 730원 + 6,570원 = 7,300원
공용사용량요금 : 65Kwh * 123원 = 7,995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0원미만절사) : (7,300원) * 0.037 = 270원
청구금액(10원미만절사): 3,440원 + 7,995원 = 11,440원	부가가치세 (원미만 4사5입) : (7,300원) * 0.1 = 730원
	청구금액(10원미만절사): 7,300원 + 270원 + 730원 = 8,300원
<p>최종결과 : 단일계약요금이 3,140원 유리</p> <p>세대를 단일요금으로 부과시 득실차액 : 3,140원</p>	

※계산된 금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세는 포함되고 TV수신료, 위약금, 기타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은 최근 전기요금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과거의 전기요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효건조기 사양 예시 1(다량배출사업장용)의 경우 신고 또는 신고 미만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분뇨를 배출하는 동물보호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발효건조기 사양 예시 2(가정용)의 경우는 신고 미만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동물보호시설에 활용할 수 있음
- 발효건조기 예시 기기의 경우는 다량배출 사업자용과 가정용으로 구분되는데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미만과 일부 신고 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3~10L(kg)/일 용량의 동물보호시설용 발효건조기가 필요하며, 월 전기요금은 10,000원~15,000원 정도로 예상됨
- 감량 장치 중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에 효율적인 발효건조기의 원리를 동물분뇨를 적용하여 검토함

- 동물보호시설 -> 분뇨 배출 -> 분뇨 투입(미생물 및 담채 투입) -> 교환/발효/분해 -> 배출 -> 10일 후 배출(3~10L/일 기준이나 규격 용량에 따라 유동적) -> 비료(퇴비) 활용



- 발효건조기의 사용 시 투입되는 미생물은 최초 사용 시 투입하고, 추가 필요시에만 투입하므로 비용은 크게 발생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다. 배출시설 신고기준에 대한 설문 조사 대상 동물보호시설 수용 가능성

- 유기동물 보호시설 배출시설 신고기준(안)에 설문 조사 대상 56개소의 동물보호시설을 적용하여 수용 가능성을 확인함

[표 49] 설문 대상 동물보호시설 배출시설 신고기준(안) 적용

구분	두수(%)	동물 단위(AUf)	Total AUf	발생량(g)/일	발생량(kg)/월
소형견	55(47)	0.2	11	1,486	44.6
중형견	35(30)	0.7	25	3,321	99.6
대형견	28(23)	1	27	3,637	109.1
계	118		63	8,576	253.3

- 설문 조사대상 56개소의 동물보호시설(평균)을 신고기준(안) 적용 결과 63AUf, 253.3kg/월로 신고 미만 기준으로 확인됨

[표 50] 설문 대상 동물보호시설 배출시설 신고기준 비교

구분	두수(%)	AUf, 발생량(kg)/월		80AUf 기준(kg)/월		가분법 신고 규모(60m ²)
소형견	55(47)	11	44.6	14	56.3	대형견 80두 해당
중형견	35(30)	25	99.6	31.5	126.6	80×134g
대형견	28(23)	27	109.1	34.5	138.7	10,720g/일
계	118	63	253 (253.3)	80	300 (321.6)	322kg/월

- 설문 조사대상 56개소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관리하는 대·중·소형견의 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관리 두수를 산정하여 봄

[표 51] 설문 대상 동물보호시설 평균 대·중·소형견 보호 관리 비율 적용

구분	두수(%)	동물 단위(AUf)	Total AUf	발생량(g)/일	발생량(kg)/월
소형견	70.5(47)	0.2	14	1,876	56.3
중형견	45(30)	0.7	31.5	4,221	126.6
대형견	34.5(23)	1	34.5	4,623	138.7
계	150		80	10,720	300 (321.6)

- 설문 조사대상 56개소 동물보호시설의 대(23%)·중(30%)·소형견(47%)의 보호 관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50마리로, 대형견 기준 면적 60m²(80마리)의 가분법 기준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됨

라. 동물보호시설의 보호 관리(사육) 제한 적용 여부 검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동물보호시설의 보호 관리(사육) 제한 적용 여부를 검토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중략)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이하 생략)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8.]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와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 소·말·사슴·양 : 100미터 이내 지역
 - 젓소 : 250미터 이내 지역
 - 돼지·닭·오리·메추리·개 : 500미터 이내 지역
 (이하 생략)

울산광역시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이하 생략)

울산광역시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전부 제한구역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일부 제한구역 : 전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조항 관련 법령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한 가축 사육시설에 해당하므로 공공 동물보호센터나 사설 동물보호소로 신고한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미신고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의무를 적용하도록 함

마. 동물보호시설의 악취관리지역 적용 여부 검토

- 악취방지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동물보호시설의 악취관리지역 적용 여부를 검토함

악취방지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5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 악취방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6조 조항 관련 법령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한 가축 사육 시설(축산)에 해당하므로 공공 동물보호센터나 사설 동물보호소로 신고한 동물보호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상 악취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미신고 동물보호시설은 「악취방지법」 상 개 60㎡² 이상 악취 배출시설 규정을 적용함

○ 악취방지법 제7조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 설치 기준(시행규칙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다만, 악품 등 이용 시 제외 - 액비의 살포기준(시행규칙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비는 충분히 부숙 시켜 사용 (악취방지법 제7조에 기준 적합) - 처리시설 관리기준(시행규칙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복합악취 15배수, 지정악취 물질[ppm] 2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 물질: 22종 (시행규칙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05년~12종→'08년~17종→'10년~22종) - 지역 구분 : 공업·기타지역(축산시설 포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시장·군수 등) (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 민원 1년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산농가 : 악취 저감 인식 낮음-법적 규제 미흡) - 가축사육제한구역권고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우 100m, 젓소 250m, 닭 500m, 돼지 500m) · 시·군 조례 재정운영:157개 시·군(87.2%)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 한국축산학회. 2016

○ 지자체의 악취 발생 민원현황에 따라서 동물보호시설의 시설운영 및 악취관리 실태를 조사함

[표 52] 조사 동물보호시설 기본운영 현황

순번	대상 조사내용		현황								
			A 동물병원			B 시 유기동물보호소			C 동물보호 관리협회		
1	운영형태		위탁(개인 동물병원)			지자체 직영			위탁(사단법인)		
2	보호 동물 규모	소형견	20	33	33	140	210	210	120	215	305
		중형견	10			30			60		

		대형견	3		40		35	
		자묘	0	0	0	0	60	90
		성묘	0		0		30	
3	시설면적	16평 (동물병원 면적)			150평		1,650평	
4	분뇨처리방법	일반 종량제 봉투에 처리			플라스틱 통(10L) 임시 보관 후 1회/주 (1회 16통 [160kg] → 국화 양묘장)		분, 뇨 - 물청소 (정확조 보유), 일부 분변은 퇴비화 처리	
5	상시 보호 동물 수	20~25마리			190마리		250마리	
6	연간입소 동물 수	250~300마리			540마리		3,679마리	
7	평균보호 기간	15일			100일		25일	
8	연간 입양 동물 수	40~50마리			60~70마리		835마리	
9	연간 폐사 동물 수	200마리			60마리		2,752마리	

[표 53] 복합악취 측정결과

조사일시	대상/지점	복합악취 결과	배출허용기준	단위
2019년 10월 7일	A 동물병원 환기구	10	기타 지역 배출구 : 500 부지경계 : 15	희석배수
	B 시 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실내	30		
	C 동물보호 관리협회 창문	20		

- A 보호소의 경우 복합악취 측정결과 10배수로써 부지경계 선상의 15배수를 만족하지만, 환기구 위치가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골목길에 있으므로 선제 대응은 환기구 방향을 건물 위 또는 주민이 활동 안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B 보호소는 시설과 주거지역의 거리가 있으므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30배수의 농도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 관리하는 직원과 방문자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포집, 탈취 등의 악취제어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C 보호소는 평상시 운영 측면에서 주민들과 이해하는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개발에 따른 이주민이 정착할 경우 자연 환기로 배출되고 있는 복합악취 20배수는 행정적 처분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상시 분뇨처리 후 청소, 보호 동물의 목욕,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 시설 내벽, 바닥청소, 일정 시간의 자연 환기, 시설의 최적화된 탈취시설이 필요함

○ 공공 동물보호센터나 사설 동물보호소로 신고한 동물보호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상

악취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동물보호법」에 명시하여, 간주하지만 「동물보호법」 상 신고, 등록 범위의 동물보호시설은 상시 분뇨처리 후 청소, 보호 동물의 목록,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 시설 내벽, 바닥청소, 일정 시간의 자연 환기 등을 하도록 하고, 허가 기준 범위 동물보호시설은 최적화된 탈취시설 등을 설치하는 안의 검토가 필요함

바. 동물보호시설의 폐사축 처리방안 검토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동물보호시설의 폐사축 처리방안을 검토함

-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시설에서 자연사 또는 안락사되어 발생하는 폐사축 처리방법을 설문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설문 조사 자료 중 폐사축 관련 자료 인용

설문 조사 인용 - [표 30] 설문 응답 동물보호센터의 연간 폐사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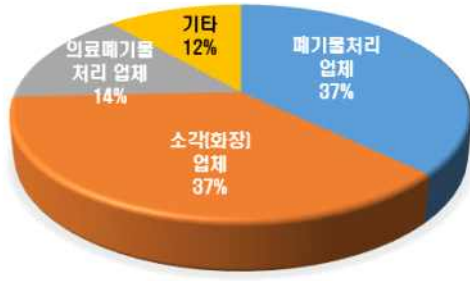
전체 평균	293.5±756.8 (마리)	공공 평균	408.6±806.1 (마리)	사설 평균	10.3±6.6 (마리)
-------	---------------------	-------	---------------------	-------	------------------

- 연간 폐사 동물 마릿수는 전체 평균 293.5±756.8(마리)이며, 공공은 408.6±806.1(마리), 사설은 10.3±6.6(마리)으로 나타남
- 주로 유실·유기동물의 직접적인 구조와 포획을 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질병 감염이나 사고 및 안락사 등으로 폐사되는 동물이 많고,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폐사 동물 현황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많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위탁 처리 37개소(75.5%), 직접 매장 7개소(14.3%, 모두 사설 동물보호소), 매립용 종량제 봉투 처리 1개소(2.0%), 소각용 종량제 봉투 처리 2개소(4.1%), 기타 응답 2개소(4.1%), 냉동보관 및 도시관리공단(환경관리원) 처리, 군 매립지에 수의사 검안서 첨부, 처리

설문조사 인용 - <그림 55> 동물 사체 처리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 폐기물처리업체 위탁 처리 13개소 (37.1%), 소각(화장) 13개소 (37.1%),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5개소(14.3%), 기타 응답은 4개소 (11.4%), 기타 응답은 렌더링 처리업체, 지정 폐기물처리업체, 위생업체 등이었음

설문조사 인용 - <그림 57> 동물 사체 위탁 처리방법 (복수 응답 중복 집계)

설문 조사 자료 중 폐사축 관련 자료 인용

- 사체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29개소(69.0%)에서 냉동시설 보유, 냉장고 보유 2개소(4.8%), 없는 곳이 10개소(23.8%), 기타 1개소(2.4%)였음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24.] [환경부령 제819호, 2019. 7. 24., 일부개정]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중략)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중략)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중략)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략)

라. 처리의 경우 (중략)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중략)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략)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인체조직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나)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0] 신고대상 배출시설(안)의 배출신고 미만 대상 동물보호시설의 발생 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생활계 폐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서 3항.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의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배출신고 미만 대상 동물보호시설 발생 동물의 사체는 생활계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다만, 사체(폐기물)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
 - 현재 일부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직접 폐사축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가. 공통사항 중 나) 항의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폐사하였을 경우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주인에게 인도하여 처리할 수 있음

사. 동물보호시설의 안락사에 대한 검토

- 지자체의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법 제2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은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 동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7장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제20조(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 ①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1순위.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2순위.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3순위.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호르몬 질환 등에 감염되어 분양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4순위.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5순위.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③ 이하 생략

- 미국보호소 수의사연합(ASV, The 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s)은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에서 안락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안락사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수행할 때 개별 동물을 존중해야 함

- 적절한 절차가 사용되도록 관련 품종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전문 지식을 아는 수의사와 상담해야 함

- 보호소에서 사용되는 안락사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고통, 고통, 불안 또는 염려가 없는 죽음을 보장하면서 의식 상실과 사망을 빠르게 유발하도록 해야 함

- 안락사 방법은 신뢰성이 높고, 동물의 종, 나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해야 하며, 안락사는 미국 수의사협회(AVMA) 지침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제제 또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음

안락사될 각 동물의 신원은 미리 확실하게 결정되어야 함

- 안락사될 각 동물의 신원은 범용 스캐너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칩을 여러 번 스캔하고, 동물이 절차에 적절히 지정되었는지 확인 등을 포함하여 미리 확실하게 결정되어야 함

동물이 무의식, 혼수상태 또는 마취 상태임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심장 내 주사는 허용되지 않음

- 각 동물의 크기, 체중 및 기질을 평가하여 적절한 약물 복용량, 바늘 및 주사기 크기와 제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보호소에서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시키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 운영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용납할 수 없음

- 인원의 안전과 안락사의 감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함

수의사는 안락사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함

안락사 방법

보호소 동물의 안락사에 사용되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은 나트륨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용액의 정맥 내 (IV) 또는 복강 내 (IP) 주사임

주사 기술, 투여 경로, 투여량 및 사망을 확인하는 방법은 나이, 크기, 체중, 상태 및 조류와 파충류를 포함한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종략 -

일산화탄소

보호소에서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시키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 종략 -

사망의 확인

동물의 사체를 처분하기 전에 훈련을 받은 직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확인해야 함 이것은 동물이 안락사되지 않지만, 발견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종략 -

- 환경 및 장비

주의 산만과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의 주요 패턴에서 떨어진 조용한 지역에서 안락사를 위해 다른 방을 지정해야 함

방은 충분한 조명을 갖춘 시설, 2~3명의 직원, 안락사 동물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함

- 요약 -

- 기록 보관 및 관리 물질

각 동물의 식별, 안락사 용액의 양, 안락사 전 및 안락사 약물의 양,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원을 기록할 수 있는 관리기록이 있어야 함

모든 약물 기록은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규정을 포함하여 연방, 주 및 지역 규정에 따라 유지해야 함

- 요약 -

- 직원 교육

안락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함

이상적으로, 약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공인 수의사, 공인 또는 허가된 수의 기술자 또는 공인 안락사 기술자 또는 트레이너에 의해 인증되고 훈련되어야 함

훈련을 제공하거나 안락사를 감독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규정은 주마다 다르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소는 주와 연방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함

특정 기술에서의 안락사 훈련에는 대체 주사 부위에 접근하고, 다양한 종을 처리하고, 적절한 동물 취급을 위한 행동과 기질을 평가하고, 여러 방법으로 사망을 확인하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함

현장 안락사를 위한 훈련도 제공해야 함

안락사 기술자와 보조 직원은 동물 및 시술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피하고자 동물 취급 및 구속에 능숙해야 함

재훈련 및 재인증은 슬픔, 동정심 피로, 우울증 또는 절차 수행과 관련된 기타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 고통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직원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이하 생략 -

○ 대형 시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질병으로 회복이 어려운 보호 동물 등 불가피한 경우는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제22조 그리고 운영지침의 기준을 시설 동물보호소도 적용하되, 분양이 안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안락사는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안락사 관련 기록 및 보관을 위하여 기존 개체관리카드를 활용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함

아. 고양이 시설기준과 유형에 대한 검토

○ 동물복지를 고려한 버려진 고양이(유기묘)에 대한 보호·관리사의 시설기준은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함

- 특성상 야행성이며, 성묘가 되고 나서는 철저히 독립생활(영역 동물)을 하고, 비교적 소형동물이며, 소형동물을 주식으로 삼고 항상 높은 곳을 오르고 싶어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음⁷¹⁾

- 고양이는 체중과 상관없이 같은 규격으로 권장 크기를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제15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 50 × 70 × 60(cm)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고양이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 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라. 동물생산업

2) 사육실

다) 개의 경우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고양이 분변 발생량 산정⁷²⁾

- 보호 고양이 중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묘사를 선정하여 분변 시료 채취

-> 7마리 : 총 29.44kg - 평균 4.2kg

-> 3일 동안 뇨(소변)을 제외한 순수한 분변의 무게 산출 : 810g : 마리 당 38.57g/일

- 고양이 성묘 : 9.18g/kg/일 분변 발생

○ 고양이는 일반적인 수평 면적 기준이 아니라 수직 공간의 개념이 적용되고, 설문과 현장 조사 결과 개와 비교하여 보호 관리하는 마릿수도 적어 별도의 기준을 산정하지 않음 (민원의 대상도 개가 주요 대상임)

○ 현재 고양이 배변 시 분변 처리를 위해 모래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연 친화적인 펠릿 사용에 대한 검토와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71) 나무위키. 2019. 고양이/습성

72)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2019.

3.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방안

가. 사설 동물보호소의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의 2. (생략)</p> <p><신설></p> <p>4. 5.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의 2. (현행과 같음)</p> <p>4. “사설 동물보호소”란 동물을 번식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입소한 동물을 빠른 시일 내로 입양 보내려는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입소하는 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직한 보호소 중 지자체에 등록된 보호소로 제15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p> <p>5. “동물분뇨”란 동물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보호 및 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p> <p>6. “배출시설”이란 동물의 보호·관리로 인하여 동물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관리자·운동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처리시설”이란 동물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8.9.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p>	<p>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p>

<p>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3. (생략) ② ~ ④ (생략)</p>	<p>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⑦ (생략)</p> <p>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 ⑩ (생략)</p>	<p>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 ⑩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15조의2(사설 동물보호소의 신고) ① 사설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설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사설 동물보호소의 시설 기준 및 운영기준과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보수 비용과 센터 내 자체 번식방지를 위한 중성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5조의3(동물보호단체 등의 동물관리 등)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u>동물보호단체</u>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동물을 관리, 분양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p>
<p><신설></p>	<p>제15조의4(변경·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설 동물보호소의 신고를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설 동물보호소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사설 동물보호소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5조의5(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 사설 동물보호소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동물 중 다음 각 호의 동물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보호를 요청한 동물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동물 <p>② 사설 동물보호소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는 우선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신고할 수 있</p>

	<p>다. 단, 신고는 보호조치 이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사설 동물보호소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해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중 사설 동물보호소의 장이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보호하겠다고 그 장이 동의한 동물에 대하여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장에게 요청하여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5조의6(시설의 개선, 운영의 정지, 등록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설 동물보호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의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다만, 영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p>② 제1항의 운영 정지를 받은 사설 동물보호소의 장은 운영 정지 기간 중 동물을 새로이 인수하거나 비용 등을 지급받고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할 수 없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보호소의 장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동물보호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설></p>	<p>제1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와 제15조의2의 동물보호소가 아니면 동물보호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신설></p>	<p>제22조의2(동물보호시설의 분뇨 배출시설 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2조의3(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동물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p>

	<p>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시·군·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동물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군·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2조의4(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이하 "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p>
<p><신설></p>	<p>제22조의5(동물사육의 제한) 공공 동물보호센터나 사설 동물보호소로 신고한 동물보호시설 또는 제22조의2 제1항의 규모이하의 경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p>
<p>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 8. (생략) ② ~ ④ (생략) 	<p>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신설></p> <p>3의2. 제15조의2에 따른 동물보호단체등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신설> <신설> 8. ~ 15. (생략) ③·④ (생략)	제4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6. 제1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8. ~ 1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 「동물보호법」에 사설 동물보호소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동물보호시설의 분뇨관리, 분뇨 배출시설 신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동물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세부 조항을 규정하도록 함

나. 동물보호시설의 분뇨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제1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략)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현행과 같음)
<신설>	제19조의2(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0와 같다.
<신설>	제19조의3(처리시설의 설치 등 면제) 법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동물분뇨의 전량을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동물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동물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0] 신고대상 배출시설(제15조의8 제1항 관련)

신고 대상 배출시설(제15조의8 제1항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보호시설	80AUf 이상, 300kg/월 이상

비고

1. 분변 발생량 동물 단위, AUf(Animal Unit/Feces, AUf)는 대형견 1AUf, 중형견 0.7AUf, 소형견 0.2AUf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가 80AUf 이상이면 신고 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2. 소형견(5kg 미만),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대형견(15kg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제15조의8 제1항 관련 [별표 0]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규정함

다. 동물보호시설의 분뇨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조의3(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화시설"이란 동물분뇨를 퇴비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2. "퇴비"(堆肥)란 동물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동물분뇨를 침전·분해 등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동물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 5. "감량장치"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동물분뇨를 발효·소멸·건조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p>제15조의2(사설 동물보호소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의 사설 동물보호소의 시설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설 동물보호소로 등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1서식의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5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p>명세서</p> <p>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p> <p>4. 동물의 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5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사설 동물보호소로 등록하고, 별지 제5호-1서식의 사설 동물보호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신설>	<p>제15조의3(배출시설) 이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조의3 제2호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p>
<신설>	<p>제15조의4(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10호에서 "동물분뇨를 침전·분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신설>	<p>제15조의5(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p>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의6(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2조의4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0과 같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사설 동물보호소의 신고, 배출시설,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조항을 규정함
- 사설 동물보호소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신고대상 배출시설」 등을 규정하였으나 처리시설의 기준, 관리기준, 과징금, 동물 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등 전체 법의 구성에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검토 및 추가가 필요함

제 2 절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 수립의 기본 원칙

1. 기본 원칙 제시의 필요성

가. 동물보호시설의 관리기준 수립의 필요성

- 국민의식의 변화와 관련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으로 단순히 기호에 의해서 동물을 사육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족과 같이 함께하고 사육하는 반려동물로 인간화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사육 가구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등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슈화되고 있음
- 2018년 6월, 대구시 소재한 사설 동물보호소의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철회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하게 되어있어,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법적 개념 및 관리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음
 - 또한, 환경부의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인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다양한 민원과 관련된 처리를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동물보호시설의 분뇨 처리기준을 포함한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국내 동물보호시설 관련 현황과 현장실태 조사(설문 조사, 자문단 회의) 등과 국내외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분뇨처리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함
 - 본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면적 및 사육마릿수)로 동물보호시설의 분변 발생량과 분변 발생량 동물 단위(Animal Unit/Feces, AUf)를 적용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미만, 신고의 배출시설 기준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현재 동물보호시설 간의 규모 편차가 크고, 열악한 조건을 가진 사설 동물보호소에 법령 등을 통한 엄격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장기적인 단계별 계획의 수립과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동물보호시설의 구체적인 관리기준(관리지침)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나. 기본 원칙의 제시⁷³⁾

-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선진국인 영국에서 1965년 제안된 “5개의 자유”는 종 전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본질에서 환경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동물의 근본적인 요구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음
 - 미국의 수의학협회 (AVMA,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는 이 개념을 기반으로 2008년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미국(농장 동물 복지협의회)에서는 2009년 “동물복지를 위한 5개의 자유”를 제안함
-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의 자유」
 - 1. 기아와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담수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과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식이요법
(완전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물과 음식에 즉시 접근이 가능)
 - 2. 불편에서 자유 (불편함에서 해방)
보호소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포함한 적절한 환경의 제공
 - 3. 통증,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예방 또는 신속한 진단 및 치료의 제공
 - 4.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편의 제공
 - 5.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적 고통을 피하는 상태(조건)와 치료의 보장
 -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의 자유」는 공학 표준이 아닌 성능 표준으로서 결과를 정의하고 평가 기준을 내포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음
- 미국의 수의학협회가 제시한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에 모든 부문은 기초로 「동물복지 5가지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됨
-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은 모든 유형의 보호소 상황을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 표준이 지나치게 규범화되지 않고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

73) Guidelines for Standards of Care in Animal Shelters. The 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s-2010

[표 54]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 - 장별

1	제1장 관리 및 기록 보관	7	제7장 보호시설
2	제2장 시설 설계 및 환경	8	제8장 동물의 취급
3	제3장 개체군 관리	9	제9장 안락사
4	제4장 위생	10	제10장 중성화(거세)
5	제5장 의료 건강과 신체적 건강	11	제11장 동물 운송
6	제6장 행동 건강과 정신건강	12	제12장 공중위생

자료 : The 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s-2010

2. 동물보호 복지의 적용 우선순위

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기초로 한 관리지침 적용의 우선순위⁷⁴⁾

- 국내 동물보호시설 현황조사를 통해 일부 보호시설이 동물 통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개체의 유실·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구조·보호에 따른 비용 지출과 길고양이 관련, 동물 분실 및 구조 요구 등 다양한 민원 증가로 인하여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재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법규는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동물보호법」의 행정규칙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서 보호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표 55]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 장별

1	제1장 총칙	5	제5장 질병 관리
2	제2장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6	제6장 동물의 반환 및 분양
3	제3장 동물의 포획·구조 및 운송	7	제7장 동물의 인도적 처리
4	제4장 동물의 보호조치		부칙 <제2016-18호, 2016. 3. 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2019.9.

74) Guidelines for Standards of Care in Animal Shelters. The 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s-2010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과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유실·유기동물의 관리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함
- 동물보호시설의 상황이 각각 달라, 각 조직의 고유한 차이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지침 이행 일정과 과정의 조정)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명칭 변경 필요 「동물보호시설 운영지침」)은 구현을 위한 운영 길잡이 또는 지침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각 조직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지침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 각 조직은 지침에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체 운영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지침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은 보호시설이 지침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제시하도록 함
 - 지침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의 적용 시 하나의 논리적 첫 단계는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침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도록 함
 - 다음 단계는 우선순위가 지정된 접근 방식에 따라 “필수”지침을 다루도록 함
 - 최종 단계는 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최소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국내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차이점과 구체적인 과제는 모든 보호시설이 이러한 지침의 항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처리 할 수 있는 속도이므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각 조직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인식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

나.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

- 본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보호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한 운영지침이 아닌 현장의 관리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법규인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앞서 개정안을 제시한바 「동물보호법」의 행정규칙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보호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하도록 함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서는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설 동물보호소

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사설 동물보호소를 포함하는 운영지침이 필요함

- 유실·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하게 되어있어,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법적 개념 및 관리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에서 사설 동물보호소의 신고(사업자)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안을 앞서 제안함
- 미국보호소 수의사협회⁷⁵⁾의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은 총 12장 5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구현을 위한 운영 길잡이 또는 지침 길잡이의 역할이 아니라 각 조직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보호소 수의사협회는 동물보호소가 조직에 비용을 거의 또는 전혀 들이지 않고 보호 동물관리 수준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을 방침으로 활용한 사례(연구)를 문서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의 행정규칙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과 같은 운영 지침도 필요하나, 모든 동물보호시설의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의 규정 조항 중 실제 현장인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수의학적인 분야와 동물행동학적인 분야 등을 포함하는 현장 중심의 가치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의 제정이 필요함
-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초로 유실·유기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 등의 시설기준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가치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검증 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동물보호시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단순 운영지침이 아닌 현장에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실제 필요한 정보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이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모든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배포되고 사용되었으면 함

75) 미국 보호소 수의사협회(ASV). 보호소 의학의 발전을 통해 보호소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이며, 「동물보호소의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을 작성, 배포함

제 3 절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설 관리방안

1. 공공 동물보호시설의 관리

가. 공공 동물보호시설 관리의 개선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공 동물보호시설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시설과 시설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형태의 위탁 동물보호시설로 분류됨
- 현재 공공 동물보호시설은 289개소로 직영 동물보호시설이 33개소, 시설지원 위탁 7개소, 대행기관 지정 위탁이 24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공공 동물보호시설 대행기관 지정 위탁 249개소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 사육시설의 면적 60㎡(80마리)를 기준으로 60㎡ 이상은 43개소이고, 60㎡ 이하는 206개소로 82%가 가축분뇨법 배출신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생활계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 (전체 289개소 중 무응답 27개소)
-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배출시설 신고기준인 분변 발생량 동물 단위 80AUf, 300kg/월 이상을 적용 시에도 대행기관 지정 위탁 동물보호시설은 대부분 배출신고 미만에 해당 됨
- 공공 동물보호시설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는 32개소가 신고되어 있는데 직영 동물보호시설 33개소 중 6개소, 위탁 동물보호시설 256개소 중 26개소가 신고되어 있어, 공공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시설지원의 검토가 필요함
- 지자체에 따라 직영 동물보호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대행기관으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경우 치료나 임시 경유의 목적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보호 관리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시설과 시설위탁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 지원과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시설의 수를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동물등록 등의 행정업무와 치료(중증), 교육, 입양, 자연사와 안락사 등의 보호 관리기능의 거점시설의 설립·운영의 검토가 필요함

제6장

성과 요약 및 기대 효과

제1절 성과 요약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화

제 6 장 성과 요약 및 기대효과

제 1 절 성과 요약 및 기대 효과

1. 성과 요약

가. 분뇨처리 기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기준 마련

- 동물보호시설 현장 실태조사와 설문 조사, 자문단 회의를 통한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
 - 동물보호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자치단체, 동물권 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의 개별 방문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인 개선방안 제시
- 합리적인 시설기준 제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면적 및 사육 마릿수)로 동물보호시설의 분변 발생량과 분변 발생량 동물 단위(Animal Unit/Feces, AUf)를 적용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미만, 신고의 배출시설 기준을 제시
- 동물보호시설 발생 분변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방안 제시
 -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한 동물보호시설 발생 분변의 퇴비화·바이오 에너지(가스)화의 재활용 모델과 방안 제시
- 동물보호시설 제도권 내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 국내외 동물보호시설 현황과 관련 법령(제도·정책)과 분뇨처리 방식의 비교를 통한 단계별 장기적인 개선안 제시
 - 동물보호시설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과 타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 내 보호 관리목적의 동물보호시설 관리 범위 제시
 - 동물보호법 내 사설 동물보호소, 동물분뇨, 배출시설, 자원화 시설 등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 사설 동물보호소의 적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신고 의무화 조항 규정
 - 동물보호시설의 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 마련

나. 가칭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의 기준마련

- 가칭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의 기본 원칙 및 적용 우선순위 제시
 -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수의학적인 분야와 동물행동학적인 분야 등을 포함하는 현장 중심의 가칭 「동물보호시설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의 제정 제안

다.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 제안

- 동물보호시설 발생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중점으로 제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동물 단위(Animal Unit/Feces, AUf)를 적용하여 동물보호시설의 합리적인 신고 미만, 신고의 배출시설 기준을 제시
 - 배출시설 기준 등 관련 동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단계적 법 개정
 -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장치 및 기기 사용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필요(법적 의무화 검토)
 - 감량 장치(기기) 등의 사용 시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개정
 - (기획재정부 사례)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을 위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전자태그) 계량 장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을 통해 초기 정부 시범사업을 100% 지원받아 국고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배출시설 신고 미만 범위에 대한 생활계 폐기물 및 하수 처리에 따른 단계적 관리방안 및 관련 법 개정 필요
 - 사설 동물보호소의 동물보호법 정의 및 등록 등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관리방안 및 장기적으로 허가제 전환 검토 필요
 -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최소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제시

2.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정책 자료로 활용
-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 적용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
- 동물보호센터(사설 동물보호소)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지침 마련 시 활용

제 2 절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화

1.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최소화)를 위한 정책

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최소화)를 위한 정책 제안의 이유

- 본 연구용역은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환경시설 기준마련과 관리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기본적인 현황조사와 선행 연구조사, 현장방문 실태조사, 설문 조사, 자문단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를 시행함
- 유실·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상당수의 보호시설이 과포화 상태이며, 일부 재정난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단순 수용시설 상태로 방치되고, 심하게는 학대시설이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 본 연구용역의 연구결과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핵심 요소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발생 후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선행되어야 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억제(최소화) 정책 방안을 제안함
-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은 엄격한 기준 수립 후 집행되어야 하고,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필요시에는 강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유기견 발생 후 시설투자보다 발생 억제를 위해 사전 투입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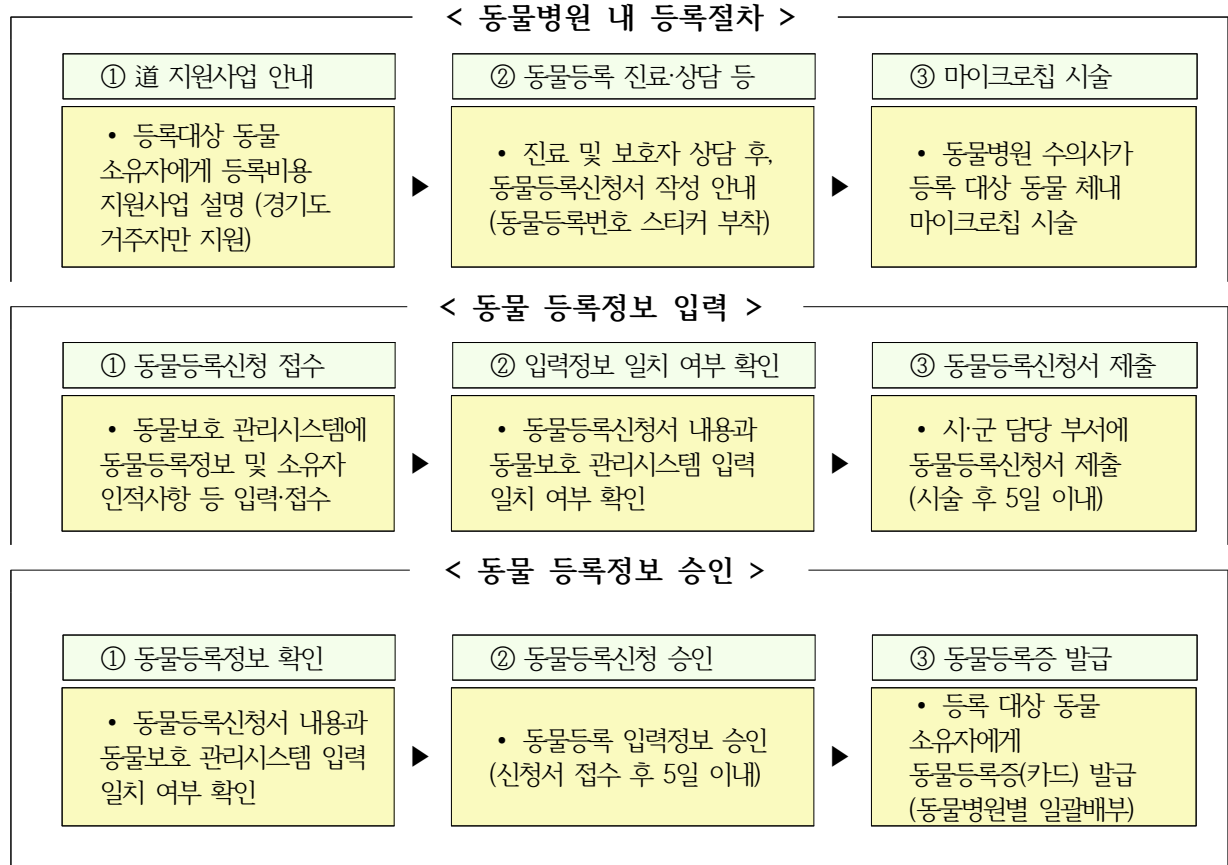
나. 동물등록제 의무 강화

-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⁷⁶⁾ (동물등록제 2013년 도입, 2014년 의무화)
- 2020년까지 계도기간, 2021년까지는 100% 등록하도록 하고, 벌칙 규정 강화안을 제안함
- 반려견 등록 의무화에도 유실·유기동물은 증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장형 칩과 외장형 식별장치, 인식표로 분류된 인식장치를 내장형 동물등록 칩으로 일원화(의무화)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안함 (내장형 동물등록 칩 : 유실 시 반환율을 높이고, 유기 시 리더기를 통한 처벌의 근거 - 유실사고와 유기를 예방)
- 내장형 동물등록을 수의사 판단(특정한 수의적 요인)으로 제거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재삽입과 일시, 사유 등 관련 보고의 의무화를 제안함

76)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제47조(과태료)

- 주택, 준주택 지역 이외(공장 지역과 농장 사육 개, 동물생산업자 생산 자견 등)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는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등록 의무화를 제안함
(장기적으로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동물은 등록이 의무화되어야 함 - 선진국)
- 자치단체는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동물등록증의 기능을 강화하여 번식장(동물생산업자)에서부터 생산, 분양, 유실·유기, 안락사 또는 자연사 등 전 생애에 대한 이력 관리를 제안함

○ 경기도 동물등록제 참조 (경기도 동물보호 복지사업 추진계획)



다. 중성화 수술 의무화 및 중성화 사업(TNR, Trap-Neuter-Return) 의 지원과 확대

- 중성화(Neuter)는 홍보에 의존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유실·유기동물의 입양과 애완 동물샵 분양 시에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사업 지원과 확대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안함

라.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중성화 지원사업 및 관리

- 중성화(Neuter) 수술비 지원사업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동물보호 복지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길고양이 5만 2,178마리를 중성화(Neuter)하였고, 67억 9천만 원이 소요되었음 (2015년 20,306마리, 2016년 33,313마리, 2017년 38,059마리)

- 길고양이는 2017년 대비 2018년 37.1% 증가, 비용은 41.5% 증가하였으며, 운영비용은 2015년 31.4억 원 → 2016년 42.9억 원 → 2017년 48.0억 원 → 2018년 67.9억 원으로 증가함
- 길고양이 중성화(Neuter) 지원사업은 군집 별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하는 등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2018년 한 해 67억 9천만 원이 소요 됨
- 경기도의 2019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예산⁷⁷⁾은 18억 원으로 국비 20%, 도비 12%, 시비 68%의 지원비율로 지원하고, 지원 단가는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 방사 등 지원 마리 당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길고양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유기 또는 유실될 수 있으나, 지속해서 길고양이가 증가하는 이유는 임의번식을 통해 개체 수 증가로 판단되어, 유실·유기 고양이(묘)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질병의 매개체 등 위험요소 내포)
-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큰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이 아닌 길고양이에 고가의 중성화 수술 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원 접수 시에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번식 시기에 암·수 군집 단위로 시행하는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사육자에 대한 책임 의무 강화

- 반려동물 사육자의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분양 시 사육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4시간 이상/일,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교육은 연간 1회, 2시간/일(인터넷, 현장 교육)의 시행을 제안함
- 반려동물의 개인 사육자 간 거래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어 신규 거래 시 신고나 허가제로 등록 후 사육을 제안함
- 사육포기자는 재입양 후 문제 발생 시 다시 유기하는 잠재적인 창구가 될 수 있어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고 입양 전 관련 교육 수료의 의무화를 제안함
- 미국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일정 기간 반려동물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고, 동물 학대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이외에 치료목적의 심리 상담이나 교육을 추가 적으로 명령⁷⁸⁾하고 있음

77) 경기도 동물보호 복지사업 추진계획, 2019.7.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국비)

78) 최종보고서, p113.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 및 규제사항 참조. 김지현(2018)

바.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 도입 및 관리

-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는 관리의 관점에서는 유기동물 양산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제도라는 조사 의견이 있었음 (자문단)
- 사육 포기동물에 대하여 사육자 사망과 같이 인수 불가 시와 병원 입원 등을 통한 장기 부재 시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를 시행(성남시, 동물권 단체 케어)하고 있고,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를 통해 잠재적 유기동물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육할 수 없으면, 사전 심의회(매월 신청 접수, 월 1회 개최)에서 사육 포기자의 범위를 정하고, 적정한 범위 안에서 사육 포기동물을 인수 하는 제도 확대와 강화를 제안함

사. 반려견의 놀이터와 교육센터의 활성화

- 반려견의 놀이터는 스트레스 해소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아 유기동물 발생 억제가 예상되어, 각 자치구에서 설치 계획이나 장소 확보와 민원문제로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지자체 또는 광역 단위별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일반인과 사육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정 교육 수료 후 분양받도록 하고, 입소 된 유실·유기동물은 안락사를 지양하여 교육(행동 교정 등) 후 분양하도록 하며, 안락사 시에는 안락사 위원회(동물권 단체, 반려인, 일반인 포함)를 개최하여 안락사의 최소화를 제안함

아.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과 벌칙 강화

- 동물 등록비 지불제도 도입 검토
 - 무분별한 반려동물 사육 방지와 개체 수 관리로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누진제 방식의 동물 등록비 도입을 제안함
 - 독일의 경우 첫 번째 자견 등록 시 연 120유로(1유로=1,315원 기준), 15만 7,800원, 두 번째 부터는 마리당 연 180유로, 23만 6,7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동물 등록비(누진제 방식)와 기준가격 공시제도의 의무화를 전제로 견종 별 비용을 차등화하고,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의 '동물 등록비'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함
 - 동물 등록비 의무화를 전제로 중성화(Neuter) 시 동물 등록비를 감액하는 안을 제안함
 - 미국은 중성화(Neuter)하지 않으면 \$34.5(1달러=1,197원), 4만 1,300원을 부과, 중성화한 경우 \$8.5, 1만 175원을 내도록 하여 중성화하지 않으면 4배 이상의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반려견 입양 시 입양수수료 부과

-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자원 확보를 위하여 일본 오사카 ARK와 같이 입양수수료의 징수⁷⁹⁾를 제안함

○ 사육 포기동물 인수수수료

-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일본의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경우처럼 사육 포기자에 대한 사육 포기동물 인수수수료의 징수⁸⁰⁾를 제안함

○ 동물보호센터(사설 동물보호소) 보호 동물소유자 반환수수료

-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비 형태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동물보호센터(사설 동물보호소)에서 징수하도록 함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되어 반환 시 동물보호센터(사설 동물보호소)가 보호 동물소유자에 대한 반환수수료를 징수⁸¹⁾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 벌칙과 관리·감독 강화(안)

- 내장형 동물등록 칩 삽입 위반 시 벌금 부과

내장형 동물등록 칩 삽입 의무화를 전제 조건으로 위반 시 영국의 경우⁸²⁾와 같이 벌금의 부과를 제안함 (영국 - 500파운드[8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학대, 그리고 유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학대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의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유기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감시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위촉하여 관리 감독(동물보호법 제40조[동물보호 감시원], 제41조[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하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동물보호 감시원의 행정적 업무 부담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나 일반 민원 신고로 위반사항이 접수되고 있어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보호 행정업무 보조 인력을 시군에서 기간제 및 지방 시간선택제 또는 임기제 등으로 공고·채용하는 안⁸³⁾을 제안함

79) 최종보고서 p51. 오사카 ARK 자원 확보 참조

80) 최종보고서 p46. [표 13]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사육 포기동물 인수수수료 참조

81) 최종보고서 p46. [표 14] 도쿄도 동물 애호 상담센터 보호 동물소유자 반환수수료 참조

82) 최종보고서 p111.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 및 규제사항 참조. 서울 연희실용전문학교. 2016.3.

83) 경기도 동물보호 복지사업 추진계획. 2019. 7. 5.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또한, 위반사항을 고발 조치하여도 벌금(징역형) 또는 과태료가 상당 부분 감액되어 부과되는 때도 있어 관련 위반사항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엄격한 법 적용을 제안함

-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제2항 5의 2에서는 동 법 제24조의 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도록 함⁸⁴⁾

반려동물의 유기 시에도 기존 과태료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유기 최소화를 제안함

84)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9.11.

부록

[부록 1] 동물보호시설 현장 실태조사
(전문)

[부록 2] 자문단 회의(전문)

[부록 3] 설문 조사(양식)

[부록 1] 동물보호시설 현장 실태조사(전문)

가. 공공 동물보호센터 (직영 및 위탁) - 15개소 방문 조사

○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지자체 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위탁받아 운영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 시설면적 : 약 200평 (지상 2층)
- 인력 : 13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60마리, 고양이 8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200~25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개 100마리, 고양이 50마리 정도나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1,750마리 입소, 500~6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4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정화조에 처리(자체 정화조 보유)하며, 고양축협에서 분기에 1회 수거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 소독시행 여부 : 세제(락스) 희석 도포 (매일)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냉동보관 후 계약된 위탁 처리업체에서 수거 (소각)

- 그 밖의 특이 사항

- 동물을 개별 방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음
- 운동장 보유 · 시설 설계 대비 과포화 상태
- 동물보호단체와 봉사단체의 영향으로 안락사 시행이 어려운 상황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유기동물 억제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확실하게 시행해야 함
- 동물보호센터 기준마련 시, 운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동물 한 마리당 제공 면적, 마리당 필요한 보호 관리 인원수 등)
- 불필요한 안락사는 지양하고 있으나, 안락사에 대한 시행 가능 기준과 방침이 필요함
(관리능력 포화가 안락사 사유로는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비용상의 문제로 중성화(Neuter)는 못 하고 있는데, 입양지원비 증액이 필요함
(암컷 중성화 비용 35만 원, 수컷은 20만 원 정도임)
- 동물보호센터 인력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인력 확보, 전문성 확보)



<그림 74>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지자체 직영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 시설면적 : 약 144평 (지상 2층)
- 인력 : 18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64마리, 고양이 14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160~18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개 60마리, 고양이 40마리 정도나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945마리 입소, 약 200마리 분양 (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5개월 (안락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플라스틱 통에 수거하여 보관, 외부 자원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2주에 한 번 통째로 수거)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발판 소독조, 친환경(에코) 클리너, 자불 소독, 세제(락스) 청소
 - 악취방지시설 : 탈취시설 보유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냉동보관 후 계약된 위탁 처리업체에서 수거
- 그 밖의 특이 사항
- 탈취시설 보유
 - 놀이터, 운동장 보유
 - 동물보호단체와 봉사단체의 영향으로 안락사 시행이 어려운 상황
 - 농촌 지역 마당 개 중성화(Neuter) 지원사업 : 자체 용인시 예산으로 진행 중임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암컷 25만 원, 수컷 15만 원 지원)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안락사 제도는 있으나 안락사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음 (안락사 시행 주체가 용인시가 아닌, 도나 중앙 기구에서 회부하여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공공 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 간 연계 방안
 - 다양한 민원성 문의가 많음 : 용인시 보호센터가 알려지다 보니 센터로 직접 의뢰 및 문의가 매일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응 및 상담 지침(매뉴얼)이 없음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방안 : 동물등록제 강화, 중성화(Neuter) 의무화 등
 - 분양(입양) 시 제도 개선방안: 문제가 있는 동물의 경우 훈련비 지원



<그림 75>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지자체 직영
- 지역 및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부로 411-55
- 시설면적 : 약 200평 · 인력 : 6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50마리, 고양이 3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28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총 180마리 정도나 100마리가량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규모 : 2018년 기준 1,300마리 입소
- 평균보호 기간 : 약 6개월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정화시설 보유 (60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악취방지시설 : 탈취시설 보유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 그 밖의 특이 사항

- 수용 능력 대비 과포화 상태로, 외부에 펜스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보호시설 확보 중
- 지자체 시설을 위탁으로 운영하다, 위탁기관의 관리 미흡과 민원 증가로 직영으로 변경 운영한 지 약 1달 정도 됨 (19.07.19. 방문일 기준)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유기동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구조요청 민원 지속 발생(일일 20~30건) 및 포획 등 수행 인력이 부족한 실정
- 동물등록 의무화 및 사육자의 교육 의무화 (지자체장 책임제)
- 동물보호단체의 지나친 관심





<그림 76>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지자체 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위탁받아 운영
- 지역 및 위치 : 광주광역시 동물위생시험소 옆
- 시설면적 : 약 160평 (2층) · 인력 : 1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350마리, 고양이 20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55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총 350마리 정도나 200마리가량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3,600마리 입소, 약 8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산정하기 어려움 (최대 4년 된 동물도 있음)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저장시설(1톤) 보유 (연 2회 청소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소독 지원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그 밖의 특이 사항

- 전국 공공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율 평균 20% 정도나, 광주 동물보호소의 경우 2018년 9.7%, 2019년 현재까지 5%이며 대부분 길고양이임
- 수용시설 대비 과포화 상태로 외부에 별도 보호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임
→ 2020년 동물위생시험소 용지로 확대·이전할 예정이며, 입양 전문센터와 보호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임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유기동물 논쟁거리는 사회적 문제로서, 강력한 법 적용과 규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종식해가야 함 (생산, 판매, 유통과정 규제 강화 필요)

- 사육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 유기/학대/식용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 동물등록 의무화 및 사육자의 교육 의무화 (지자체장 책임제)
- 반려동물 인구 및 비율 증가로 볼 때 민생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함 (유기동물 원천적 발생 억제로 예산 지원)



<그림 77> 광주 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 창원시 마산 유기동물보호소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지자체 직영
- 지역 및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2길 139-112
- 시설면적 : 약 150평
- 인력 : 3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13마리, 상시 보호 동물은 19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총 80마리 정도나 2배 이상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약 540마리 입소, 약 60~7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10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플라스틱 통에 수집·보관 후 양묘장으로 위탁처리 (일주일에 1번)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축산과에서 소독약 분무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처리 (4,000원/kg)
- 그 밖의 특이 사항
 - 질병 등으로 자연사하는 예도 있으나, 최근 3년간 안락사는 시행하지 못하였음 (안락사 대상 동물을 봉사자들이 타 사설 동물보호소로 보냄)
 - 정화조는 있으나 센터로 차량진입이 어려워 분뇨를 통에 수거함
→ 이후 매주 토요일 양묘장으로 위탁 처리함 (약 160kg/주, 16개 통 수거)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봉사단체가 시 행정에 관여하여 안락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요청함
 - 인력이 부족함 : 교통편 등 열악한 환경, 낮은 시급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시설 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격리실 보유(수의사 반드시 점검 후 입소), 밀사(적정사육밀도)에 대한 개선 대책 강구



<그림 78> 창원시 마산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 함안군 동물보호소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지자체 직영
- 지역 및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 시설면적 : 약 50평
- 인력 : 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80마리, 상시 보호 동물은 10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총 50~60마리 정도나 3배 정도로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약 540마리 입소, 약 60~7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60~9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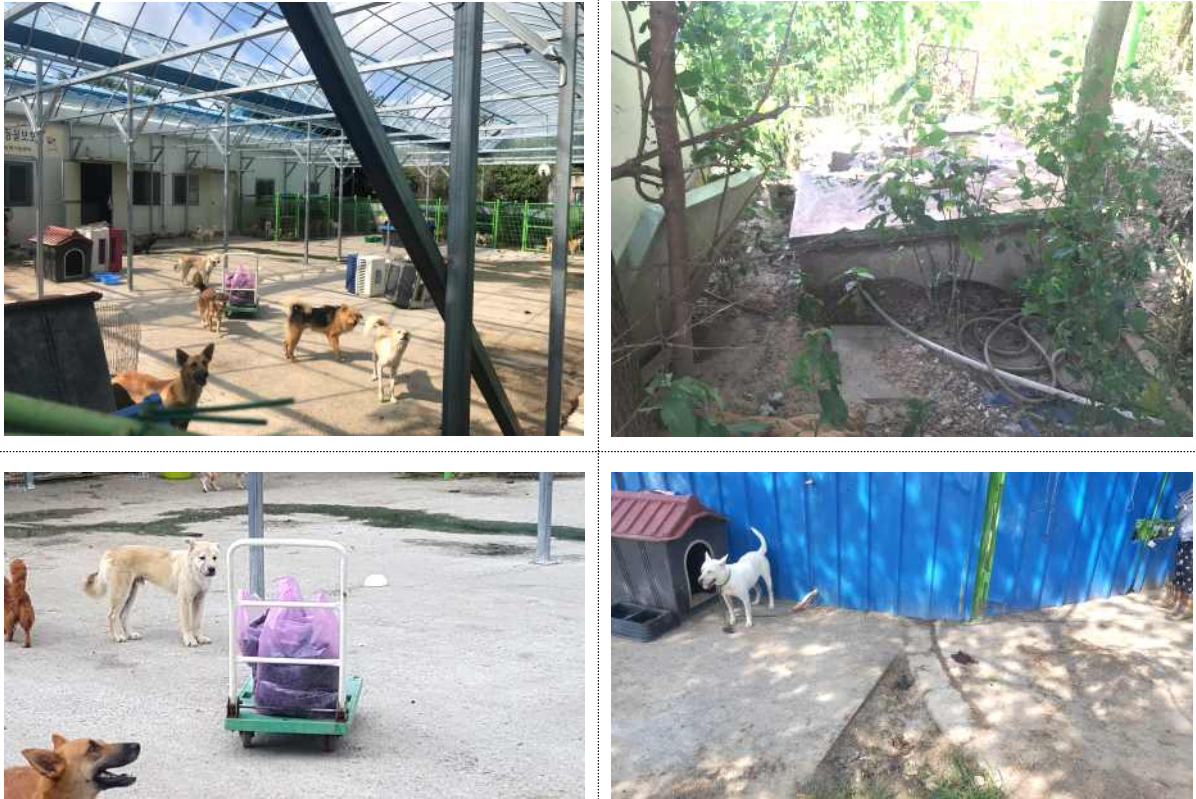
- 분뇨처리 방법 : 실내 보호시설 - 물청소(자체 정화조 보유), 실외 보호시설 - 종량제 봉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동물방역팀 협조로 소독약 분무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

- 그 밖의 특이 사항

- 보호 동물 수는 점차 느는 추세 → 보호소 내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상황임
(도에서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안락사 시행이 쉽지 않음)
- 피서철에 유기동물 발생량이 30% 정도 증가하나,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는 적은 수준임
- 도 보조사업 중 입양 진료비 지원사업 : 입양되는 개들을 건강 체크, 치료비 지원
(1마리당 20만 원 한도 내 50% 지원, 입양자 50% 부담)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근본적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동물 유기에 대한 처분 강화, 등록제 확대 등
- 보호자가 있는 동물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포획 및 보호 민원에도 불구하고 입소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 때도 있음)
-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의 개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다름 : ① 농촌 지역에서는 그냥 개를 키우는 노인들이 많음, ②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입소 되는 경우가 많음, ③ 들개가 있어 무분별한 번식이 이루어짐 (야생견[들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의 기준과 접근이 필요함)
- 해당 군 내 사설 동물보호소는 없어, 담당자의 업무량이 많음



<그림 79> 함안군 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 제주 동물보호센터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지자체 직영
- 지역 및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동길 184-1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 시설면적 : 약 387평
- 인력 : 10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350마리, 고양이 8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45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280~300마리, 최대 500마리까지 수용 가능)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7,177마리 입소, 755마리 분양 (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2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정화조에 처리(자체 정화조 보유)하며, 15일 단위로 위탁업체가 수거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시화 염소 소독시설(장치)을 통하여 소독시행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그 밖의 특이 사항

- 전국최초 유기 동물보호 관리 도 단위 통합 운영 (`11.5.16 ~ 현재)
- 보호 동물 수는 점차 증가 추세 → `17~18년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서 일 최대 보호 두수 확대함 (400→500마리)
-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개설(`18.4.16) 및 구조변경 진행 중 (`19 현재)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장소가 외져있어 환경 관련 민원은 없으나 행정적 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지침(운영지침)은 갖추고 있음



<그림 80> 제주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위탁 보호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양주시
- 시설면적 : 9개 동 약 1,200평 (부지면적은 3,000평)
- 인력 : 2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500마리, 고양이 2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40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약 1,000마리로 수용 여유가 있는 상황)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8,000마리 입소, 2,4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2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분뇨저장조에 임시 저장 후 정기적으로 외부 자원화 업체로 위탁 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세제(락스) + 중성세제 소독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소각업체와 계약하여 처리 (3,000원/kg)

- 그 밖의 특이 사항

- 서울시 20개 구 및 경기도 6개 시·군으로부터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음
- 입소하고 있는 유기동물 수는 감소하는 추세 (시설 적인 여유가 있음)
-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입소 시 질병 및 상해의 정도를 파악 후 입소 진행
- 주변 공장 시설로 인해 민원 없음 (음식물처리시설, 차량 폐차장, 피혁공장)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보호시설의 대형화 필요: 체계화 및 효율화(시스템, 인력적 측면), 규모의 경제화 및 위험 관리, 운영 예산의 투명화 기대
-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이원화
: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관리적 측면과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단체가 담당하는 복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서 균형을 맞춰가야 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법정기구(단체) 설립
: 동물보호법상 별칙조항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민원 해결·책임까지도 부여하는 법정기구 설립 방안
(동물 학대에 대한 행위, 불법판매 단속 권한 등 부여)



<그림 81>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현장조사 사진

○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위탁 보호
 - 지역 및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설면적 : 약 170평
 - 인력 : 7명 (포획 3명 포함)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35마리, 고양이 15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15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 또한 150마리로 적정한 상황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2,000마리 입소, 4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3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분변에 톱밥을 뿌려 수거하며(깨끗하게 분변만 수거됨), 별도 시설 없이 왕겨와 혼합하여 배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고압 분무소독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소각업체(의료환경공사)와 계약하여 처리 (3,500원/kg)
- 그 밖의 특이 사항
 - 인천광역시 4개 구청과 군청으로부터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음
 - '18~19년 유기동물 수 : 개의 경우 15~20% 줄어들었으며, 새끼 고양이는 증가하는 추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률 및 반환율도 높아지는 추세)
 -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로 신고된 시설을 동물보호소로 활용하고 있어 증축이 불가함
 -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공간적 측면
 - : 자유롭게 뛰어놀고 소음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필요함 (특히 소형견의 경우, 펜스와 뜬 장이 아닌, 관리 편의성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방 형태[주거 형태]의 공간 마련 방안)
 - 인력적 측면
 - : 동물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고 동물을 친근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하기 어려움 (전문적인 케어,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함)
 - 동물 등록(칩)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음(변경 이력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해야 함)

→ 정기적으로 동물등록이 바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동물 유기의 경우 과태료 처분밖에 하지 못함 (학대보다 처분 수준이 낮음)



<그림 82>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 대구 유기동물보호소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위탁 보호
- 지역 및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 시설면적 : 약 230평 · 인력 : 3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42마리, 고양이 1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5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 약 80마리로 적정한 상황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2,100마리 입소하였으며 약 30%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2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신문지 활용,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소독시행 여부 : 락스 소독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그 밖의 특이 사항
 - 대구광역시 4개 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음
 - 몇 년 전부터 유기동물이 줄고 있음 (특히 개의 경우 많이 줄었음)
 - 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음 관련 민원이 몇 건 있었음
 - 오수처리시설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인력적 측면 : 새끼 고양이의 경우 인력이 많이 필요하며, 전담 수의사가 배정되어 역할 분리가 필요함 (격리, 보호 관리, 입양센터 등)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방안 : 동물 키우는 사람의 책임감 강화(교육), 중성화 수술 의무화, 등록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등록해도 정보가 변경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음), 판매장과 번식장의 엄격한 허가제 및 개체별 이력 관리시스템 도입, 가정 분양도 없어져야 함



<그림 83> 대구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위탁 보호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여주시
- 시설면적 : 약 200평
- 인력 : 4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20마리, 고양이 4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 약 120마리
(적정 보호 동물은 150마리, 최대 200마리까지 가능함)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약 1,000마리 (여주시 400마리 및 이천시 550마리)
- 평균보호 기간 : 약 3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정화조에 처리 (단계별 정화방류)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소독시행 여부 : 청소 시 락스 소독 (매일 1회)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 그 밖의 특이 사항

- 여주시, 이천시로부터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음
- 2019년부터 위탁을 시작하여 경력이 짧음
- 정화시설 보유 : 단계별 정화방류 시설 (분기별 수질 점검받고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입양자가 아닌, 동물보호센터를 감시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 기준이 필요함
- 사체처리의 적정 처리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주요 적자 요인)
- 유기동물 입양 시 건강 및 질병 문제가 가장 중요함
: 입소 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 치료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함
(예를 들어, 생명과 직접 연관된 홍역, 파보바이러스, 심장사상충 접종 및 치료비용 지원)
- 인력 부족 문제 : 동물보호센터의 인력 기준 및 지원 필요함



<그림 84>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현장조사 사진

○ 화순 유기동물보호소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위탁 보호
- 지역 및 위치 : 전남 화순군
- 시설면적 : 약 60평 (사육시설 면적 30평)
- 인력 : 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 약 20~30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394마리 입소하였으며 약 20%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5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왕겨와 혼합하여 퇴비화 후 개인 텃밭에 퇴비로 활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소독시행 여부 : 청소 시 세제(락스) 소독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처리
- 그 밖의 특이 사항
 - 2019년 상반기 유기동물 20% 정도 증가함 (농촌 시골 지역의 유기동물 발생 특성이 다름)
 - 병원 진료비 및 소독은 지자체 지원받고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운영상 애로사항 : 늦은 밤, 새벽 시간까지 포획 민원이 직접 들어옴, 포획 장비가 부족함
 - 농촌 시골 지역의 유기동물 발생 경우가 다른 점을 확인해야 함 (개장수가 감소하고 마을 장도 잘 안 열리는 상황에, 시골에서 개를 키우는 노인들의 수입원이 안돼 사육 부담 가중)
 - 동물보호 업무 위탁 시 칩 확인을 할 수 있는 장비 보급 필요
 - 동물보호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금 책정(또는 기준)이 필요함



<그림 85> 화순 유기동물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 러브펫 동물병원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위탁 보호
- 지역 및 위치 : 서울시 관악구
- 시설면적 : 보호 면적 약 10평
- 인력 : 8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0마리, 고양이 6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 약 10~15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880마리 중 대부분 반환 또는 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10~2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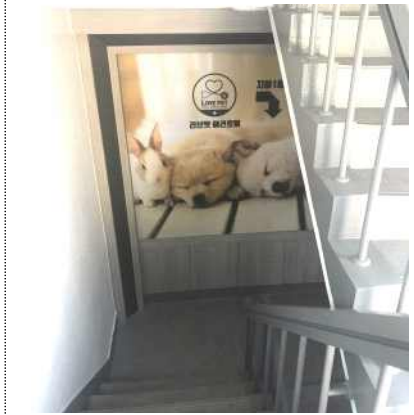
- 분뇨처리 방법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처리, 변기에 버리기도 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악취방지시설 : 환풍기 시설(덕트) / 소음방지시설 : 지하에 보호시설 구비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구청 계약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 그 밖의 특이 사항

- 도심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 입소 유기동물의 질병 치료 및 목욕·미용까지 하여 입양률을 높이고 있음
- 접근성이 좋아 반환율 및 입양률이 높으며 자연사하는 경우 외에 안락사는 매우 적음 (별도 블로그를 운영하여 정보 교류 및 홍보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동물보호 위탁업무 특성상 애로사항이 많음 : 시, 구의 점검 및 지도·감독, 민원인의 다양한 민원 처리, 동물보호에 대한 직접적 업무(치료, 진료, 보호 등)
- 유기동물 관리내역서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근거자료를 남김(분양확인서, 파양확인서 등)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한 의견
: 공급(분양)을 규제하고 관리해야 함(일본의 경우 개 분양가격이 매우 비싸며, 독일의 경우 유기견보호소 외에는 입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반드시 중성화하여 분양(입양)되어야 함
- 유기동물의 수술 및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음 : 입양 시 보호비는 지원되나 검사 장비 등이 추가 지원·확대될 수 있길 바램



<그림 86> 러브펫동물병원 현장조사 사진

○ 디아크 동물종합병원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위탁 보호
- 지역 및 위치 : 서울시 동작구
- 시설면적 : 약 5평
- 인력 : 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3마리, 고양이 1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 약 10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250마리 중 80% 이상 반환 및 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30~60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소독시설 : 발판 소독조, 격리실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위탁업체에 처리 (4,000원/kg)

- 그 밖의 특이 사항

- 도심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접근성이 좋아 반환율 및 입양률이 높음(80% 정도)
-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간은 동물병원 특성상 적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동물보호 위탁업무 특성상 애로사항이 많음 : 의무는 많고 예산은 적음, 24시간/휴일 없이 민원이 있고, 포획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처리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거점 동물보호소에 대한 의견 : 서울시의 인접 3~4개 구에서 거점 동물보호소를 설립하는 방안(반환 및 입양의 접근성 확대)에 대하여 부지확보와 업무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방안 : 엄격한 법 적용, 번식장, 판매장의 관리 감독 강화 (자견 등록 후 분양,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 관리 등), 무상분양 구조 해소 등



<그림 87> 디아크 동물종합병원 현장조사 사진

○ 죽전 TNR 동물병원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위탁 보호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용인시
- 시설면적 : 약 100평 · 인력 : 4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50마리, 고양이 3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 약 80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1,100마리 입소, 약 3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약 30~720일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함 (40L/일)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벽체 보강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5,000원/kg)
- 그 밖의 특이 사항
 - 타 보호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고양이의 비율이 높음
(2018년 작년 기준 1,100마리 입소 중 고양이가 418마리임)
 - (사)용인시 동물보호협회와 연계하여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안락사를 줄이고 분양(입양)률을 높이고자 함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공장이나 농장같이 외부에 방치되어 사육되는 동물의 등록 및 중성화 수술 지원하고 있음
 - 내장형 칩 의무화 및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함



<그림 88> 죽전TNR동물병원 현장조사 사진

나. 사설 동물보호소 (단체와 개인)

○ (사)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 시설면적 : 부지 1,000평, 보호시설 약 400평(지상 3층)
- 인력 : 29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13마리, 고양이 75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30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총 200마리 정도나 약 1.5배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연간 약 200~250마리 입소, 150~2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평균 3년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분뇨저장조(고무통)에 임시 저장 후, 외부 자원화 업체로 위탁처리 (뇨는 물청소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소독시행 여부 : 탈취 소독제 및 세자(락스) 희석
- 악취방지시설 : 일반 환기시설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냉동고가 있지만 가능한 바로 화장장으로 처리함

- 그 밖의 특이 사항

- 보호 동물을 개별 방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음 (크기별로 구분)
- 운동장 보유
- 입양팀에 동물훈련사가 있음 (교육 프로그램 있음, 일부 동물들만 교육하고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시설기준 마련 시, 층을 높더라도 단독 실(분리, 독립 공간)로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고양이는 개별 공간이 있어야 함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동물 간 스트레스가 훨씬 적음)
- 정상적으로 운영 시 한 달에 보호 동물 1마리당 평균 약 17.5만 원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최소 유지비, 진료 수술비 제외)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방안
 - ① 등록제 100% 의무화 (특히 시골 지역의 마당 개, 집단사육시설)
 - ② 번식업, 판매업의 허가제 및 인터넷 판매 전면 금지

- ③ 동물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매년 갱신형으로 본인 부담, 중성화 시 50% 할인)
- ④ 사육자의 구매자격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자격 부여)
- ⑤ 정부 차원에서의 중성화 수술 권장 및 정액으로 의료비 지원 수가 산정이 되어야 함



<그림 89> (사)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현장조사 사진

○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유기견보호소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용인시
- 시설면적 : 부지 1,100평 · 인력 : 4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42마리, 고양이 7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250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62마리 입소, 47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평균 7~8년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퇴비화 후 지역 경종 농가에 퇴비로 처리함 (퇴비사 보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연막분무소독, 발판 소독조
- 악취방지시설 : 없음 / 소음방지시설 : 없음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화장

- 그 밖의 특이 사항

- 인터넷 카페 운영(회원 수 약 2,000명), 후원회원은 120명 정도
- 매주 40여 명 봉사자가 산책, 목욕 등 자원봉사를 옴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시골 지역의 마당 개, 공장 개가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등록 및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필요
- 시장 판매규제가 부족하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중성화 수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공간적 측면 : 보호시설 기준마련 시, 주택형, 사육장형(실내/실외), 방목형에 대하여 나누어 분류될 필요가 있음





<그림 90>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유기견보호소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A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 시설면적 : 부지 1,000평(보호시설 200평, 운동장 500평)
- 인력 : 2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80마리, 고양이 25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30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총 200마리 정도나 약 1.5배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15마리 입소, 15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평균 8~9년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폐기물 소각시설로 위탁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화장 (소형 15만 원, 중형 26만 원, 대형 50만 원)

- 그 밖의 특이 사항

- 엄격한 조건과 과정을 통해 입양 보냄
- 보호소 내 중성화율 : 수컷 100%, 암컷 30%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학대하는 개 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번식장, 판매장의 중성화, 동물등록 의무화
- 분양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 필요
- 공간적 측면 : 보호소 내 분리 사육이 필요함 (한 마리당 구역을 정해, 사료 먹는 양, 분변 상태 등 건강 확인 가능, 서열에 따른 약한 동물보호 가능)



<그림 91> 사설 동물보호소 A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B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 시설면적 : 부지 450평(보호시설 120평)
- 인력 : 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300마리, 고양이 32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330마리
(적정 보호 동물 수준은 총 200마리 정도나 약 초과상태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40마리 입소, 32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평균 7년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분은 퇴비화하여 처리(퇴비장 보유),뇨는 물청소로 처리(정확조 보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로 소독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화장 (소형 13만 원, 중형 15만 원, 대형 35만 원)
- 그 밖의 특이 사항
- 엄격한 조건과 과정을 통해 입양 보내며,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으로는 입양을 지양함
 - 유통기한이 임박한 사료를 사료공장에서 지원받아 사료비는 들지 않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개인 사설 동물보호소는 장기적으로 없어지고 모든 동물보호소는 공공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설 동물보호소도 교육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 번식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불법 번식을 막고 생산자별 쿼터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 부견, 모견에 대한 등록과 생산 이력, 반려동물 패스포트 발급 등
 - 단계적으로 반려동물 분양가격의 정상화 기대 (현재는 너무 싸다고 생각함)



<그림 92> 사설 동물보호소 B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C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 시설면적 : 부지 400평(보호시설 300평) · 인력 : 2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00마리, 고양이 3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230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8년 기준 약 50마리 입소, 약 1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평균 8년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분은 산에 매립,뇨는 물청소함 (정화조 보유)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됨
 - 소독시행 여부 : 분무 소독시행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화장

- 그 밖의 특이 사항
 - 수도권에서 보호시설 설치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임대로 운영 중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현재 유기동물 사설 동물보호소의 대책이 필요함
 - ① 운영자의 고령화 ② 후계자 부재
 - ③ 시설 노후화 ④ 경제적으로 열악한 구조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방안
 - ① 불법 번식장 규제 (허가된 번식장에서만 생산)
 - ② 애견분양소(애완동물 가게) 철폐
 - ③ 농촌 지역이나 공장에 방치된 개의 임의번식 문제 해결 (중성화)
 - ④ 모든 개에 대한 등록 의무화





<그림 93> 사설 동물보호소 C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D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 시설면적 : 450평 · 인력 : 3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00마리, 고양이 3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230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약 20~30마리 입소, 약 1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정화조(저장조)에 처리 (교반식 정화조, 3주에 1회 위탁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소독시행 여부 : 식초 및 풍풍으로 수세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화장

- 그 밖의 특이 사항

- 엄격한 조건과 과정을 통해 입양 보냄 (등록 의무화)
-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후원과 봉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문제 해결 필요 (임의번식 등)
-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의 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책 지원 필요 (사설 동물보호소의 제도권 내 관리 필요성)
- 동물보호센터 운영 자격제
- 폐교를 활용하여 동물보호센터로 고치는 방안

- 그 밖의 특이 사항

- 일반 단독주택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쉼터 형태의 보호소
- 국내 입양이 어려운 동물(대형견 등)을 캐나다 및 미국 동물보호단체 연계로 해외 입양 중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공공과 사설 간 협조체계를 갖고 연계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안락사 최소화)
- 국내 동물보호 인식은 많이 좋아졌지만, 해외의 우수 프로그램을 한국 여건에 맞추어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회원 봉사 프로그램 등)
-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
 - ① 등록 의무화 및 중성화 의무화
 - ② 개 농장에 대한 제재 및 개 주인 자격제 (자격 검증 제도 필요)
 - ③ 고양이 TNR 등 사업 확장 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현실 개선 필요)
 - ④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개 농장과 동물보호시설이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그림 95> 사설 동물보호소 E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F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 시설면적 : 약 3,000평 · 인력 : 3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3,00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3,000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연간 약 240마리 입소, 약 5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모래와 섞어 밭에 퇴비로 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매장 또는 화장

- 그 밖의 특이 사항

- 산비탈에 위치, 중성화를 시킨다고 했으나 내부 임의번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동물 개체별 상태 파악이 쉽지 않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지자체 민원과 여러 소송으로 보호소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안락사를 최소화해야 함



<그림 96> 사설 동물보호소 F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G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 시설면적 : 약 80평
- 인력 : 2명

- 보호 동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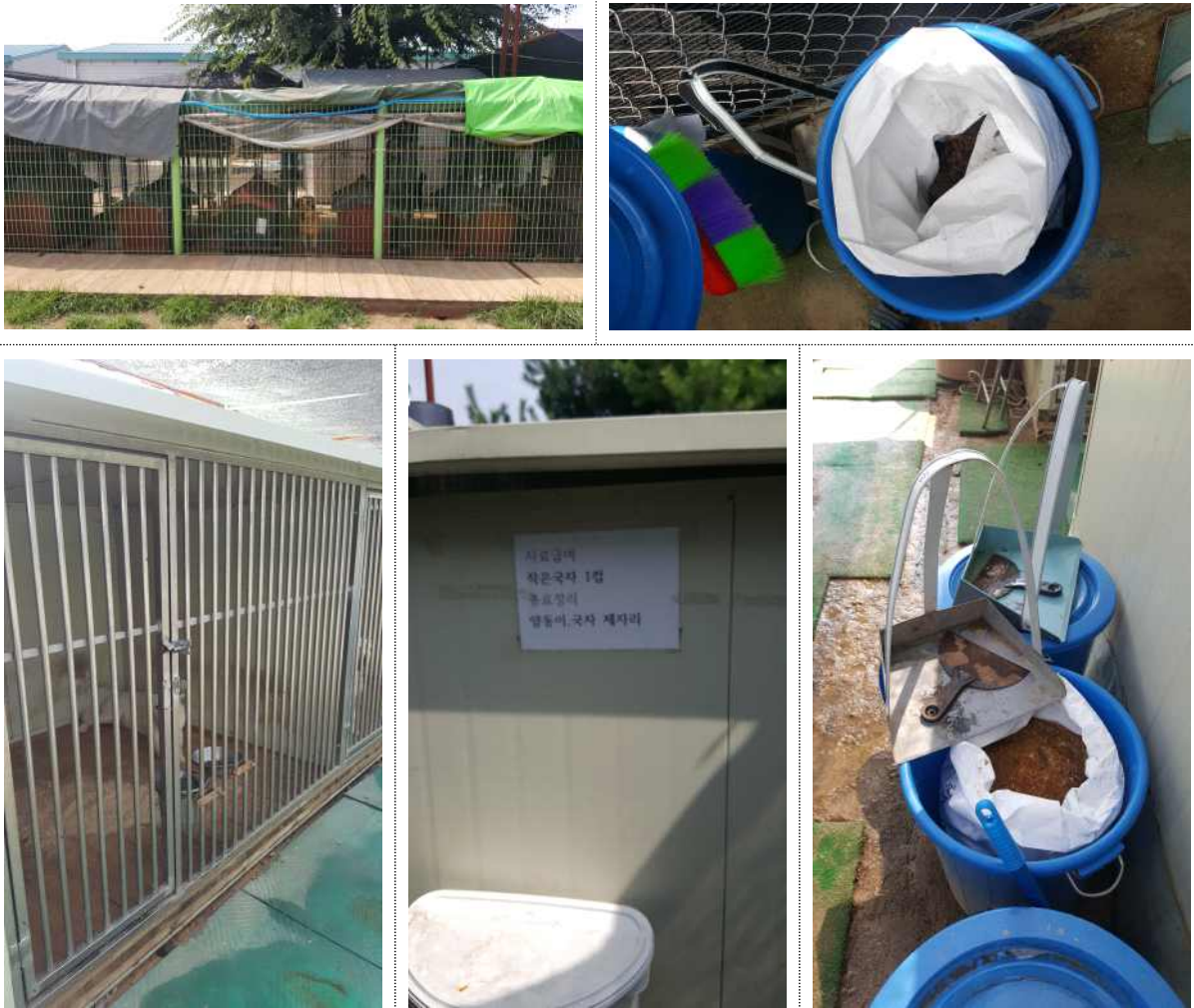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70마리 (대형견 위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지대에 별도 보관 후 위탁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그 밖의 특이 사항

- 입양이 잘 안 되는 대형견 및 잡종 개를 중심으로 구조 활동과 보호를 하고 있음
- 국내에서 입양이 잘 진행되지 않아 해외 입양도 병행하고 있음



<그림 97> 사설 동물보호소 G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H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 시설면적 : 약 110평
- 인력 : 2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70마리 (대형견 위주)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고무통에 별도 보관 후 위탁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그 밖의 특이 사항

- 대형견 중심의 사설 동물보호소로 구조 활동을 주력하는 단체로 시작함
- 대형견 약 60마리 (파양 후 재입소 20마리 포함)
 - 해당 지역 발생 유기견 10마리 정도 보호 중



<그림 98> 사설 동물보호소 H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I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경기도
 - 시설면적 : 약 100평
 - 인력 : 5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00마리 (대형견 위주)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연간 약 450마리 입소, 약 3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일반 종량제 봉투에 처리 (뇨는 소변 패드 사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그 밖의 특이 사항
 - 공공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안락사 대상 동물을 데려와 보호하고 있고 유기견 입양처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호 동물 100마리 중 대형견이 90마리이며, 대형견의 경우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미국)로 입양 보내고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도농복합 지역에서의 마당 개와 공장 개의 중성화 의무화 (지자체 예산 지원 필요)
 -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었지만 폐사 신고 또한 의무화해야 함



<그림 99> 사설 동물보호소 I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J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개인) · 지역 및 위치 : 충북
- 시설면적 : 약 150평 · 인력 : 2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80마리, 고양이 2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100마리
(과거 150마리였으나 현재는 여건상 추가 보호 동물을 받지 않고 있음)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입소 거의 없음, 분양도 안 하고 있음
- 평균보호 기간 : 죽을 때까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왕겨와 혼합하여 퇴비화 후 본인 소유 밭에 활용하고 있음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지자체에 요청 후 위탁처리

- 그 밖의 특이 사항

- 카페 회원 1,000명 중 적극적인 활동하는 소수의 후원자·봉사자가 지원해주고 있음
- 초기에는 분양(입양)했으나 바로 가져다준 이후 분양은 안 하고 있음



<그림 100> 사설 동물보호소 J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K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전남
- 시설면적 : 약 150평 · 인력 : 3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00마리, 고양이 20마리 등, 상시 보호 동물은 약 220마리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연간 약 80~100마리 입소, 50~1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4~5년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고무통에 보관 후 외부 자원화 업체로 위탁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그 밖의 특이 사항
 - 이전 위치에서 소음 민원으로 현재 위치로 이전함
 -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대상 중 입양 가능성을 보고 데려옴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인력문제 : 365일 같이 생활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림 (적정 인력 확보 필요)
 -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적 문제 개선 필요 (뜬 장, 밀사 등)
 - 사설 동물보호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함 (인건비, 진료비 등 지원)



<그림 101> 사설 동물보호소 K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L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단체) · 지역 및 위치 : 대구
- 시설면적 : 약 30평 · 인력 : 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0마리 (상시 보호 동물 수는 20마리 정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연간 약 300마리 입소, 약 20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평균 2~3달 정도

- 분노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노처리 방법 : 신문지 활용 종량제 봉투에 처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매립 또는 화장

- 그 밖의 특이 사항

- 구조 및 입양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쉼터 형태의 사설 동물보호소임
- 카페 회원의 임시 보호(임보)로 보호소 내 보호 동물은 많지 않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현행 유기동물 보호 기간이 너무 짧음 → 20~30일 수준으로 기간을 늘려야 함
- 편차는 있지만, 보호시설의 환경이 안 좋고 질병 감염의 위험이 많음
→ 지정 수의사가 상주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순회하며 동물을 관리되었으면 좋겠음
- 동물보호센터 복지적 측면 : 목욕 시설, 격리시설, 펜스 또는 캔 넬 (개별 보호구역이 나뉘어 있어야 이후 입양 시 행동적 측면에서 좋음)



<그림 102> 사설 동물보호소 L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M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개인) · 지역 및 위치 : 대구
- 시설면적 : 약 1,000평 중 보호시설 700평 · 인력 : 2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300마리, 고양이 8마리 (상시 보호 동물 수는 300마리 정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연간 약 50마리 입소, 약 50마리 분양(입양)
- 평균보호 기간 : 산정하기 어려움

- 분노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노처리 방법 : 종량제 봉투에 처리 또는 매립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매립 또는 화장

- 그 밖의 특이 사항

- 입소 시 15일 정도 격리 후 질병 상태 파악 및 중성화 시행
- 연계 동물병원 원장의 의견으로 풀어놓고 보호하고 있음 (질병견, 큰 개, 무는 개만 격리 보호)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사설 동물보호소의 공공 전환 필요성 : 동물보호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함



<그림 103> 사설 동물보호소 M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N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개인) · 지역 및 위치 : 대구
- 시설면적 : 약 120평 · 인력 : 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90마리 (상시 보호 동물 수는 100마리 정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연간 약 10마리 입소, 분양(입양)은 거의 없음
- 평균보호 기간 :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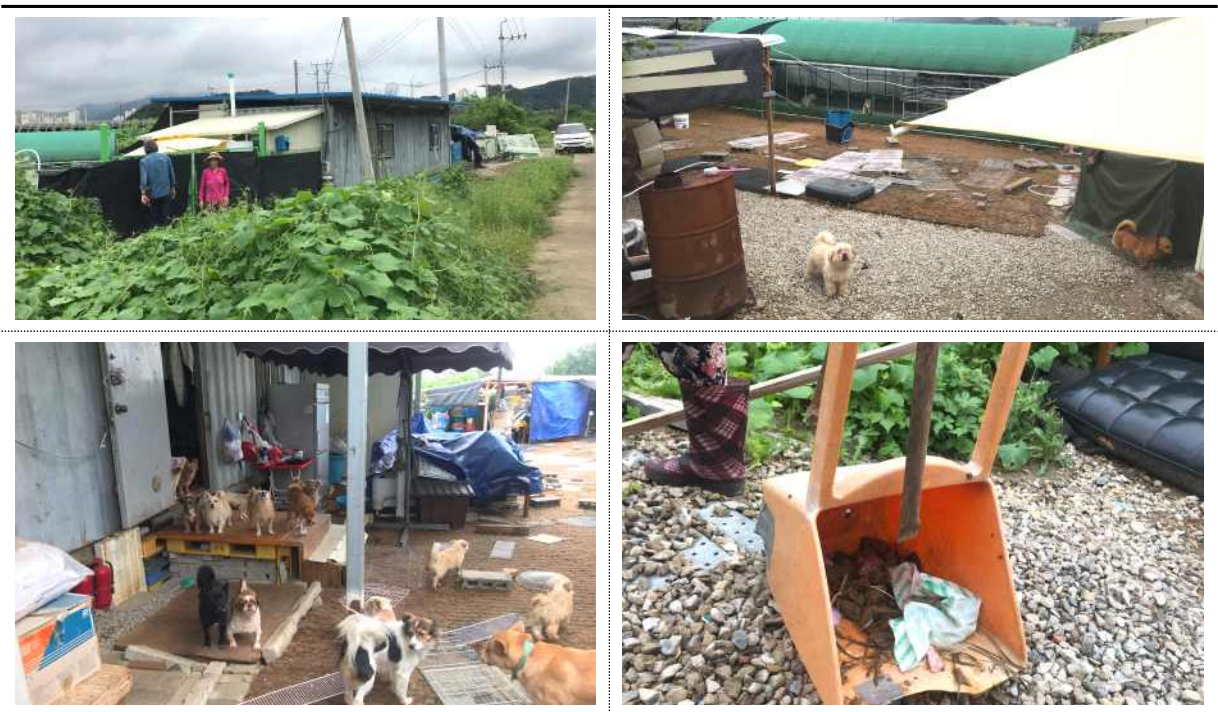
- 분뇨처리 방법 : 분은 지역 경종 농가에 퇴비로 처리,뇨는 소변 패드 사용 및 물청소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매립

- 그 밖의 특이 사항

- 빌라, 타 보호소 등에서 동물을 보호하다 현재 위치로 이전 (5년 임대)
- 질병 치료 등 무상으로 도움받는 동물병원 있어 운영에 큰 도움이 됨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의 분리 사육이 필요함
- 동물보호소의 필요 복지시설 : 목욕 시설, 냉난방시설, 충분한 공간확보 등



<그림 104> 사설 동물보호소 M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개인) · 지역 및 위치 : 경남
- 시설면적 : 80평 + 300평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음)
- 인력 : 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250마리, 고양이 12마리 (상시 보호 동물 수는 약 300마리 정도)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연간 약 10마리 입소, 분양(입양)은 노령견이라 거의 없음
- 평균보호 기간 :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종량제 봉투에 처리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매립

- 그 밖의 특이 사항

- 주거지역과 가까워 소음,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필요 지원사항 : 진료비 및 예방접종, 사료 (개인 후원이 있지만 부족함)
- 지자체에서 민원대응으로 이전 요구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그림 105> 사설 동물보호소 ○ 현장조사 사진

○ 사설 동물보호소 P

- 일반 현황

- 운영형태 : 사설(개인)
- 지역 및 위치 : 제주
- 인력 : 1명

- 보호 동물 현황

- 현재 보호 동물 규모 : 개 130마리 (상시 보호 동물 수는 약 70마리 정도나 많이 늘어남)
- 입소 동물 및 분양(입양) 규모 : 2019년도 들어 입소 증가, 분양(입양)은 연간 30마리 정도
- 평균보호 기간 : 산정하기 어려움

- 분뇨처리 등 환경 관리 현황

- 분뇨처리 방법 : 매립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신고 안 됨
- 동물 사체 발생 시 처리방법 : 매립

- 그 밖의 특이 사항

- 방송 후 유기 사례 증가로, 2018년 60마리 정도에서 현재 130~140마리로 늘어남
-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 입양을 통해 입양을 보내고 있음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통해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현장방문 조사 시 의견

- 중성화 지원이 필요함
- 지자체의 사료나 병원비 보조가 필요함



<그림 106> 사설 동물보호소 P 현장조사 사진

[부록 2] 자문단 회의(전문)

가. 서울시청

○ 서울시청 시민 건강국 동물보호과

- 서울시 반려동물 정책 방향의 큰 틀은 사람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1995년경부터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포획을 하였으며, 2004년 일부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구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정이 강화되면서 인식표 부착 등 사육 가구의 부담으로 인해 매년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0년, 유실·유기동물 1만 8,000여 마리를 정점으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홍보, 제도적 정비,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유실·유기동물이 감소 추세임에도,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제외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기간 내 수용의 한계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20개 지자체의 유실·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등을 주로 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수의 동물병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현재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대부분을 동물병원이 차지하고 있음
- 처음 동물병원이 동물보호센터 위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수익모델의 충족에 있었으나 동물병원의 특성상 보호·관리에 구조상 어려움이 있고, 민원의 집중으로 인하여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익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부당 과다청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여 일부 이탈이 발생하기도 함
- 위탁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경우 많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있는데,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용으로 인한 관리 측면과 사용부지가 임대부지로 임대료 등에 의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유실·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 기간 내에서 치료와 교육 등의 보호 관리를 받지 못하는 현상으로 사육 희망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입양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수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유실·유기동물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과 사육자의 책임감 강화 등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도심 지역의 경우는 반려동물 사육자의 인식 개선과 동물등록제 등의 제도로 인하여 유실·유

기동물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 동물등록 되어있는 경우는 빠른 반환이 가능하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호시설로 입소 되고 있음
- 사설 동물보호소도 유실·유기된 동물은 물론 안락사를 막기 위해 실제 사육자(소유자)가 확인 되어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리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료비, 치료비, 기타 운영비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리자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교육 훈련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육자의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유기하거나, 사육자의 잘못된 통제와 교육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유기하는 경우도 많음
- 서울시는 구로구 고척교 부근에 동물 교육훈련센터를 열어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과 신청을 받아 10여 마리 정도씩 반려동물 행동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포구에 동물병원과 입양 센터의 기능이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자치구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이 구조하여 센터에 입소 치료시킨 후 와 최소한의 안락사를 전제로 입양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 가축분뇨 처리

- 유실·유기 동물보호시설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기본적으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안락사에 대한 문제

- 현재 만연하고 있는 학대에 의한 자연사가 더 문제이며, 안락사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보호시설의 수용 능력 한계로 인하여 최소한의 안락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유실·유기동물이 제로화되면 안락사도 제로화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유실·유기동물의 제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

- 서울시는 길고양이와 유기견에 대한 중성화 사업(TNR, Trap-Neuter-Return)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대형견 견주의 경우 중성화(Neuter) 수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어려운 부분도 있음 (설문 조사 시 관련 민원 발생)

- 개체 수 조절 등이 주요 목적인 중성화(Neuter)에 대해서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시는 물론 신규로 강아지의 구매 시에도 중성화(Neuter) 수술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중성화(Neuter)의 경우는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홍보에 의존하고 있어 의무화가 필요하며, 반려동물의 개인 간의 거래 경우에도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어 사육 시 신고나 허가제로 등록하여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유실·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 등록된 동물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자치구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장소 확보와 민원문제로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등록된 동물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는 직영 3개소, 자치구 2개소로 동작구 보라매 반려견 놀이터, 마포구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 도봉구 초안산 공공 반려견 놀이터,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관악구 낙성대공원 개판 오 분 전 등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고 운영하고 있음
- 서초구의 경우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했다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한 사례도 있어, 각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장소 확보와 민원문제로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장소 확보와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반려 목적의 개에 제한하여 한강공원과 같은 하천부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규제 완화가 되어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된다면 많은 반려동물과 사육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한 개들은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해소로 집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아 반려견의 유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서울시는 내장형 등록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201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수의사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부담금(수수료)만 지급하고 등록하도록 하여,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가 무상 제공한 4만 개의 내장 칩이 지원사업 신청 동물병원에 시행 5개월 만에 전부 배부되어 올해 사업이 종료됨
- 서울시의 동물등록이 연간 2만 마리 정도로 내장형 등록제 활성화 지원 사업(내장형[칩] 4만 개)을 통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음
- 동물등록 시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내장형(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일부 반려동물 사육자의 거부와 외장형 인식표 업체 등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내장형(칩)으로 일원화하고, 의무화로 법적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건축법에 대한 의견
- 동물보호시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의 지역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인데 자연녹지의 경우 대부분 공원 지역이고, 생산녹지의 경우는 논밭 외 대부분이 주택가 지역으로 서울과 같은 도시 주거밀집지역에는 동물보호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외곽지역으로 장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서울의 자치구 20개 외에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6개소 정도)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까지도 구조·수용하고 있는데, 전염병의 통제가 되지 않아 이의 해결을 위하여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담당 근무 직원의 퇴직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하여 자치구 내 2개소 정도로 20~30마리의 이내 유실·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동물보호시설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경우처럼 근린생활시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축법의 변경과 민원 방지를 위한 방음·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집단 수용시설인 관계로 질병 통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건축법에서 축사, 사육시설 등으로 분류되어있는 기준에서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사육시설의 분류에 추가하여, 소규모 동물보호시설처럼 우선 허용 가능한 정도를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권역 별로 4개소 정도의 복지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 소재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동물병원 시설 용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실·유기동물의 치료와 교육, 입양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교육장과 사무실 등으로 별도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의 복지 기준 등

- 대도시의 경우 악취방지법 등의 환경법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서울시의 경우 지정된 예산의 한계로 시설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는 지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서울시는 위탁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 기간의 보호비(초기검진, 안락사 비용 등 포함한 처리비 개념)로 마리 당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입양 대기 기간 10일을 추가하여 20일로 보호 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기간 중 입양이 되지 않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해서는 20일 이후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자에게는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17만 원~20만 원의 보

힘 가입(1년)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실·유기동물 구조 후 내장형(칩)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연락하거나 실제 사육자(사육자)에게 연락하여 반환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적 포기에 의한 사육 포기동물의 경우 잠재적 유기동물이므로 보호시설에서 인수하는 것이 적합하나 법적으로는 유기동물이 아니므로 사후처리 대상이 아니라 보호 기간 후 안락사가 불가능하고,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사육포기자의 경우 재 입식 후 문제 발생 시 다시 유기하는 창구가 될 수 있어 사육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 등록의 의무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함
- 사육자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 생산업(개)으로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반려동물 마릿수는 매년 조사되는 축산정책과의 가축 통계조사의 자료를 보면 20만 마리가 되지 않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100만 마리로 추정되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 서베이 통계자료의 자료를 보면 70~8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어 통계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시의 2019년 9월 기준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35만 6천 마리임
- 실제 공식적인 자료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의 가축 통계조사에 대해 기타 가축인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현재 1년 단위 조사를 5년 단위로 하여 맹견 사육 등의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의 전수조사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연구용역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경기도청

○ 경기도청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정책팀)

-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운영 시 관련 법률 준수는 의무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등도 기본적인 사항으로 준수되어야 함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2020년부터 동물복지 분야를 강화하는 동물보호의 원년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안락사 제로화를 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등록 활성화 정책, 유기동물 억제정책, 장기적으로는 테마파크를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여 보면 무분별한 생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생산

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앞으로 생산업 단속 규제 강화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인력이 필요하나 부족한 것이 문제임

- 현재 기반시설 부족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는 중장기적으로 전부 폐업되어야 하며, 안락사 방지를 위하여 유기동물의 보호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선례지 사례의 보호 시스템(가정 등에서의 임시돌봄 제도)을 검토하고 있음
-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화성시 도우미견 나눔센터 등 향후 기반 구축을 위한 중심센터 확충 계획이 있음
-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과 같은 공공시설은 환경부 오폐수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설 동물보호소는 분뇨처리,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본 연구 용역의 결과 도출 시 사설 동물보호소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설 동물보호소는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설 동물보호소도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적법화할 수 있는 기준을 근거로 평가하여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폐업 처리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함

○ 동물보호센터 기준 수립 구상 방향

- 공간적 개념의 면적 적용에 대해서는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인력적 개념에서 관리 범위를 초과 동물을 지자체 보호시설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과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추가로 동물보호센터를 건축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 동물등록제 관련

- 주택, 준주택 지역을 제외한 공장 지역 등과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의 등록률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동물등록 의무에서 제외된 동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식용견을 제외한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동물은 관련 법 안의 범위에서 관리되어야 함
- 반려동물의 생산, 분양, 유실·유기, 안락사와 자연사까지의 전 생애에 대한 등록관리 등과 같은 이력 관리가 필요함

○ 유기견 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

- 유기견 발생 억제정책은 엄격한 기준이 수립되어 집행되어야 하고,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필요시에는 강하게 추진하고, 유기견의 발생 후 시설투자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발생 억제를 위해 사전 투입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및 의견에 대해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신중한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함

○ 경기도 반려동물 관련 조례 현황

- 2019년 9월 기준 동물보호 관련 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례의 기본법이 되는 동물보호법도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함
- 대도시와 도농복합 지역, 농촌 지역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동물보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기도 동물보호 관련 사업 및 예산

- 연간 총 50억 원 규모로 30%의 도비와 70%의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음

다. 성남시청

○ 성남시청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동물지원팀

- 연구용역의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진행 과정에 따른 중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환경·복지 기준

- 성남시의 경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병원(핏토피아)에 위탁하고 있는데 월 100마리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이 30m²로 진료 시설을 제외하면 20m² 정도로 협소하나, 성남시 전체 동물병원 수가 120여 개 정도로 월 100마리를 분배하면 1마리 정도로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남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성남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동물병원 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포획자는 단일화하여 성남시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동물병원 별 1~2마리씩 분산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수익 발생을 위한 추가 관리 요청으로 인한 내분 발생으로 인해 관리시스템이 와해하고 말았음
- 현재 수원시의 경우는 1~2마리씩 포획된 유기동물을 수원시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으며, 포획은 수의사회 회장이 단일화하여 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함
- 연구용역(안) : 현장 실태조사 시 반려동물의 유실 시 반환율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근거리 보호시설이 필요하여, 3~4개 구청이 공동으로 임시 보호시설 개념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의 반환과 분양을 하고,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한 개의 경우는 안락사하는 등에 대안을 마련하는 의견이 있었음

- 부산시는 부산시청 부근에 아파트 지역 내 입양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임 수의사회 회장이 저렴하게 임대료를 하여 4, 5, 6층 3개 층을 사용하여, 사설 동물보호소의 유실·유기동물을 인수 하여 임시 보호하고 입양 등을 하는 사례도 있음
- 성남시는 일반인과 사육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소 된 강아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안락사를 지양하고 교육 후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락사는 안락사 위원회(동물권 단체, 반려인, 일반인 포함)를 운영하여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 지자체 위탁 보호시설의 경우 현행법상 유실·유기동물은 반드시 인수 해야 하나 분양이 안 되는 실정이고, 반려동물의 유실 후 사육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때도 있어 실제 유실률은 20% 내외로 추정되며, 사육자에 반환되는 경우에도 10~20% 정도는 내장형 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찾아가고, 심지어는 사육자가 유기 전에 일부 동물병원에서 염증을 이유로 내장형 칩을 제거하는 부도덕한 예도 있음
- 연구용역(안) : 부착된 내장형 칩에 대해서는 특정한 수의적 요인으로 수의사 판단 때문에 제거하였을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 후 다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의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제거 시 일시, 사유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려고 함
- 연구용역(안) :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심센터 확충 계획처럼 가칭 광역 통합 유기 동물보호·관리센터와 같은 거점시설을 운영하는데 성남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유기동물 발생 시 임시 보호시설인 동물병원(위탁)에서 1~2마리를 보호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입양이 안 되거나, 사육자에게 반환이 안 되는 경우 가칭 광역통합 유기 동물보호·관리센터로 입소시키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되는 동물병원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으므로 입소 된 유실·유기동물을 공고하게 되면 유실동물의 경우 즉시 반환이 가능하고, 포획자를 특정하여 지정하게 되면 포획 후 바로 내장형 칩을 리더기로 확인하여 사육자에게 반환할 수 있음
- 연구용역(안) : 이사 등이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내장형 칩이 부착된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이 주소 변경 시 같이 이전되는 시스템을 적용하되 현행 지자체 등록을 가칭 광역통합 유기 동물보호·관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등록자 고유번호 등록)가 내장형 칩 부착 시 등록하고, 제거 시에도 일시, 특정된 사유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이력 관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려고 함
- 유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안은 없으나 최소한으로 유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 등의 벌금 부과가 필요하나 법정기관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안) : 축산법에서 아프리카 돈 열병 발병으로 인해 해외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벌금을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불법 축산물 반입을 최소화한 것처럼 반려동물의 유기 시에도 벌금액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성남시 유기동물 발생 및 등록 현황

- 2016년부터 2017년은 유실·유기동물이 소폭 상승하고, 2017년부터는 감소 추세인 이유는 본 시가지가 재개발로 인한 이사로 유실·유기동물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사육 가구 감소로 인하여 최근 유실·유기동물이 감소하고 있음
- 성남시는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 수가 10만 가구로 전체 인구에 35% 정도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어 유기동물 발생 확률이 높은 편이고, 반려견은 9만 6천 마리, 반려묘는 3만 8천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을 포함한 등록 마릿수는 3만 8천 마리 정도인데, 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내장형 칩을 무료 시범사업으로, 2012년도는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그 이후 유상으로 등록하다가, 2019년 등록 의무화 후 내장형 칩만 2만 원(경기도 50%, 성남시 50%)을 지원하여 1만 원만 자부담하도록 하여 3천 6백 마리를 지원하였는데, 등록률이 70~80%가 달성될 때까지는 경기도에서 지원 예정임
- 연구용역(안) :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발생 후의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등록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시행이 검토되고 있음
- 성남시는 내장형 칩을 통한 등록 의무화와 함께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육자 사망과 같이 인수 불가 시와 병원 입원 등을 통한 장기 부재 시 등의 경우 일부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육자 사망의 경우 증명하기 위한 사망신고서를, 병원 입원 등에 의한 장기 부재 시는 포기서를 접수하고 있음 (사육포기자의 범위는 사전 심의회를 통하여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사육자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육자가 분양 시 연간 1회, 4시간 이상/일, 법, 특징 등을 교육받고, 이후 보수교육은 인터넷, 현장 교육을 통해 연간 1회, 2시간/일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성남시 유기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

- 연구용역(안) : 유기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은 현재 보호시설을 신규 또는 증설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실 시 반환율을 높여 유기동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국내 해외의 입양률을 높이는 방안, 입양이 안 되면 현재 10일 보호 기간 후 법적인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안락사 등 관련 정책 시행 등의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안) : 반려동물을 너무 쉽게 분양받고, 유기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무상 입양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상 입양이 합리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등록제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상분양에 대해서는 애완동물 샵에서 80~200만 원에 분양되는 반려동물도 강아지 때 입양 후 3개월 정도 지나 외모에 변화가 생기면 등록하지 않고, 유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입소 된 유기동물을 지자체 보호시설에서 20~30만 원에 유상분양이 되더라도 재 유기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 보호시설에서 무상분양을 지속해서 하면 애완동물 샵의 입지가 작아질 수 있다는 의견임
- 연구용역(안) : 이에 대해서는 유기동물 대부분이 수요자(분양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2,500개 정도의 번식장을 250개(10%) 정도로 구조조정하고, 생산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가칭 유기동물관리협회에서 기준가격인 공시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소비자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안) : 또한, 가칭 유기동물관리협회에서는 매년 품종과 마릿수 등 수요 희망조사를 시행하여 번식장에 할당을 주고 의무적으로 모건을 등록하게 하고 생산된 강아지는 60일경 내장형 칩 부착과 지자체 등록 후 패스पोर्ट를 발급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안) : 패스पोर्ट 발급으로 생산, 분양, 이후의 모든 과정을 이력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 또는 안락사를 통해서 생산량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반려동물도 중성화(Neuter)하면 임의번식을 방지할 수 있고, 중성화 의무 위반 시 회수되고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안) : 중장기적으로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구매 공급로가 한정되며, 유기 시에 내장형 칩을 통해 반환 또는 처벌되고, 사육 포기동물만 인수가 되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사육은 자유나 사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르게 하면, 결국 유기 동물보호시설은 거의 공실이 되고, 임시시설 형태의 1~2개소의 중점 보호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분당구 금곡동(반려동물 문화센터)이나 상대원동에 추진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대한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시설로 추진계획이며, 민원 방지를 위한 위생적인 시설 설치

등 긍정적인 홍보와 주민설명회 개최, 우수한 시설의 현장 견학과 선진지 사례 소개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주민과의 소통으로 지역 발전과 반려동물 교육센터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라. 동물권 행동 카라

○ 동물권 행동 카라

- 연구용역의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진행 과정에 따른 중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동물권 행동 카라 파주 더 봄 센터 소개

- 파주 더 봄 센터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동안 50여 개소의 용지를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파주 더 봄 센터 용지를 선정하였고,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센터 개장 후 마을 주민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 단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호응을 끌어냄
- 다른 보호시설도 법적인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해당 지역의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민원대응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환경 분야에 대한 의견

- 본 연구용역의 환경 분야,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소음 민원에 의한 소음 등에 대한 시설 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설명함
- 공간적 개념에서 원 단위 발생량을 위한 동물 Unit 개념은 공감하나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 제시를 위한 체중의 분류에는 이견이 있음
- 현재 대형견 15kg 이상, 중형견 5~15kg 미만, 소형견 5kg 이하의 기준은 현장 상황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려동물을 위한 기준으로는 대형견 25kg 이상, 중형견 11~25kg 미만, 소형견 11kg 이하, 토이견 5kg 이하로 개체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현재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는 개체 분류도 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연구용역(안)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거 된 규정을 동물보호법으로의 의제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현장 적용성이 있는 최소한의 신고 기준이 필요한데 일정 규모 이하의 신고 규모는 종량제 봉투 사용 허용, 적어도 자체적으로 분뇨 관리가 필요한 등록 규모는 분뇨 저장 용기를 비치하여 외부 위탁 또는 자체 처리(텃밭과 같은 자체

처리시설)하도록 하고, 허가 이상의 규모는 발효시설과 같은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외부 위탁 처리를 검토하고 있음

- 등록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적이거나 등록 규모의 경우 용기에 저장된 분뇨의 양이 일정량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어렵고, 수거해가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임
- 이와 관련하여서는 답변으로 연구용역에서 100ℓ 용기에 15~20일 정도 저장 보관 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계획을 제시함

○ 관리(복지) 분야에 대한 의견

- 관리자 면적의 기준에 대해서는 견사는 묘사와 다르게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수면과 먹이를 급이하는 공간이지 일상생활을 하는 넓은 공간으로 보는 관점은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대형견을 넓은 면적에 놀이터의 개념으로 단순히 방치의 관점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설 동물보호소도 관리자나 자원봉사자가 대형견을 주기적으로 산책시켜, 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형견은 관리자에서 소형견 등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관리사의 경우 휴식공간의 역할과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독립 견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함
- 연구용역(안) : 인력의 개념 - 1인당 적정 마릿수는 조사 시 개의 경우 1인이 20마리 정도를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전문성과 이동 동선이 쉬울 경우를 전제로 하여서는 1인당 30마리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대부분 개를 관리하고 있어 개를 중심으로 진행하나 고양이 관련 기준도 조사)
- 1인이 20마리 정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연구용역(안) : 재정의 개념 - 현재 지자체의 규정상 대부분 사설 동물보호소의 환경이 열악함에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상당수의 관련 종사자는 사설 동물보호소는 안락사 없이 전체를 인수 한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는 전부 폐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 행동 카라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보호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업이 적절하고, 사설 동물보호소는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고 시설에는 분뇨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이와 관련 하여 법에 대한 명시를 요청함

○ 사설 동물보호소 등록

- 연구용역(안) : 사설 동물보호소의 대부분 표면적으로 주소 노출 등 공개를 꺼리고, 방문 조사 결과도 내부적으로 불법적인 문제가 많아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시설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등록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설 동물보호소의 주소 공개를 꺼리는 표면적 이유는 주소 노출 시 보호시설 앞에 동물의 유기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극히 일부 시설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며, 시설 내 자체 번식이 이루어지거나, 자기 연민으로 유기견을 인수 하는 것이지 실제 보호시설 앞에 유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의견임
- 그런데도 상당 부분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우수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어 사설 동물보호소의 재정적 요소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하여, 보호시설의 환경에 대한 범위가 매우 넓은

○ 고양이에 대한 시설 기준

- 연구용역(안) : 대부분의 동물보호시설이 관리하는 마릿수가 많은 개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고양이의 경우는 핵심적 요소에서 벗어나 있고,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히 소음이나 분뇨 등 관련 기준에 대하여 강제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적인 조사와 성묘 중심으로 고양이 모래 사용금지, 자연 친화적인 펠릿 사용 권고 등을 검토할 계획임
- 국민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20% 정도가 길고양이를 입양하여 사육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양이 사육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고양이 분뇨의 독소 등 고양이와 관련하여 동물 행동 카라는 주목하고 있으며, 바닥에 사용된 모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펠릿(분뇨) 사용 후 종량제 봉투에 처리하는 등의 허용 조처가 필요함

○ 폐사축 문제

- 연구용역(안) : 일부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는 폐사축 처리에 대한 비용문제로 불법 매립하거나,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동물병원의 경우는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어있어 종량제 봉투에 처리할 수 있어, 일부 소규모 사설 동물보호소는 소형견 폐사축을 종량제 봉투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적인 임의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사축 처리의 경우는 공공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검토하고 있음
- 일부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 동물 교통사고로 사망 되는 개, 고양이, 고라니 등의 폐사축이

부적절하게 종량제 봉투 등에 처리되고 있어서, 서울시의 경우처럼 동물 교통사고로 사망된 사체를 소각해주는 등의 공공 영역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일반 사육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장묘시설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신고 시 바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공공 영역의 개념으로 관리가 되면 개별적으로 매립한다든지 하는 불법적인 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판단됨

○ 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 (회의의 시간상 부족 문제로 카라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

- 연구용역(안) : 상당 부분의 보호시설이 수용의 개념으로 과포화 상태이며, 적절한 보호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고 있는 수용시설로서, 심하게는 학대시설이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사전 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 고양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답변 :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내장형 칩)와 벌칙을 강화하고, 사육자의 의무 강화,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제도와 함께 유기 동물보호시설에서의 무상 입양을 금지하고 적정 비용으로 입양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번식장 관리에 대한 답변 1 : 번식장의 경우는 현재 2,000~2,500개 정도의 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0% 정도의 농장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90%의 농장 폐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60만 마리가 생산되고 그중 20만 마리가 입양되고 있음
-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잔여분 40만 마리의 관리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과 사육 희망자의 충족 조건에 대한 조사로 적정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반려동물에 대한 품종과 가격 등 수요조사의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번식장 관리에 대한 답변 2 : 번식장은 현재 허가제로 형식상 관리되고 있으나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별 할당제로 관리하고 60일이 되면 내장형 칩을 부착한 후 지자체에 등록, 패스पोर्ट를 발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강아지에 대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타 주요 문제 : 안락사 문제는 사설 동물보호소의 조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문제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함
- 동물권 행동 카라의 의견 : 번식장의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하여 5~10% 정도만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성화(Neuter) 의무 등 관련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여 별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줌

마. 동물권 단체 케어

○ 동물권 단체 케어

- 연구용역의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진행 과정에 따른 중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는 관리의 관점에서는 유기동물 양산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제도이며, 최종적인 목표는 일반동물에 대한 사육 포기 인수제임
- 동물권 단체 케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육할 수 없는 경우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를 통해 잠재적 유기동물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포기가 없는 절대적인 사육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인식 확대를 위해 교육·홍보하고 있음

○ 지자체 공공 보호시설 대상 조사 보고서 (동물권 단체 케어 연구조사)

- 지자체 공공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2010년도와 2016년도에 표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전에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자가 위탁받아 운영하여서 하던 고질적인 문제는 개선됨을 확인하였음
- 지역별 봉사가 활성화되고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동물권 단체에 대하여 환경문제, 안락사 등 복지 문제에 대하여 간접하고 항의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사설 동물보호소 일부가 안락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공 보호시설에는 위탁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 위탁 보호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락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

○ 지자체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의 공공적인 역할과 사설 동물보호소의 역할 구분

- 지자체 공공·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설 동물보호소는 입양, 동물의 복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분담이 필요함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법에서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가며, 사설 동물보호소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중 입양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수 하여 보호·관리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는 안락사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장기간 유실·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므로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넓은 부지가 필요한 상황임

○ 소규모 지역보호소 도입방안

-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반환율 저하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광역 보호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소규모 지역보호소의 도입 시 신규 부지의 경우 건축물,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공간적인 문제, 건축법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동물권 단체 케어의 사례를 보면 퇴계로 입양센터는 소규모 지역보호소로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동물의 반환율, 입양률 향상의 장점이 있음

○ 배설물 처리

- 사설 동물보호소의 경우는 보호·관리사의 바닥 형태에 따라 사육(보호) 방식과 기준이 달라서, 시멘트 바닥이나 가정에서 보호할 경우, 기존 가축분뇨와는 달리 걷어내는 형태이므로 구분된 관리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보호소의 실내, 실외 형태 구분

- 기준마련 시 실내 보호소인지, 실외 보호소인지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동자연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실내시스템은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나, 야외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은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음

○ 케어가 구조하는 유기동물 (참고사항)

- 소유자가 학대자인 경우, 열악한 환경 시 설득해서 구조하는 경우
-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자신의 능력치보다 많은 반려동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 개 농장(번식장) 등에서 집단으로 구조하는 경우
- 지자체 공공 동물보호센터가 구조에 어려운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

○ 유실·유기동물의 해외 입양 발생 배경

-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대형견이나 잡종견의 경우는 입양이 어려워 해외 입양을 하고 있는데, 해외 입양 시 절차상의 문제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 입양 시 이동을 위한 봉사자가 자신 소유로 신고하고 탑승해야 하고, 대형견의 경우 화물 이용 시는 200~300만 원, 검역 절차 비용 등도 20만 원 정도 필요함
- 동물권 단체 케어는 오랫동안 해외에 검증된 단체와 미국과 캐나다에 1년에 30마리 정도 수준으로 직접 입양시키고 있음
- 잘못된 해외 입양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국내에서 안락사 등 적정관리를 위한 출구방안이 먼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 동물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약 1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 시설(공간)이 필요함
- 우리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입양 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기유실동물임에도 입양을 해가는 모금 활동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도 있어, 해외 입양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입체적으로 접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 동물권 단체 케어는 반려동물과 일반동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여 동물보호법의 조항 중 “반려 목적의 개”라는 부분에서 “반려 목적”이라는 용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안) : 동물보호법의 조항 중 “반려 목적의 개”라는 부분에서 “반려 목적”이라는 용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는 주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존중되는 평가의 가치가 되는 대상(고유의 가치가 있어야 보편적 반려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개를 일반화하여 반려동물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므로 “반려”를 제외하는 것보다는, 동물의 보호적(이념적) 관점에서 현재 법령을 현실적 가치로 바꾸어서 접근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과세 기준 등을 만들어 경제적 규모와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함
- 부정적인 법 개정은 다양한 조건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육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하는 방향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예를 들면 2m 목줄을 제한하는 규제는 임시방편의 처방이 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차라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함
-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신체적 고통에 대한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근거한 법 개정이 필요함 (피학대 동물소유권에 대한 표창원 의원 발의안의 통과가 필요함)

바. 동물보호단체 행강

○ 동물보호단체 행강 (행강 유기견보호소)

- 연구용역의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진행 과정에 따른 중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경우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 유기견보호소 관련 현황 등 위주로 자문을 진행함

○ 동물보호단체 행강(이하 행강) 현황

-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1천 100평, 상시 인력은 4명이나 매주 40여명 정도의 봉사자가 청소, 산책, 목욕 등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음

○ 보호 동물 규모

- 행강이 보호 관리하는 동물은 개가 242마리(소형견 67마리, 중형견 86마리, 대형견 89마리), 고양이 7마리(성묘)로 상시 보호 동물은 250마리 규모임
- 2018년 기준 연간 행강에 입소하는 동물 수는 62마리, 연간분양은 47마리, 연간 폐사는 22마리 정도이며, 평균보호 기간은 7~8년으로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하고 있음

○ 분뇨처리 및 환경 관리 현황

- 보호 관리하는 동물의 분은 분뇨저장시설에 수거하여 보관 후 지역 경종 농가에 퇴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뇨의 경우는 물청소하고, 씻은 물은 정화조로 이송 후 보관 저장함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되어있으며 분무소독, 발판 소독 등의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악취방지과 소음 방지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민원 발생 현황

- 연간 민원 발생 횟수는 1회 정도로 2012년 보호시설 건축 시 가설건축물 관련 민원이 있었으며, 별도로 민원대응 관리지침은 갖추고 있지 않음

○ 사료비 등 경제성 조사

- 행강의 월간 운영비는 사료비가 5백만 원, 인건비 1천 2백만 원, 진료비가 1백 50~2백만 원, 사체처리비 등 동물처리비가 10만 원이고, 분뇨처리비는 없으며, 기타 운영비용은 4백만 원으로 6천만~7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도 감독 및 지원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은 별도로 관리받고 있지 않으며, 지원은 경기도에서 심장 사상충약을 보급받아 동물에게 처치하고 있음

○ 유기 유실동물 관리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동물등록의 의무화

: 현행 동물등록제는 농촌의 마당에서 사육하는 개와 번식장의 개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모든 개에 대하여 등록 의무화가 필요함

농촌의 마당에서 사육하는 개의 중성화(Neuter) 지원사업도 검토되어야 함

- 반려동물산업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동물복지의 사각지대 발생

: 안락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

지방이나 소도시의 경우 중성화(Neuter) 수술에 대한 홍보 미비로 중성화(Neuter) 수술 없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별정직을 채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기견 발생 억제 방안

: 위탁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유기견 발생 증가에 대한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며, 사육자에 대한 반려동물 관리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반려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의 등록 의무화도 필요함

반려동물생산업자의 종견과 자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생산업자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생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교육이 검토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임시 보호 기능의 쉼터 등을 활용하고, 국내와 해외 입양 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사설 동물보호소 기준에 대한 의견

: 전국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1백 50여 개로 추정됨

동물권 행동 카라는 위탁 중으로 파주에 보호시설을 2백 50~3백 마리 규모로 건축 중이며, 동물권 단체 케어는 다수의 보호시설에 6백 마리를 보호 관리하고, 동물자유연대는 남양주에 4백 마리 규모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사설 동물보호소 기준 설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기준은 공간적 기준으로 사설 동물보호소의 형태는 공동 주택형과 사육장형(실내, 실외), 방목형으로 분류하고, 형태별로 기준이 도출되어야 함

사. 반려동물 생산자조합 한 울타리

○ 반려동물 생산자조합 한 울타리

- 연구용역의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진행 과정에 따른 중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번식장 (개)

- 연구용역(안) : 유기 동물보호시설 대부분 관리자는 번식장의 과잉 생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번식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기동물 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음은 물론 번식장이나 판매장에서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거나 전환될 가능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주목받고 있고, 동물보호의 복지적 측면은 빠져 있다는 의견 등에 대한 반려동물 생산자조합(이하 한 울타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한 울타리 : 유기동물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과연 번식장이 많거나 번식장의 환경 때문에 유기동물이 증가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인지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번식장)의 문제라는 선입견을 품고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판단됨
- 한 울타리 : 반려동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생산자에게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문적인 생산자는 연간 20만~25만 마리 정도를 생산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기 동물보호시설에 입소 되는 유기견을 보면 대부분 잡종견으로 무상분양 공급되어 책임감 없이 유기되는 경우가 많음
- 한 울타리 : 생산자의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도 감소하는 것이지 생산비를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과잉 생산을 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을 감소시켜 특정계층만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정부나 특정 권력이 강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연구용역(안) : 번식장이나 판매장 업이 반려동물 산업에 어떻게 이바지하여야 반려동물 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들어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사설 동물보호소도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한 울타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한 울타리 : 반려동물 생산시장에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연간 공급될 수 있는 개나 고양이 는 전문 생산업자가 연간 공급하는 양보다 적음
- 한 울타리 : 이를 분석하여 보면 연간 60만 마리 이상의 개가 생산(식용 제외)되어 공급되는데, 60만 마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문생산업자가 경매장이나 애완동물 샵으로 공급하는 개가 20~25만 마리 정도이고, 형성된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유상으로 분양된 개의 경우 가족

개념의 반려동물로 인식되어 유기될 확률이 낮으나 무상이나 5만 원 이내로 분양된 20만 마리 정도의 개의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유기될 확률이 높음

- 한 울타리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려면 이제는 동물 산업적 측면을 이해해야 하며, 최근 동물 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별 지켜야 할 영업행위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동물육성산업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함
- 한 울타리 : 반려동물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동물을 우수한 상품으로 개발 생산하여야 하는데, 동물을 상품으로 본다는 견해가 동물권과 대치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에서 유가로 거래되는 순간 상품화되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생명을 가진 고부가가치의 아주 매력적인 상품으로, 이러한 산업은 일반 축산업과 비교하여 고부가가치의 산업임
- 한 울타리 : 이러한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과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생산업자가 생산 유통과정을 거쳐서 반려동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가정하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음에도 동물권 단체와 언론기관에서는 분양과 입양은 다른 개념으로 전문생산업자에게 분양받지 말고 유기 동물보호시설에서만 입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결국, 유기 동물보호시설에서도 반환이나 분양 시 임시 보호 비용을 유상으로 받고 있어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됨)
- 한 울타리 : 현재 국내 생산업자 중 70~80%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 울타리 회원의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된 동물이 반려동물로 분양되고 있으며, 문제 발생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산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호조치가 필요함
- 한 울타리 : 유기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고, 전문생산업자는 생산하지 말라고 하는데 수의 학상의 출산과 전문생산업자에 의한 출산은 다른 개념으로 반려동물 대부분은 소형견으로 모견의 크기에 비교하여 자견을 여러 마리 출산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여 동물 생산업자는 전문 간호조무사나 간호복지사 수준의 경력이 필요함
- 한 울타리 : 연간 생산되는 60만 마리의 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면 대학에서 반려동물 생산학 전공 인력이 2천 명이 필요하나, 전공과목조차도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있어 대부분 생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규제에 따라 폐업 위기에 처해있어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지원이 필요함
- 한 울타리 : 현재 반려동물 전문 생산업자는 경매장 회원등록 자료를 모아 한 울타리 산정 결과 2천~2천 500 농가 정도로 추정되며, 고가의 견종을 사육하는 전문생산업자인 20두 이내

의 소규모 생산자(가정견사, 단독주택)가 700 농가 정도이고, 한 울타리 조합의 경우 생산 가능한 종견(모견 포함)을 150두 이내(현행법에서 1인당 75두 이내로 규정)로 사육하고 있음

- 연구용역(안) : 생산 농가당 150두 이내로 가정하였을 경우 연간 분만 회전율을 확인하여야 연간 생산 마릿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연간 분만 회전율과 연간 분만 회전율을 무시하고 발정 유도제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제적인 번식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한 울타리 : 소규모 생산 농가(가정 견사)가 700 농가와 견사구(간판) 농가는 1천 5백 00 농가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연간 분만 회전율은 법으로 8개월 이내 출산을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 1회 분만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는 발정 유도제 등으로 번식할 수 있으나 개의 경우는 발정 유도제나 호르몬제 등으로는 번식 자체가 어려우며, 강제적인 인공 수정 시는 트라우마로 인해 교배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주장은 근거도 없고 현실성 없는 주장임
- 한 울타리 : 연간 생산 마릿수는 2019년 9월 24일 허가제 유예기간 이후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는 생산 농가의 대대적인 조정으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유기동물 발생 억제정책

- 연구용역(안) : 동물보호법의 검토 결과 유명무실한 조항을 강제 의무화하고 국가, 지자체, 사육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전체적인 반려동물산업이 선순환할 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연구용역(안) : 일부 유기 동물보호시설에서는 유기동물을 직접 공급하고, 반려동물 생산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유기동물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기동물 억제 정책에 반하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과 적정한 가격, 유기동물의 중성화(Neuter) 수술 등의 적절한 생산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음
- 연구용역(안) :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인구)는 일부 허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에서 정기적인 수요 조사(견종 포함)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고, 통계가 부정확한 사실 유기동물보호소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한 울타리 : 등록제의 경우 전문생산업자가 생산한 자견을 등록하는 것은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하도록 한 현행법과 대치되어 등록하지 않고 있음
- 한 울타리 : 동물 생산업자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견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폐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동물 생산업자가 외모 때문에 이유 시기인 23~25일령의 자견과 25일~30일

사이의 자건을 경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음

- 한 울타리 : 이런 조기 판매는 애완동물 샵에서 소비자의 반려견 구매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외모로 23~25일 사이의 자건이 가장 예쁘고 판매율이 높기 때문임
- 한 울타리 : 이유 후 충분히 이유식과 사료를 섭취시키고 3차 접종 후 적응이 된 후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비용 등의 이유로 조기 판매되어 면역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폐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연구용역(안) : 동물 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자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내장형 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문 결과 적정 일령은 60일령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한 울타리 : 현행법은 3개월령부터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물 생산업자는 2개월령부터 등록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참석하였는데, 등록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건의 폐사를 포함하여 동물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3개월령에 등록 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함
- 한 울타리 : 2020년 3월 이후에는 2천~2천 500 농가의 상당 부분 생산 농가 감소가 예상되며, 2013년 조사 수치인 1천 100 농가보다 더 감소하고 경매장은 전국에 2~3개소가 남고 폐업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함

○ 환경 분야에 대한 의견

- 연구용역(안) : 공간적 개념의 동물 Unit(대형견 1 기준, 중형견 0.5, 소형견 0.3)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 분야와 연계하여 적절한 확보 면적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려고 함
- 한 울타리 :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 생산업자의 표준 견사에 대한 설계를 요청하여 수의사, 변호사와 협업으로 표준 견사 설계하였고,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용역⁸⁵⁾ 시에 자료를 지원하여 발표되었으나 모법인 동물보호법이 지원법이 아닌 규제법의 성격이고 실질적인 방침이 없어 현재는 활용되고 있지 않음
- 한 울타리 : 동물 학대를 최소화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생산업의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나 관리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안)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등의 관련 내용을 동물보호법

85) 국립축산과학원. 2017. 반려견 브리더 시설유형 및 사육면적 기준(안)

에 의제 하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위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지역 주민의 민원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면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연구용역(안) : 유기 동물보호시설과 사육가정에 대한 중성화(Neuter) 의무를 전제로 하게 되면 공급 통로는 동물 생산업자와 수입의 경우밖에 없으므로 생산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 3월 허가제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생산업자에 대한 전문화를 위한 지역별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5년 단위 조사하게 되면 동물 생산업자의 생산 할당량도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 울타리 : 반려동물산업의 미래성을 평가하여 보면 반려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산업이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유발 효과가 큰 서양 중심의 박람회 서울권을 중심으로 동양 중심의 박람회가 되도록 하는 전환과 서양권 위주의 품종이 대부분인 반려견을 토종견의 품종 개량과 개선을 통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함
- 한 울타리 :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자의 자격 요건도 중요하여 미국의 사례처럼 전문생산업자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며, 일본의 사례처럼 전문생산 농가에 수의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현재는 경매장에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음)
- 연구용역(안) : 생산자와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이나 고령의 생산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화된 생산업자로의 교체 과정을 통해서 산업이 안정화되고 고급화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 울타리 : 동물생산업의 경우 생산 농가의 시선과 입장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자본의 투자가 필요함
- 연구용역(안) :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근거를 제시하려고 함
- 한 울타리 : 동물보호법은 전문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 동물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약하여,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반려동물 산업법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 울타리 : 동물권 단체나 일반 국민이 반려동물의 산업화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은 동물복지 선진국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앞서 언급된 내용이 공론화되면 다시 공론 안에 기득권의 내용으로 되돌아가고, 다수의 정당성이 사실화되는 부분은 시스템적인 검토가 필요함

동물보호센터 분뇨처리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소 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에서 발주한 「동물보호센터 분뇨처리 등 관리기준 설정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소의 분뇨처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동물보호소의 관련 현황을 조사하며, 귀 센터(보호소)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에 연구결과로서 전달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소의 현장 중심적 현황을 연구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분뇨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 응답 내용은 본 연구 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첨부한 설문지의 각 항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 관련 연락처: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정승헌 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6길 5, 506호 (자양동,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전화 : 010-0000-0000, 사무실: 02-000-0000 E-mail : 0000@00000

※ 안내 사항

1. 전체 질문은 6개 파트,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분 정도 필요합니다.
2. 본 조사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된 후 폐기됩니다.
3. 작성이 끝나면 설문지 파일을 이메일로 회신하거나, 사진 촬영 후 카카오톡을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000000@000000 , 카카오톡 ID : 0000000000,
전화 : 010-0000-0000, 00 실장)
4. 2019년 0월 0일 (0) 까지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소 현황 설문조사

I.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소 현황

보호센터(소)명		연 락 처	
		F A X	
		E - m a i l	
대 표 자 명		설 립 연 도	
소 재 지	(광역) 시·도	운 영 경 력	(년)
	(기초) 시·군·구	시 설 면 적	(m ²)
운 영 주 체 (해당항목 O표)	기관(단체) / 개인	인 력 현 황 (대표자 포함)	(명)
운 영 형 태 (해당항목 O표)	지자체 직영, 지자체시설위탁 ¹⁾ , 위탁보호 ²⁾ , 사설(기관,단체), 사설(개인) 1) '지자체시설위탁'은 시군구시설을 위탁업체에서 임대·운영하는 형태 2) '위탁보호'는 시군구의 위탁을 받아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병원 등		

1. 귀하의 동물보호센터(보호소) 관리 규모(마릿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개

소형견(5kg 미만)	중형견(5~15kg)	대형견(15kg 이상)	합 계
(마리)	(마리)	(마리)	(마리)

1-2. 고양이

자묘	성묘	합 계
(마리)	(마리)	(마리)

1-3. 기타(개, 고양이 외의 토끼 등 기타동물)

종 류	마릿수
	(마리)
	(마리)

1-4. 상시 보호 동물 마릿수 : _____ (마리)

1-5. 연간 입소 동물 수 : _____ (마리/연)

1-6. 평균 보호 기간 : _____ (일)

1-7. 연간 분양(입양) 동물 수 : _____ (마리/연)

4-2. (4번 문항의 ④,⑤번(처리시설 보유) 응답 시) 퇴비화 시설 또는 분뇨저장시설의 면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4-3. (4번 문항의 ⑥번(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 응답 시) 처리장 면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5. (분과 뇨를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뇨의 처리방법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분과 함께 처리 (4번 문항에 응답한대로 처리함)
- ② 소변패드 사용 (종량제 봉투에 처리)
- ③ 대걸레로 닦고, 닦아낸 대걸레는 물에 빨
- ④ 물 청소함 (세정수는 배수구를 통해 하수구로 흘러감)
- ⑤ 기타 ()

6. 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

- ① 신고됨
- ② 신고 안 됨

7. 아래의 각 시설 보유 여부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7-1. 악취방지시설 ()	7-2. 소독 시설 ()	7-3. 소음방지시설 ()
① 있음 (있을 경우, 시설 및 방법 기재 :)	① 있음(또는 소독 실시할 경우) (있을 경우, 시설 및 방법 기재 :)	① 있음 (있을 경우, 시설 및 방법 기재 :)
② 없음	② 없음	② 없음
③ 기타 ()	③ 기타 ()	③ 기타 ()

Ⅲ. 민원 발생 현황

8. 귀 동물보호센터(보호소)의 소음, 악취 등 민원 발생 횟수는 연간 얼마 정도 되십니까? ()

- ① 없음
- ② 3회 미만
- ③ 약 3~5회
- ④ 약 6~10회
- ⑤ 약 11~14회
- ⑥ 15회 이상

8-1.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 유형의 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약취	소음	기타	합 계

9. 이러한 민원에 대한 관리지침(매뉴얼)을 갖추고 계십니까? ()

- ① 있음
- ② 없음

IV. 경제성 조사

10. 귀하의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소) 운영 시 월 평균 비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1. 사료비 : _____ (원/월)
- 10-2. 인건비 : _____ (원/월)
- 10-3. 진료 비용 : _____ (원/월)
- 10-4. 사체처리 등 동물 처리비용 : _____ (원/월)
- 10-5. 분뇨처리 비용 : _____ (원/월)
- 10-6. 기타 운영 비용 : _____ (원/월)

V. 지자체 지도 감독 및 지원 사항

11. 귀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소)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도·감독 시행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전 통보
- ②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전 미통보
- ③ 연 1회, 지도·감독전 통보
- ④ 연 1회, 지도·감독전 미통보
- ⑤ 실시 안함
- ⑥ 기타 ()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나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까? ()

- ① 지원받고 있음
- ② 지원 없음
- ③ 기타 ()

12-1.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제도 현황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

13. 동물보호센터(보호소)에서 보호동물 1마리당 적정 수용 면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1. 개

소형견(5kg 미만)	중형견(5~15kg)	대형견(15kg 이상)
(평/마리)	(평/마리)	(평/마리)

13-2. 고양이

자 묘	성 묘
(평/마리)	(평/마리)

13-3. 적정 수용면적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4.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소)에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보호동물 수는 몇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4-1. 적정 관리를 위한 보호동물 수	14-2. 최대 관리할 수 있는 보호동물 수
(마리/사람)	(마리/사람)

14-1. 위 응답과 관련한 기타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5. 귀하의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소) 유실·유기동물 관리 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및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 감사 합 니 다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림축산식품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림축산식품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